

자활사업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 노동부 자활사업을 중심으로 -

강병구 · 이상훈

목 차

요 약	i
I. 문제의 제기	1
II. 자활사업의 이론적 배경	3
1. 근로연계형 복지제도	3
2. 외국 사례	6
III. 우리나라 자활사업의 현황	11
1. 자활사업의 추진 배경 및 특징	11
2. 자활사업의 체계 및 현황	18
IV. 자활사업 실태조사 결과	29
1. 조사방법 및 기간	29
2. 자활취업대상자의 특성	29
3. 자활사업 참여 이전의 경제활동	34
4. 자활사업 종료자의 취업상태	40
V. 자활사업에 대한 평가	46
1. 평가의 기준	46
2. 집행과정 및 전달체계	53
3. 자활사업의 성과 측정	70
4. 소 결	82
참고문헌	91

표 목 차

<표 III- 1> 생활보호대상자의 규모 추이	13
<표 III- 2> 노동부 시행 주요 자활사업	21
<표 III- 3> 자활사업 예산 현황	25
<표 III- 4> 자활사업 추진 현황	26
<표 III- 5> 노동부 자활사업 추진실적(2001년 10월)	27
<표 III- 6> 자활지원 종료자 현황(2001년 10월)	28
<표 III- 7> 자활사업 참여 현황(2001년 10월)	28
<표 IV- 1> 자활사업 참여자 및 종료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31
<표 IV- 2> 자활사업 참여자 및 종료자 가구 특성	32
<표 IV- 3> 수급권가구 탈락 사유	33
<표 IV- 4> 취업대상자의 이전 직장 산업분류	35
<표 IV- 5> 취업대상자의 이전 직장 직업분류	36
<표 IV- 6> 이전 직장의 재직기간	37
<표 IV- 7> 이전 직장의 규모	37
<표 IV- 8> 이전 직장에서의 고용형태	38
<표 IV- 9> 이전 직장에서의 월평균임금	38
<표 IV-10>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	39
<표 IV-11> 구직경로	40
<표 IV-12> 직장의 산업분류	41
<표 IV-13> 직장에서의 직업분류	42
<표 IV-14> 직장규모	43
<표 IV-15> 고용형태	43

<표 IV-16> 월평균임금	43
<표 IV-17> 사회보험 가입 여부	44
<표 IV-18> 근로복지	44
<표 V- 1> 소득보조프로그램	51
<표 V- 2> 참여 자활사업	54
<표 V- 3>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자활사업에 대한 평가	54
<표 V- 4> 자활사업 만족도	55
<표 V- 5> 자활사업에 불만족하는 이유	56
<표 V- 6> 자활사업이 구직에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	57
<표 V- 7> 행정기관간 업무협조	57
<표 V- 8> 자활사업 참여 현황	58
<표 V- 9>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이유	59
<표 V-10> 자활을 위해 요구되는 사항	59
<표 V-11> 자활에 필요한 지원서비스	60
<표 V-12> 현행 자활사업의 개선사항	62
<표 V-13>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이유	63
<표 V-14> 직업훈련의 만족도 평가	64
<표 V-15> 직업훈련에 불만족하는 이유	64
<표 V-16> 현재의 직무와 직업훈련 교육내용 유사성 평가	64
<표 V-17> 구직활동에 소극적인 이유	65
<표 V-18> 구직경로	66
<표 V-19> 구직에 대한 장애요인	67
<표 V-20> 취업 가능성	67
<표 V-21> 희망 고용형태	68
<표 V-22> 희망임금 및 유보임금	68
<표 V-23> 직업적응훈련 만족도	69
<표 V-24> 직업적응훈련의 취업도움 평가	70
<표 V-25> 직업적응훈련에 대한 불만족 이유	70

<표 V-26> 현재 비취업중인 자의 경제활동	71
<표 V-27> 취업여부에 대한 로지스틱(Logistic) 회귀분석 결과	73
<표 V-28> 종료자의 재직기간	74
<표 V-29> 이직 횟수	74
<표 V-30> 헤저드 모형 추정 결과	75
<표 V-31> 가구유형별 월평균 소득, 생활비, 부채액	76
<표 V-32> 가구 유형별 주요 생계수단(1)	77
<표 V-33> 가구 유형별 주요 생계수단(2)	78
<표 V-34> 가구유형별 부채증가의 원인	79
<표 V-35> 가구규모별 소득의 최저생계비 충족률	80
<표 V-36> 임금함수 추정 결과	81

그림목차

[그림 Ⅲ-1] 조건부 급여 관련 업무체계	16
[그림 Ⅲ-2] 자활사업 운영체계	20
[그림 Ⅲ-3] 직업적응훈련의 구성	23
[그림 Ⅲ-4] 조건부 수급자 유형 및 사업분류	24
[그림 V-1] 집행과정 평가체계도	47

요 약

2000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과 함께 강화된 자활사업은 조건부수급자의 근로능력을 제고시켜 노동시장에서의 취업을 촉진시키고, 장기적으로는 복지재정의 절감을 목표로 한다. 특히 조건부수급자 중 취업대상자로 분류된 자활대상자는 노동부 자활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취업을 통한 자립·자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에서 우리나라의 자활사업은 근로연계형 복지제도(workfare)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자활사업이 시행된 이후 1년이 지난 2001년 10월말 현재 노동부 자활사업의 종료자는 25,024명이며, 이 중 4,560명이 취업 및 창업을 통해 자활에 성공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이와 같은 지표상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자활사업은 많은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동부 시행 자활사업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2001년 10월말 현재 노동부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취업대상자(505명)와 자활사업 참여 이후 취업 및 창업으로 유도된 자활종료자(501명)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자활사업에 대한 평가는 크게 전달체계를 포함한 집행과정에 대한 평가(process evaluation)와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능력 향상에 대한 성과측정(performance measurement)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분석결과 현행 노동부 자활사업의 집행과정 및 전달체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첫째,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자활사업에 대해 참여자 및 종료자들은 대체로 만족하는 것

으로 응답하였지만, 생계급여의 부족, 부실한 자활상담, 적성과 능력에 맞지 않는 자활사업 배정, 형식적인 자활훈련, 자활사업간 취약한 연계구조, 자활정보의 부실, 사후관리의 부재 등을 불만족의 주된 이유로 제시하였다. 둘째, 효과적인 자활프로그램 및 효율적인 전달체계와 함께 의료서비스, 보육시설, 방과후교실 등 자활지원서비스는 자활대상자의 자활에 중요한 조건이지만, 현행의 자활사업체계에서는 자활지원서비스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활종료자 중 실업자의 구직경로를 보면 공공직업안정기관 이용률이 현저하게 낮은 반면, 구인광고 및 인터넷, 연고채용에 의존하는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자활대상자의 구직에 대한 장애요인으로는 고연령, 저학력, 기능부족, 취업정보의 부족, 질병 또는 경증장애, 일자리 부족 등이 제시되었다. 특히 자활사업 참여자와 종료자 중 실업자의 경우 나이가 많거나 학력 및 기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51.2%, 50.4%에 달하여 이들이 노동시장에서 취업이 힘든 취약계층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이들은 희망조건을 낮추어도 취업이 어렵거나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자활사업의 성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첫째, 취업으로 분류된 자활종료자 501명의 조사시점에서의 취업률(point-in-time estimate)은 62.3%를 기록하였고, 조사시점까지 취업을 경험했거나 취업하고 있는 자(durational estimate)는 73.7%에 달하였다. 그러나 자활사업 종료시 취업으로 분류되었지만, 실질적으로 미취업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응답한 경우를 고려하면, 후자의 경우 실제 취업률은 63.7%로 낮아진다. 이러한 자활종료자의 취업률은 미국 TANF 체제하에서 복지급여로부터 이탈한 수급자의 취업률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구조조정과 경기침체에 있었던 우리의 상황을 고려할 때 노

동부 자활대상자의 취업률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와 같이 다소 높은 취업률은 자활사업 시행 초기 조건부수급자들이 체계적으로 선별되지 못한 상태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수준에 만족하지 않는 많은 수의 취업대상자가 자발적으로 자활사업으로부터 이탈한 결과이기도 하다.

둘째, 자활사업 종료 이후 취업한 직장에서의 재직기간을 보면 종료자 중 취업자 및 비취업자의 재직기간(3개월 이하)은 각각 45.6%, 56.2%이었으며, 6개월 이하인 경우는 각각 71.9%, 86.0%에 달하였다. 이와 같이 자활종료자의 재직기간이 짧은 것은 취업대상자의 취업시점이 비교적 최근이기 때문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활종료자의 고용이 상당히 불안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자활사업 종료 이후 현재의 직장을 얻기까지 취업자의 35.6%, 비취업자의 43.8%가 1회 이상 직장을 옮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4회 이상 이직을 경험한 경우도 각각 17.3%, 19.2%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사실은 자활종료자의 고용이 상당히 불안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종료자 중 실업자의 재직기간은 취업자에 비해 짧고, 이직의 빈도도 높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적절한 사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자활종료자의 가구규모별 총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충족시키는 비율은 가구규모가 커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종료자 가구 중 취업대상자가 취업상태에 있는 경우보다 뚜렷이 나타나며, 특히 3인 이상 가구의 경우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종료자 가구 중 취업대상자가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 이들 가구는 절대빈곤의 수준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총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충족시키는 비율은 65% 정도에 불과하고,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충

족시키는 비율은 이보다 낮은 상태에 머물고 있다. 더욱이 자활사업 종료자의 직장내 4대보험 가입률은 낮은 수준이고, 복리후생제도 또한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평가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이 제시되었다. 첫째, 자활사업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적정수준의 근로소득공제율을 도입하여야 한다. 근로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취업대상자에게 근로유인을 제공함으로써 노동시장에서의 취업을 활성화시키고, 복지의존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부수적으로는 저임금으로 인한 가구소득의 부족을 보충하는 역할도 한다. 근로소득공제가 부재한 상태에서 최저생계비와 근로소득의 차액을 지급하는 현행의 보충급여방식은 자활대상자의 근로욕구를 오히려 저하시키고, 근로소득의 축소신고를 유도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는 이들을 자활사업으로부터 이탈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자활대상자의 근로인센티브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정수준의 근로소득공제율을 도입하여 한다.

둘째, 기존의 공공근로사업 형태로 운용하던 택아, 육아, 간병 등의 사업을 전국단위의 사업으로 확대하여 가구여건곤란자에 대한 자활지원서비스를 강화하거나, 사유별로 가구단위의 특별수당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행 자활사업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이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수급권자로 선정될 경우 패키지화된 지원을 일괄적으로 받게 되지만, 탈락자에 대해서는 모든 급여가 중지되는 방식(all-or-nothing)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일괄지급방식은 자활대상자의 취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급여체계를 개별화시켜야 한다.

셋째, 일종의 입문단계라고 할 수 있는 직업적응훈련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자활대상자에 대한 상담기능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자활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 의해 수집된 정보 이외에 취업대상자에 대한 직업적성검사 및 심리검사를 바탕으로 이들의 특성을 프로파일링할 수 있는 ‘자활가능조사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자활대상자들의 취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훈련의 내용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공공직업안정기관의 취업알선 기능을 강화하여 자활대상자에게 구인정보를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자활종료자 중 실직상태에 있는 자에게도 구인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자활대상자를 직업훈련 참여 이후 안정적인 일자리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역단위의 파트너십(local partnership)을 구축하여 직업훈련기관, 공공직업안정기관, 지역경제단체 및 기업, 민간단체들 사이에 구인·구직에 대한 정보가 원활히 유통되어야 한다.

다섯째, 자활대상자 중 상대적으로 근로능력이 낮거나 가구여건이 열악한 근로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공공근로 형태의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자활대상자에 대한 D/B 구축을 통해 이들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취업 이후에는 고용보험 D/B를 통해 관리함으로써 복지와 고용정책을 통합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일부 자활취업대상자에 대해서는 추적조사를 통해 자활사업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켜야 한다.

I. 문제의 제기

2000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과 함께 강화된 자활사업은 조건부수급자의 근로능력을 제고시켜 노동시장에서의 취업을 촉진시키고, 장기적으로는 복지제정의 절감을 목표로 한다. 특히 조건부수급자 중 취업대상자로 분류된 자활대상자는 노동부 자활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취업을 통한 자립·자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에서 우리나라의 자활사업은 근로연계형 복지제도(workfare)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자활사업이 시행된 이후 1년이 지난 2001년 10월말 현재 노동부 자활사업의 종료자는 25,024명이며, 이 중 4,560명이 취업 및 창업을 통해 자활에 성공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표상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자활사업은 많은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다. 취업으로 유도된 자활종료자 중 일부는 단기간의 취업 이후 실업상태에서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며, 많은 수의 취업자는 불안정한 고용상태에서 가구별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을 받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동부 시행 자활사업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2001년 10월말 현재 노동부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취업대상자와 자활사업 참여 이후 취업 및 창업으로 유도된 자활종료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설문은 통해서로는 주로 현재의 자활사업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취업 및 창업으로 유도된 자활종료자에 대해서는 고용상태를 중심으로 경제적 복지의 변화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었다.

논의의 전개를 위해 제Ⅱ장에서는 자활사업의 이론적 배경을 살펴본

다. 우리나라의 자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조건부로 최저생계비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근로연계형 복지제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영국형, 미국형, 프랑스형이 종합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제Ⅲ장에서는 우리나라 자활사업의 추진배경과 성격, 추진체계 및 현황을 살펴본다. 자활사업은 1997년 말 경제위기를 배경으로 추진되었으며, 그 성격에 있어서는 근로연계형 복지제도의 범주에 속하지만, 서구사회와는 다른 독특한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제Ⅳ장에서는 자활사업 참여자 및 종료자에 대한 실태조사결과를 정리하였으며, 제Ⅴ장에서는 이를 토대로 자활사업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였다. 자활사업에 대한 평가는 크게 집행과정 및 전달체계에 대한 평가와 자활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로 나누어질 수 있다. 복지제도의 역사가 일천한 상태에서 압축적으로 진행된 우리나라의 자활사업은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특히 적정수준의 근로소득공제율 도입, 자활프로그램의 내실화, 자활지원서비스의 강화, 복지 및 고용정책의 합리적 조율 등은 향후 자활사업의 성공을 위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Ⅵ장에서는 자활사업의 성공을 위한 몇 가지 정책방안을 제시한다.

II. 자활사업의 이론적 배경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과 함께 강화된 자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빈곤계층에게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실시”(법 제9조 제5항)한다는 점에서 서구의 근로연계형 복지(workfare)를 도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김수현, 2001).¹⁾ 또한 그 내용에 있어서는 미국형, 영국형, 프랑스형이 혼합되어 적극적인 구직활동, 직업훈련, 사회적 일자리 등이 강조되고 있다.²⁾ 본 장에서는 자활사업의 이론적 배경을 이루고 있는 근로연계형 복지제도의 내용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외국사례를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 자활사업의 현주소를 파악하고자 한다.

1. 근로연계형 복지제도

비록 정확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근로연계형 복지(workfare/welfare-to-work)는 복지수혜자들을 노동시장으로 유도하는 일련의 정책을 포괄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근로연계형 복지전략의 도입은 전통적 복지체계가 오늘날의 사회경제적 환경과 노동시장조건에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는 믿음에 기초하고 있다. 1960년대와 1970

1) 한편 황덕순(2000)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의 자활사업은 조건부수급자에게 근로 관련 활동에 대한 참여를 의무화한다는 점에서 강제적 성격, 즉 근로연계형 복지(workfare)로서의 성격과 복지수혜자에게 다양한 노동시장정책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취업을 촉진하는 서비스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2) 이와 같은 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함한 한국의 사회복지모형은 유럽형과 미국형의 두 개의 경로가 분화하지 않은 상태로 발전하고 있는 중이라고 할 수 있다(조재희, 2001).

년대에 개발된 복지체계 및 고용정책은 소득보조 또는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을 통하여 일시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에 기초하고 있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OECD 국가들은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는 가운데 낮은 경제활동참가율과 지속적인 고실업을 경험하였다. 또한 복지의존(welfare dependency)의 증대는 막대한 재정지출을 초래하여 다른 분야의 공공투자를 제약하였다. 동시에 새로운 기술의 출현, 경쟁의 강화, 세계화(globalization) 등으로 인해 숙련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노동시장의 요구가 변화되었다. 그러나 전통적인 복지·고용정책 모형(welfare and employment policy models)은 노동시장으로부터 이탈된 노동자들의 숙련과 고용가능성을 향상시키지 못하였다. 더욱이 기존의 복지체계에 내재된 근로유인과 신호체계(work incentives and signals)는 노동자의 근로의욕을 저하시켜 복지의존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비판되었다(OECD, 1999).

이와 같은 비판적 분위기를 배경으로 1990년대 이후 서구사회는 시장논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존의 복지체계를 개혁하였다. Stoesz and Saunders(1999)에 따르면 노동시장의 역할을 강조하는 복지개혁은 사회복지에 시장원리를 적용하는 것으로서 기업복지(corporate welfare)와 구별되는 복지자본주의(welfare capitalism)로 특징지어진다. 즉 빈곤에 대처하는 새로운 차원으로서의 복지자본주의는 근로유인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통합적인 조세정책 및 복지정책, 빈곤층에 대한 자산형성 능력의 강화,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한 빈곤문제의 집합적 대응 방식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1996년 미국의 복지개혁(PRWORA)에서는 복지수혜자들을 노동시장에 빠른 시일 내에 통합시키려는 정책의지가 강력히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지는 복지수혜자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경우 국가 전체의 생산능력이 증가된다는 이론에 의해 뒷받침되었다(Lerman, Loprest and Ratcliffe, 1999). 그러나 이와 같은 낙관적 믿음은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저임금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또한 일자리가 사회집단간에 골고루 분배되지 않는

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있다(서용석, 2000). 즉 저학력, 고연령, 여자 등의 취약계층들은 다른 집단에 비해 저임금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갖는다. 특히 지역차원에서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수급자격을 박탈당한 복지수혜자들은 심각한 실업상태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경우 저숙련 노동자들은 임금하락과 실업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Lerman, Loprest and Ratcliffe, 1999).

한편 근로연계형 복지제도에 있어서 전달체계의 효율성은 대부분의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공통의 문제라고 할 수 있으며, 이들 국가는 지역단위의 복지·고용정책을 강조함으로써 이와 같은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즉 근로연계형 복지정책은 궁극적으로 지역차원에서 시행되기 때문에 지역단위의 정책은 이해당사자의 요구를 보다 정확히 반영하고, 지역에 소재한 구직자, 기업, 민간단체 및 고용안정기관의 이니셔티브와 역량을 동원함으로써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³⁾ 그러나 지역단위의 근로연계형 복지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분권화(decentralization) 방식과 정책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복지수혜자에 대한 불공평한 혜택, 재정지원의 지역 간 불평등, 적절한 업무처리능력의 부재, 지방정부의 개입에 따른 정책의 중복, 부적절한 조정 및 책임회피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OECD, 1999).

3) 복지·고용정책을 동력화할 수 있는 지역차원의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에서는 인력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정보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응한 효과적인 정책을 제시할 수 있다. 둘째, 지역에서는 고용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의 정책들이 통합적으로 조정될 수 있으며, 그 결과 정책의 중복으로 인한 낭비를 최소화하고 정책간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특히 실업문제가 심각할 경우 사회적 배제의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원이 지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단위의 파트너십을 통해 이와 같은 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셋째, 지역에서는 정책목표를 지원하는 지역주민, 기업가, 민간단체의 동원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감대의 형성이 용이하다(OECD, 1999).

첫째, 지역차원의 관리는 근로연계형 복지정책을 보다 효과적이게 할 수 있지만, 지방정부의 유연성과 중앙정부의 정책체계가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즉 지방정부가 지역특성에 적합한 새로운 정책을 제시한다면 지방정부의 유연성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정책체계는 지역간 형평과 지원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지방정부에 대한 적절한 재정 및 기술지원을 보장해야 한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정책목표가 손상되지 않는 가운데 지방정부로의 분권화가 추진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차원의 다양한 정책과 발전전략을 조정하기 위해 지역파트너십(local partnership)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파트너십이 항상 용이하게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파트너들 사이에 원활한 협력관계가 조성되지 않을 경우 지역단위의 정책조정과 지역특성화 노력은 중앙정부에 의해 수행되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일부 계층에 의해 파트너십이 주도될 경우 정책목표가 왜곡되고, 다른 파트너들의 참여가 배제될 수 있다. 따라서 파트너십이 가장 잘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셋째, 근로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적절한 지역정책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부터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강조되는 추세를 반영하여 지역차원의 One-stop-shop, 개인상담원, 취업알선, 직업훈련 및 근로경험 프로젝트, 전직지원프로그램 등이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나 근로연계형 복지제도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함께 근로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한 직업훈련프로그램의 개발과 이들을 고용할 수 있는 사회적 일자리의 창출이 요구된다. 특히 경기침체에 있어서 사회적 일자리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2. 외국 사례

근로연계형 복지체계는 크게 근로회피자에 대한 징벌을 강조하는 체제와 복지수혜자의 사회통합을 강조하는 체제로 양분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는 두 가지 성격을 복합적으로 갖고 있다.⁴⁾ 상대적으로 전

자의 성격을 강조하는 미국은 근로우선의 철학(philosophy of work-first)을 바탕으로 복지급여의 수급기간을 제한하고 있으며, 호주는 상호의무(mutual obligation)의 개념을 도입하여 구직활동기간에도 직업훈련 또는 지역봉사활동과 같은 Activity Test에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다. 반면 후자의 성격을 강조하는 영국의 경우 근로취약계층의 고용가능성을 증대시키는 직업훈련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프랑스는 근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일자리의 창출을 중시하고 있다(OECD, 1999).

첫째, 미국의 경우 근로연계형 복지개혁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양 차원에서 도입되었으며, 수급기간의 제한과 근로우선의 철학(philosophy of work-first)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1996년 복지개혁(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 PRWORA)은 저소득가구에 대한 연방정부의 복지정책을 크게 변화시켰다. 부양아동가족지원(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 AFDC)을 대체한 빈곤가정 일시지원(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TANF)하에서 부양아동가족을 지원하는 연방정부의 복지기금은 주정부에 대한 정액교부금(block grant)의 형태로 전환되어 연방정부의 복지 프로그램과 더 이상 연계되지 않게 되었다. TANF 체계하에서 주정부의 정액교부금 이용에 대한 자율성이 크게 증대되었지만, 연방정부는 주정부에 복지급여 수혜자의 감소와 근로참여 또는 근로연계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요구하였다. 이전의 복지프로그램은 수혜자의 구직기회를 향상시키기 위한 직업훈련과 기능개발에 노력하였지만, 1996년의 복지개혁은 수혜자를 신속히 일자리로 연결시키는 근로우선(work-first)의 전략을 강조하였다.

특히 미국의 경우 다음의 몇 가지 측면에서 공공직업안정기관(Public Employment Service)의 역할을 중요시하였다(OECD, 1999). 첫째, 복지

-
- 4) 한편 근로연계형 복지제도는 복지수급자의 조기취업을 강조하는 노동시장연결 모델과 교육 및 훈련을 중시하는 인적자본개발 모델로 구분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김종일(2000), 이장원(2001) 참조.

급여 수혜자들이 안정적이고 보수가 좋은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즉 복지급여 수혜자들이 일자리를 구하더라도 오랜 기간을 안정적으로 취업하면서 빈곤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기 때문인 것이다. 둘째, 경기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필요성은 1996년 복지개혁 이후 복지급여 수혜자의 감소를 복지체계의 변화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호경기의 결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경기침체기에는 복지급여 수혜자가 급격히 증가할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요구되는 근로우선의 조건이 충족되기 어렵다. 셋째, 복지급여 수혜자의 기능개발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 1996년 복지개혁의 핵심은 교육의 유예(learn later)를 동반하는 근로우선(work-first)의 접근방식이지만, 경기침체기에는 저숙련 복지급여 수혜자의 구직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넷째, 새로운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체계적이고도 지속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특히 변화된 복지제도의 경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야 복지급여 수급자의 행태를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공공직업안정기관을 중심으로 관련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복지급여 수급자의 원활한 취업을 위해 각종의 지원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공공직업안정기관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다.

둘째, 호주의 근로연계형 복지정책은 1997년의 제도개혁을 배경으로 추진되었으며, 공공프로그램의 민간위탁을 포함하여 고용서비스의 전달 체계에 급진적인 변화가 이루어졌다. 과거에는 대부분의 고용서비스가 공공직업안정기관의 지역사무소(Commonwealth Employment Service: CES)를 통해 제공되었지만, 1997년 이후 CES에 의해 수행되었던 상담 및 취업알선 업무가 ESPs(Employment Service Providers)로 알려진 대행업체에 위탁되었다. 이들 대행업체는 구직자들에게 구인처의 알선, 직업훈련기관으로의 연결, 근로경험프로그램의 제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는 선불로 지급되고, 나머지는 고용서비스의 성과에 따라 지급된다. 또한 여타의 CES 기능들이 사회보장국(Department for Social Security: DSS)의 지

역복지행정서비스와 통합되어 센터링크(Centrelink)로 발족하고, 실업자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센터링크는 복지급여의 관리, 구직자의 등록, 취업상담 및 알선 등을 제공한다. 이와 같은 제도개혁을 배경으로 호주의 고용정책은 상호의무(mutual obligation)의 개념과 보다 엄격한 근로 및 구직요건을 도입하였다. 상호의무의 개념에 따라 최소한 6개월의 실업급여를 받는 구직자들은 구직활동기간에 직업훈련 또는 지역봉사활동과 같은 Activity Test에 참여해야 한다. 실업급여는 이와 같은 Activity Test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제공되며, 복지수혜자의 적극적인 구직활동과 고용가능성의 개선을 목표로 한다.

셋째, 영국의 근로연계형 복지전략은 지속적인 고실업, 일부 계층의 사회적 배제, 지역간 실업률의 격차 등을 문제시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최근 노동시장 조건이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구인·구직간의 불일치는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으며, 대도시를 중심으로 장기실업자의 비율이 높다. 초보적인 기능과 근로동기가 결여된 청년층, 50대 이상 중고령층, 장애인, 독신가장 등의 구직가능성은 낮고, 이들의 실업기간이 길수록 일자리를 찾기가 더욱 어렵게 되었다. 영국은 이들 근로취약계층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교육과 기술습득에 대한 투자, 근로가구세액공제(Working Families Tax Credit)를 포함한 조세 및 급여체계의 개선, 최저임금,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등을 추진하였다. 뉴딜프로그램(New Deal programme)은 이러한 근로연계형 복지전략의 하나로써 장기실업자, 청년실업자 및 여타의 배제된 계층에게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강화하려는 새로운 시도이다. 뉴딜프로그램의 목적은 단지 취약계층을 복지급여로부터 노동시장으로 밀어 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상담, 근로경험, 직업훈련 등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기능과 고용가능성을 제고시키는 것에 있다. 즉 뉴딜프로그램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와 복지의존(benefit dependency)의 문제를 완화하여 취약계층의 고용가능성을 증대시키고 그들의 경제적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뉴딜프로그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동시장의 기능개편을 통한 구인·구직 불일치의 완화, 노동력의 지역간

이동, 구인·구직 연결시스템의 개발, 취약계층의 워크넷(worknet) 활용증대 방안 등이 추진되었다.

넷째, 영국, 미국, 호주의 경우 복지급여의 조건으로 근로활동 또는 고용가능성의 증대 노력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프랑스는 근로연계형 복지의 노동강제적 측면보다 근로취약계층을 위한 직접적인 고용기회의 창출을 중시하고 있다. 따라서 일종의 소득보조에 해당하는 RMI(Revenu Minium d'Insertion)는 수급자들에게 어떠한 조건도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RMI 청구자들은 취업을 지원하는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Insertion par l'economique), 특히 직업훈련의 참여를 제안받는다. 프랑스에서 일자리창출은 새로운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분야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Nouveaux Services-Emplois Jeunes 프로그램, 장기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Contrats Emploi Solidarite 프로그램, 근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 등이 주요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특히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중간영역에서 활동하는 사회적 기업의 경우 근로취약계층에 대한 고용기회의 제공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요구되는 재화 및 용역을 생산한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일자리창출 방식의 성공 여부는 새로이 창출된 일자리가 장기적으로 얼마나 오랜 동안 지속될 것인가에 의해 평가될 것이다.

이 외에도 OECD 국가들은 노동시장정책의 활성화, 복지급여의 재구성, 지원제도의 조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근로연계형 복지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덴마크의 경우 1994년에 Active Labor Market Policy Act, Leave Schemes Act, Act for Activation at the Local Level 등을 통해 노동시장을 전면적으로 개편하였다. 뉴질랜드의 경우 Community Wage가 기존의 실업급여를 대체하여 지역사회 봉사활동 또는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수당이 지급되었으며, One-stop-shop을 통해 공공직업안정과 소득보조 업무를 통합하였다. 네덜란드의 경우 보다 엄격한 구직활동 및 근로능력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실업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의 장기화를 예방하고자 하였다.

Ⅲ. 우리나라 자활사업의 현황

2000년 10월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존의 최소복지주의에 입각한 생활보호제도의 한계를 뛰어넘어 현대적인 공공부조제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제도 도입이 노동조합 및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적 발의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복지사에 중요한 분기점을 마련하였다. 1997년 말 IMF 경제위기 이후 대량실업사태로 인해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빈곤층이 급증하는 가운데 최소한의 생계유지에 대해 국가의 책임론이 사회적으로 수용되었고, 공공부조의 청구권이 인정된 상태에서 적어도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에 대해 생계급여가 지급되는 것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도입에 있어서 가장 주목되어야 할 것은 본 제도가 조건부 수급규정을 가진다는 것이며, 동시에 공적부조제도를 노동시장정책과 연계시키는 자활사업의 법적 근거가 된다는 점이다.

1. 자활사업의 추진 배경 및 특징

가. 추진 배경

1997년 말 IMF 경제위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을 통해 자활사업이 강화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경제위기 이후 실업자가 급증하고 있었지만,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제도는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었다. IMF 관리체계에 편입된 한국 경제는 구제금융의 조건에 대응하여 1998년 이후 경제 전반에 걸쳐 구조조정을 전개하였고, 그 과정에서 실업자의 급격한 증가, 실질임금의 하락, 분배구조의 악화를 초래하였다. 1997

년 2.6%(실업자 556천명)에 불과하던 실업률은 1998년 1/4분기에 5.6%(실업자 1,179천명)로 증가하였으며, 1998년의 실질임금은 전년 대비 10% 이상 감소하였다. 실업자의 급격한 증가와 실질임금의 감소를 반영하여 계층간 소득분배가 더욱 악화되었다. 소득분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GINI계수 및 빈곤지수는 1997년 각각 28.80, 3.0에서 1998년 1/4분기 32.22, 6.4로 증가하였다(강병구, 2001).

경제위기 이후 실업자가 급증하고 있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고용보험 및 생활보호제도의 적용범위가 협소하고 실업부조제도가 없는 상태에서 두 제도간의 간극이 크기 때문에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가 넓은 상태에 있었다.⁵⁾ 더욱이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소진 이후 계속 실업상태에 있을 경우 빈곤선인 생활보호대상자로 떨어지기 전까지는 아무런 생계보호제도가 없는 실정이었다(한국노동연구원, 1998).

1995년 7월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된 이래 적용대상자의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지만, 1998년 5월 현재 실업급여 적용대상자는 5인 이상 사업장의 상용직 근로자에 한정되고, 자영업 실업자, 신규실업자, 일용직 근로자 등은 여전히 적용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동시기에 약 150만명의 전체 실업자 가운데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으로부터의 실업자 비율은 30%에 불과하였으며,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실업자는 전체 실업자의 7.0%에 지나지 않았다. 또한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은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이 제한되어 있었다(유길상 외, 1998). 한편 1997년 현재 우리나라의 생활보호제도는 그 대상범위가 극히 협소하여

5) 유길상 외(1998)에 의하면 사회안전망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있다. “사회안전망이란 삶의 주기에 따라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노령, 질병, 재해, 장애, 실업, 부양자의 사망, 출산, 아동양육 등의 다양한 위험으로 인해 빈곤의 상태로 떨어지지 않도록 사회적 차원에서 보장하고, 이미 빈곤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하여 빈곤으로부터 탈피하도록 도와주는 제도적 장치이다.” 반면 Ke-young Chu and Sanjeev Gupta(1998)는 사회안전망을 “구조조정을 위한 경제개혁조치가 그 사회의 취약계층에게 미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로 규정하였다.

전체 인구의 3.1%만이 생활보호대상자에 편입되어 있었으며, 보장수준 또한 비현실적으로 낮은 상태에 있었다.⁶⁾ <표 III-1>에서 보듯이 생활 보호대상자는 1992년 이후 계속 감소하는 추세에 있었으며, 1997년 거택보호, 시설보호, 자활보호를 포괄하는 전체 생활보호대상자는 1,414천 명을 기록하고 있었다.

<표 III-1> 생활보호대상자의 규모 추이

(단위 : 천명, %)

	1992	1995	1996	1997
전 체	2,176 (5.0)	1,755 (3.9)	1,506 (3.3)	1,414 (3.1)
거택보호	338	307	296	297
시설보호	83	78	76	77
자활보호	1,755	1,370	1,040	1,040

주 : ()안의 수치는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 유길상 외(1998).

이와 같이 사회안전망제도가 취약한 가운데 정부는 한시생활보호제도와 공공근로사업을 통해 실직자들의 생계를 지원하였지만, 시민단체와 사회복지계는 임시방편적인 생계지원책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빈곤대책차원의 제도를 요구하였다. 특히 기존의 생활보호제도는 근로능력자가 있는 가구에게 생계비를 지원하지 않아 실질적인 빈곤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입장에서 빈곤선 이하의 모든 저소득층에게 최저생계를 보호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주장하였다. 1998년 6월 29일 시민단체들이 참여한 「사회보장정책협의모임」은 생활보호제도의 법적 수급자격인

6) 1998년의 경우 1인당 월평균 생계보호비는 121,518원이며, 교육비는 1인당 월평균 5,591원, 의료비는 1인당 월평균 34,967원으로 생계비 총액은 1인당 월평균 약 16만 2천원 수준이었으나, 중소도시 2인 가족 기준 최저생계비는 218천원이었다. 더욱이 자활보호대상자에게는 1인당 월평균 121,518원의 생계보호비가 지급되지 않았다.

인구학적 기준을 철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체입법을 요구하였고, 1998년 7월 23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안)」을 입법청원하였다. 1998년 12월 28일 시민단체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일부 수정을 거쳐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되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상당기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필요성과 형식에 대한 신중론이 계속되었다. 우선 노동부는 근로능력자를 포함하는 생계보호보다는 공공근로사업이나 취업알선 등 고용유지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에서 제도를 반대하였고, 복지부 내에서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위상이나 긴급급여제도의 성격 등을 둘러싸고 시민단체 등과 이견을 보였다. 행정자치부의 경우 전담공무원 충원 및 직제와 관련하여 이견을 보였으며, 경제관련 부처는 예산부담과 근로의욕 저하 문제를 심각히 인식하였다. 그러나 시민단체의 강도 높은 요구와 김대중 대통령의 법 제정 의지가 반영되어, 1999년 9월 7일 제206회 임시국회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통과되고, 2000년 7월 18일 국무회의의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 의결된 후 2000년 10월 1일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김수현, 2001). 이로써 근로능력에 관계 없이 빈곤선 이하의 모든 저소득층은 정부로부터 최저생계비 이상의 생활을 보장받게 되었으며, 근로능력자는 조건부수급자로 분류되어 정부가 제공하는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나. 자활사업의 특징

먼저, 자활사업은 우리나라 복지제도사에서 최초의 근대화된 복지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사회안전망의 제공에 있어 근대적 기준이라 할 수 있는 사회권으로의 정착, 자산 및 소득조사, 근로능력자에 대한 급여조건의 제시 등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담당공무원의 재량권(discretion)에 의존하던 이전의 생활보호제도와는 달리, 보다 세분화된 복지행정체계의 도입을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자활사업의 제도적 근거가 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그 도입에 있어 아래로부터의

복지운동이 정부차원에서 수용된 정책이라는 특징을 가진다(김수현, 2001). 그러나 가장 주목할 것은 주지한 바 있듯이, 자활사업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로연계형(workfare) 복지정책이라는 점이다. 즉 최근 서구 복지국가에 있어서 복지정책의 주요 경향이라고 할 수 있는 ‘복지정책과 고용정책의 통합’의 한국적 사례로 등장한 것이 바로 자활사업이다. 이는 현 정부 복지정책의 기조인 ‘생산적 복지’가 구체적 정책프로그램으로 제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⁷⁾ 생산적 복지는 잘 알려져 있듯이 보편주의적 사회통합의 원칙과 자유주의적 시장경제원리의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구체적인 제도의 수준에서 볼 때, 복지재정의 낭비를 막고 동시에 취업 또는 창업을 통해 실직빈곤계층을 빈곤으로부터 탈출시킨다는 두 가지 목표를 겨냥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서구 복지국가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즉 조건부 급여가 1990년대 이후 서구의 많은 국가들에서 발견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보장지출에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y)의 비중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서 급여의 종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긴급급여, 자활급여가 있다. 이 중에서 근로와 복지를 연계시키는 급여의 형태가 자활급여이다.⁹⁾ 자활급여는 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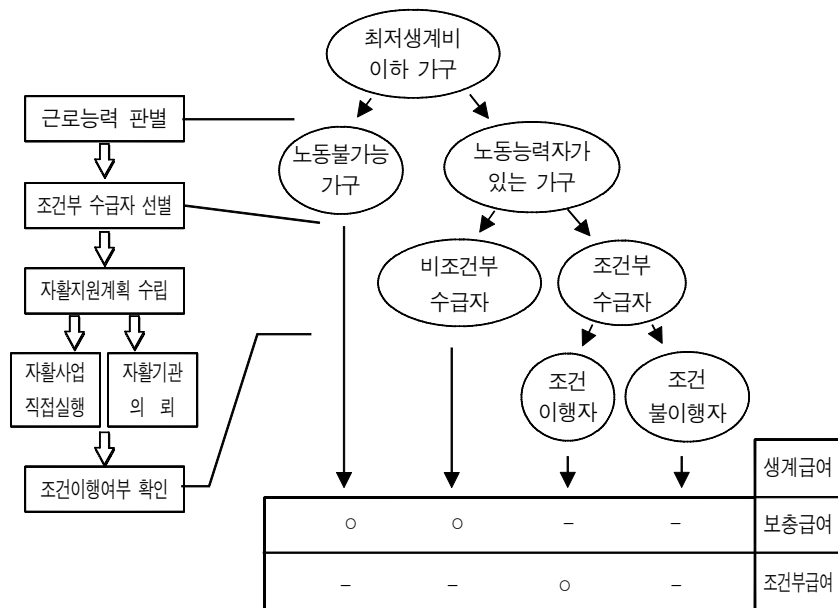
7) “생산적 복지의 세번째 요소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직업능력의 개발을 통해 일할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자활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 이러한 생산적 복지의 구상에 따라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자활 급여제도를 도입하고 있다”(삶의질향상기획단, 2000).

8) 일례로, 1985년과 1995년을 비교할 경우, OECD 국가의 사회보장지출에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차지하는 비중은 4.5%에서 5.4%로 증가하였다(OECD, 1996b).

9) 원래 자활급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한 자활계획을 정부가 수립하고 수급자들을 이 프로그램으로 끌어들여 적절한 근로소득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본래의 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모든 수급자에 대해 가구특성별/근로능력별 자활계획이 수립되어 보다 많은 수급자들이 적절한 노동시장정책 프로그램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한 급여 역시 추가적 급여의 성격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를 위한 인프라 및 예산의 한계로 ‘조건부수급자’에 대해서만 자활급여가 지급되고 있다.

가 제공하는 근로사업, 즉 자활사업 또는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대가로 제공되는 급여라는 점에서 ‘조건부’ 급여이며, 이 조건을 거부할 경우 수급권자가 될 수 없다. 또한 이 자활급여는 여타의 급여에 대한 추가 급여가 아니라, 생계급여를 대체하는 것이다. 즉 [그림 III-1]에서 나타나듯, ‘조건부 수급자’로 판명되면 생계급여를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근로사업이나 자활사업 등의 정부정책사업에 대한 근로명령을 통해 생계비를 확보토록 하는 것이다. 즉 현금지급 대신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래도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족한 생계비를 보충급여 형식으로 지급하게 된다. 만약 조건을 거부했을 경우 조건불이행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에게만 해당 가족구성원 기준에 맞추어 생계급여가 지급된다.

[그림 III-1] 조건부 급여 관련 업무체계



끝으로, 자활사업의 도입을 통해 빈곤탈출을 위한 다양한 경로의 모색과 광범위한 자활지원네트워크의 성립이 가능해 졌다는 점이다. 특히 민관협력체계를 위한 법적 토대가 구축됨으로써 지역민간단체와의 연계체제가 가능해졌다. 이는 복지제도에 대한 이념적 접근에서 볼 때, 복지수행의 주체가 다분화되며,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제도의 성과를 기대하는 복합적 복지(mixed welfare) 혹은 복지다원주의(welfare pluralism)로의 이행을 가능케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¹⁰⁾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활사업은 몇 가지 점에서 서구의 근로연계형 복지체계와는 차별화된 특성을 갖는다. 첫째, 서구사회의 경우 근로연계형 복지체계는 복지의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후적 대안이지만, 우리나라의 자활사업은 복지의존에 대한 예방적 성격을 갖는다. 둘째, 1996년 미국의 복지개혁(PRWORA)이 수급기간을 총 5년으로 제한하면서 복지수혜자의 취업우선(work-first)을 강조하고 있지만,¹¹⁾ 우리나라의 자활사업 참여자는 수급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가운데 다양한 자활프로그램에 선택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셋째, 서구사회의 경우 빈곤계층에 대한 지원이 사업별로 세분화되고 각각의 기준에 따라 수급자가 선정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생

10) 복합적 복지 혹은 복지다원주의에 대해서는 Rein and Rainwater(1987), Rose(1995)를 참조. 예컨대 미국의 경우 1997년 5월 비영리법인으로 결성된 'The Welfare to Work Partnership'을 통해 노동력 부족을 겪고 있는 민간기업에 복지급여 수급자를 알선하여 이들의 고용을 촉진하였다. 1999년 12월 현재 약 12,000개의 기업이 회원으로 참가하고 있으며, 과거 3년 동안 약 65만명의 복지급여 수급자를 취업시킨 것으로 보고되었다(www.welfaretowork.org). 영국의 경우 기업, 지방행정기관, 훈련기관, 지방노동관서, 취업센터, 민간단체 등이 지역단위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노동시장정보를 공유하고, 기능별 인력수요를 파악하여 노동시장에서 요구되는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있다(www.newdeal.gov.uk). 캐나다의 경우 복지급여 수급자에게 근로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Metro's Job Incentive Program을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하였다(www.welfarewatch.toronto.on.ca).

11) TANF 수급자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은 5년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주정부의 재원을 통해서도 수급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

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이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수급권자로 선정될 경우 패키지화된 지원을 일괄적으로 받게 되지만 탈락자에 대해서는 모든 급여가 중지되는 방식(all-or-nothing)으로 운영되고 있다. 넷째, 서구사회의 경우 복지수혜자를 취업으로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근로소득공제제도(미국의 EITC, 영국의 WFTC)를 활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복지수혜자를 취업으로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가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다. 다섯째,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연계형 복지제도를 추진할 수 있는 인프라가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다. 미국의 경우 TANF 수급자가 취업으로 유도될 경우 이들에 대한 정보가 실업보험(unemployment insurance) D/B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복지와 고용정책의 통합적인 운용이 가능하지만, 우리의 경우 자활대상자에 대한 복지 및 고용 정보가 체계적으로 연계되어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자활사업은 조건불이행자에 대한 급여중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수급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는 가운데 고용가능성의 제고 또는 사회적 일자리를 통한 취업기회의 제공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근로연계형 복지체계의 사회통합적 모형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근로연계형 복지제도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상의 인프라는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다.

2. 자활사업의 체계 및 현황

가. 자활사업의 체계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서 자활사업의 추진체계는 [그림 III-2]와 같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갖고 있는 저소득층이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수급대상자 신청을 하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이들에 대한 자산조사 등의 실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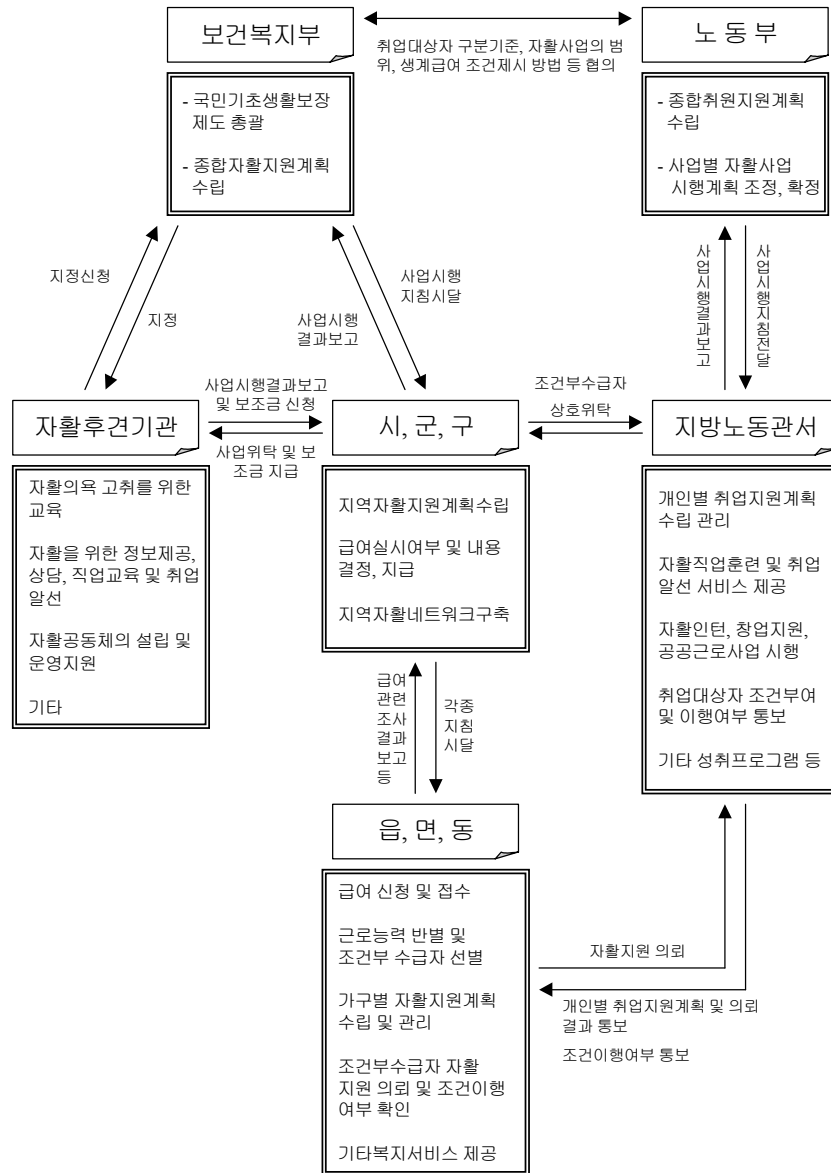
를 통해 대상자를 선발하고 생계비 지급을 결정하게 된다. 대상자로 선발된 수급권자들은 크게 조건부 수급자와 비조건부 수급자로 구분된다. 조건부 수급자란 노동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정부로부터 일정한 조건을 부과받고 이를 이행할 때 수급대상자가 된다는 의미이다. 비조건부 수급자는 최저생계비를 보장받는 데 일정한 조건이 없는 사람들이다.

또한 조건부 수급자는 노동부에서 관리하는 취업대상자와 복지부에서 관리하는 비취업대상자로 구분된다.¹²⁾ 조건부 수급자를 취업대상자와 비취업대상자로 구분하는 목적은 조건부 수급자의 특성에 맞는 자활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생계급여의 조건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즉 조건부 수급자는 근로능력, 자활욕구 및 가구여건 등을 고려하여 취업대상자와 비취업대상자로 구분한다. 기본적으로 비취업대상자에 대해서는 순수한 의미의 자활촉진을, 그리고 취업대상자에 대해서는 취업촉진을 원칙으로 한다.

노동부에서 관리하는 취업대상자에 대한 의뢰 및 관리체계를 살펴보면, 먼저, 읍·면·동 사무소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취업대상자로 분류된 수급자를 전산망으로 고용안정센터에 통지하되, 여기에는 조건부 수급자와 관련된 근로 여부, 가구 특성, 자활방향, 종합의견 등이 포함된다. 또한 합동상담 대상자에 대해서는 자활기관협의체에서 사전 협의 후 전송이 가능하며, 필요시 직업상담원의 이동상담이 가능하다. 이를 통지받은 고용안정센터에서는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취업대상자 및 소속 읍·면·동사무소에 통지해야 하며, 취업지원계획은 최초 상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때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의 수립이 어려울 경우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

12)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취업대상자와 비취업대상자로의 구분은 자활대상자의 근로능력점수표에 기초하고 있다. 근로능력에 대한 점수산정은 연령, 건강상태, 직업이력 등을 종합하여 이루어지며, 70점 이상인 경우 자활욕구 및 가구여건 등을 고려하여 취업대상자로 분류된다(노동부, 2000).

[그림 III-2] 자활사업 운영체계



지 전담공무원은 직업상담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재심사 요청후 14일 이내에 최종결정 통지해야 한다.

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주요 자활사업은 <표 III-2>에 요약된 바와 같이 취업알선 및 구직활동 지원, 직업훈련, 자활인턴, 창업지원, 공공근

<표 III-2> 노동부 시행 주요 자활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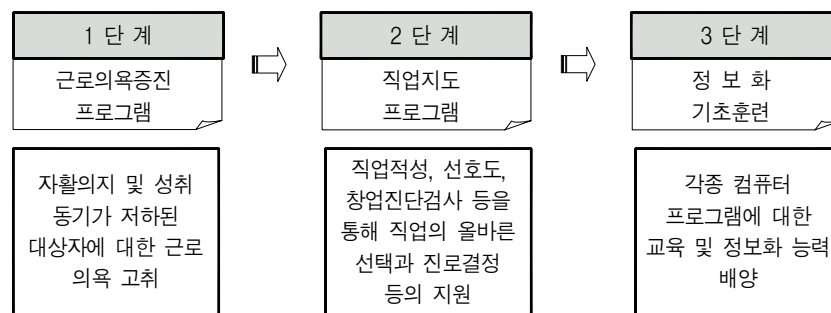
취업알선 및 구직 활동지원	목 적	구직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취업촉진
	대 상 자	근로능력, 가구여건 등이 취업에 적합한 자로 구직직종에의 취업 경력, 관련 분야 자격증 여부, 취업 욕구 등을 고려 선발
	실시기관	고용안정센터
	사업내용	- 청소년, 신규졸업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지도와 직장체험 프로그램 운영 - 일일취업센터를 통해 건설일용직 및 파트타임 자활대상자에 대 한 자활사업 시행방안 마련
직업훈련	목 적	취업 및 창업훈련을 실시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계층의 자활, 자립 촉진
	대 상 자	취업대상자 중 취업, 창업은 희망하지만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자로서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자
	실시기관	(시행규칙 제21조)
	사업내용	- 대상자 특성 및 산업수요를 반영한 장단기 훈련 실시 - 정보통신, 신기술제조업 등 인력수요가 많은 성장산업의 직종 및 기능활용도가 높은 직종 위주로 실시 - 수강장려금, 근로학자금 대부 등을 통해 참여자의 자기개발욕구 촉진 - 근로자 1인 2자격 갖기 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전문기능인 양성
자활인턴	목 적	- 현장연수기회의 제공을 통한 취업능력 배양 - 정규채용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조기취업 촉진
	대 상 자	- 조건부 수급자 중 취업경력, 능력이 취약하여 근로경험 습득이 필요한 자 - 직업훈련프로그램 이수자 - 기타 취업지원계획에 따라 자활인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대상기관	행정기관 및 사회단체를 제외한 고용보험 사업장
	사업내용	자활대상자를 인턴으로 채용하는 기업에 1인당 월 50만원씩 3개월 간 지원(정규직 채용시 3개월간 추가지원)

창업지원	목 적	창업희망 취업대상자에게 점포임대 등을 통해 신속한 자활자립 기반 조성
	대 상 자	- 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취업대상자 중 창업희망자 - 창업희망자는 창업지원사업계획서를 고용안정센터에 제출 -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안정센터로부터 통보받은 창업지원대상자에 대해 창업 관련 상담 실시 후, 적성, 경력, 자금조달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 선정
	실시기관	근로복지공단
	사업내용	- 가구당 5,000만원 한도의 전세점포를 지원하고 대상자는 전세금에 대한 연리 7.5%에 해당하는 이자를 매월 납부 - 지원기간은 1년 또는 2년으로 하되, 최장 6년까지 연장 가능
공공근로사업 (구직세일즈)	목 적	여타 자활지원프로그램 연계가 어렵거나 참여를 위해 대기하는 동안 한시적인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근로능력 유지와 근로의욕 고취
	대상자 및 사업내용	- 구직세일즈 공공근로는 1년간 1단계 참여(3개월)를 원칙으로 하되, 단계 마지막 1개월 미만 참여의 경우 다음 단계 참여 보장 - 여타 공공근로의 경우, 1년간 2단계 참여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 특성상 연속적인 참여가 요구되는 경우 1년간 4단계(12개월) 참여 허용

로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1년 7월부터 ‘직업적응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취업알선 및 구직활동 지원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취업촉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직업훈련은 취업 및 창업훈련을 통한 빈곤계층의 자활, 자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활인턴은 자활대상자를 인턴으로 채용하는 기업에 1인당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임금을 보조하는 것으로 현장연수기회의 제공에 따른 취업능력의 배양 및 정규직으로의 취업촉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창업지원은 자활대상자에게 창업훈련 및 점포임대를 통해 자활을 유도하며, 공공근로사업은 자활대상자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근로능력을 유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일종의 입문과정(gateway)이라고 할 수 있는 ‘직업적응훈련’은 다음의 세 가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첫째, 실직기간

중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의 악화를 예방하고 강한 취업의욕을 부여함으로써 성공적인 취업가능성을 제고하며, 둘째, 취업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분석할 수 있는 능력 배양하고, 셋째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한 기초직무 능력을 배양한다. 직업적응훈련은 총 4~7주간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근로의욕증진프로그램(성취프로그램)이 1~2주간 시행되고, 직업지도프로그램, 그리고 정보화기초프로그램이 2~4주 시행된다.

[그림 III-3] 직업적응훈련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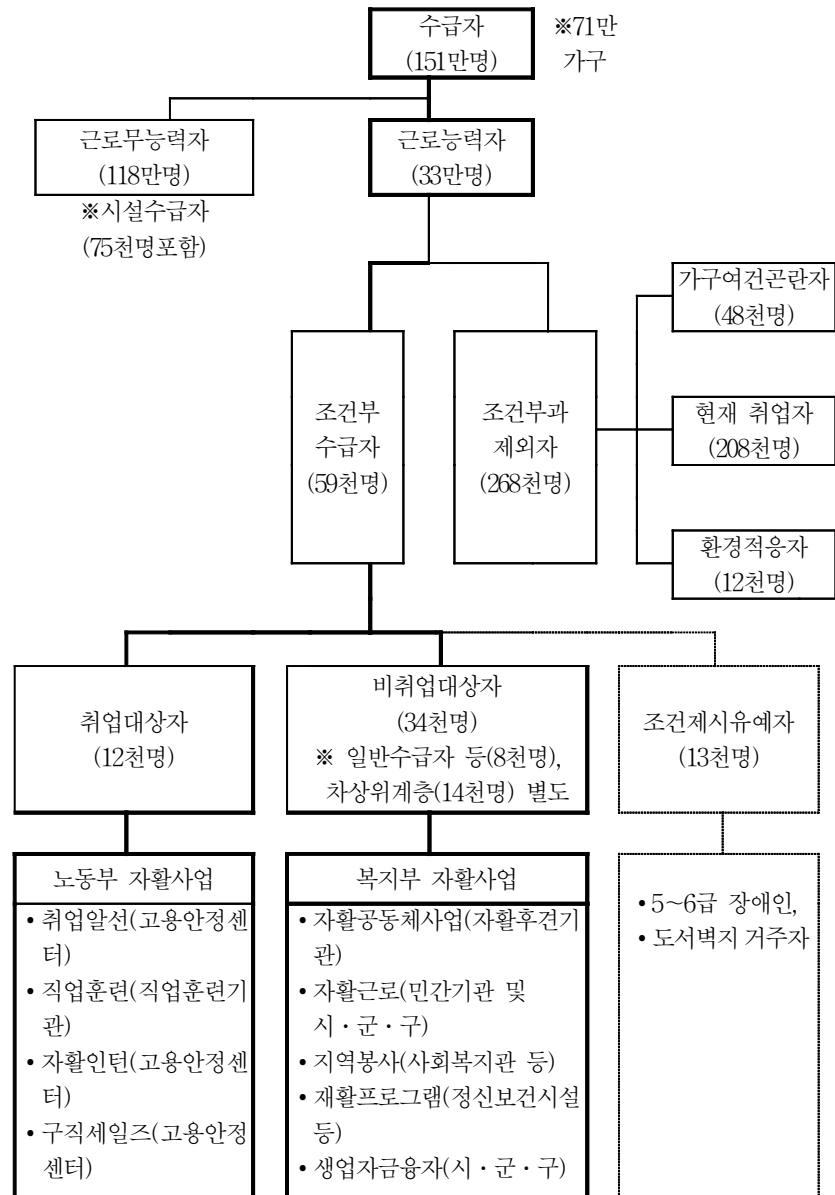


나. 자활사업의 추진실적

2001년 10월말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는 71만 가구 151만명에 달하고 있다. 이 가운데 33만명이 근로능력자로 분류되었지만, 268천명은 가구여건곤란자(48천명), 현재취업자(208천명), 환경적응필요자(12천명)의 사유로 조건부과에서 제외되었다.¹³⁾ 나머지 59천명이 조건부 수급자로서 취업대상자(12천명), 비취업대상자(34천명), 조건제시유예자(13천명)를 구성하고 있다.

13) 가구여건곤란자는 미취학자녀의 양육, 치매노인 간병 등이 필요한 수급자이며, 환경적응필요자는 군제대, 학교졸업, 교도소 출소 등 개인사유에 의해 조건부과가 제외된 수급자이다.

[그림 III-4] 조건부 수급자 유형 및 사업분류



자료 :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지원단(2001).

2001년 자활사업예산은 국비(1,900억원)와 지방비(305억원)를 합하여 총 2,205억원이지만, 노동부 자활인턴지원사업 예산 250억원이 전용되어 10월말 현재 1,955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 가운데 1,229억원(62.9%)은 복지부 자활사업에 지출되고 있으며, 나머지 726억원(37.1%)은 노동부 자활사업에 지출되고 있다. 복지부 자활사업의 경우 국비와 지방비로 구성되며, 국비지원비율은 서울(50%), 지방(80%), 자활후견기관(70%)이며, 노동부의 자활사업은 전액 국고부담으로 진행된다. 복지부 자활예산 가운데 지역봉사예산은 당초 177억원이었으나, 135억원이 업그레이트형 및 취로형 자활근로사업으로 이전되어 10월말 현재 42억원으로 감소되었다. 노동부 자활사업예산의 구성을 보면 직업훈련이

<표 III-3> 자활사업 예산 현황

(단위 : 억원)

			국 비	지방비	비 고
예 산 총 액		2,205 (재특 2,605)	1,900(2,300)	305	현재 국비 1,650(△250)
복지부	자 활 공 동 체	208	141	67	지역봉사의 국고 135억원 추가
	자 활 근 로	786 (963)	600 (735)	186 (228)	
	지 역 봉 사	227(54)	177(42)	50(12)	현재 지역봉사 국비 42억원
	재활 프로그램	3.2	2.5	0.7	
	생업 자금 융자	(재특 400)	(400)		
소 계		1,229(1,629)	924(1,324)	305	
노동부	직 업 훈 련	558	558		전용 250억원
	취 업 알 선	118	118		
	자 활 인 턴	당초 300 현재 50	300 (50)		
	구 직 세 일 즈	0	0	0	
소 계		976	976	0	

주 : 예산편성 기준(국고 1,900억원)으로 작성한 것임.

자료 : 국민기초생활보장자활지원단(2001).

76.9%로 가장 크고, 취업알선과 자활인턴이 각각 16.2%, 6.9%를 차지하고 있다. 구직세일즈의 경우 기존의 공공근로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자활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2001년 10월말 현재 대상자는 81천명이지만, 실질적으로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수급자는 52천명이다. 이 가운데 32천명(61.5%)은 조건부수급자이고, 나머지 20천명(38.5%)은 비조건부수급자이다. 이들은 복지부 자활사업(48천명)과 노동부자활사업(4천명)에 각각 참여하고 있다.

<표 III-4> 자활사업 추진 현황

(단위 : 천명)

사 업 별		대 상		참 여	
		누 계	10월말 현재	누 계	10월말 현재
전 체		149	81	115	52
복지부	조 건 부	95	59	62	32
	비 조 건 부	54	22	53	20
	소 계	117	56	107	48
	조 건 부	63	34	54	28
	비 조 건 부	54	22	53	20
	소 계	19	12	8	4
노동부	조 건 부	19	12	8	4
	비 조 건 부	-	-	-	-
	소 계	13	13	-	-
조건제시유예	조 건 부	13	13	-	-
	비 조 건 부	-	-	-	-
	소 계	13	13	-	-

주 : 누계에 대한 통계는 동일인이 여러 사업에 연속참여, 자활사업 중지 후 다시 참여, 취업자에서 비취업자로 분류, 일부 지자체의 연인원 파악 잘못 등 통계파악상 혼란으로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음.

자료 : 국민기초생활보장자활지원단(2001).

2001년 노동부 자활사업은 당초 취업대상자 4만명을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10월 현재 총 9,608명의 취업대상자가 자활사업에 투입되었으며, 직업적응훈련(46.5%)과 직업훈련(40.7%)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참여자 가운데 자활성공으로 분류된 취업대상자는 682명으로 7.1%의 자활성공비율을 보이지만, 취업알선을 포함할 경우 자활성공자는 4,560명으로 증가하게 된다. 한편 노동부 자활사업 종료자는 2000년 10월 이후 취업대상자로 의뢰된 29,209명 중 현재 투입중인 4,041명을 제외한 25,024명이다. 이들의 종료사유를 보면 <표 III-6>에 나타나듯이 4,560명(18.2%)이 취업 및 창업으로 유도되어 자활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취업 및 창업 이외의 사유로는 조건불이행(42.0%)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부적격자, 소재불명, 수급권탈락이 각각 27.9%, 3.4%, 3.1%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2001년 10월 현재 노동부 자활사업에는 취업대상자 4,041명 가운데 취업지원계획수립중인 1,149명을 제외한 2,892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직업훈련(45.1%)과 취업알선(41.5%)의 참여율이 96.6%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구직세일즈공공근로와 자활인턴사업에는 각각 2.6%, 6.7%만

<표 III-5> 노동부 자활사업 추진실적(2001년 10월)

(단위 : 명, %)

	투입인원		자활성공		비 고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직업적응훈련	4,470	46.5	-	-	2001년 하반기 신규 도입
직업훈련	3,909	40.7	166	24.3	
자활인턴	576	6.0	248	36.4	
구직세일즈공공근로	628	6.5	265	38.9	구직세일즈공공근로에 투입 창업지원 등
기타	25	0.3	3	0.4	
전 체	9,608	100.0	682	100.0	취업알선 포함시 자활성공은 4,560명임

자료 : 노동부 내부자료(2001).

이 참여하고 있어서 노동부 자활사업이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을 강조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표 III-6> 자활지원 종료자 현황(2001년 10월)

(단위 : 명, %)

	자활성공		취업·창업 이외의 사유				
	취업	창업	부적격자	소재불명	조건불이행	수급권탈락	기타
25,024	4,475 (17.9)	85 (0.3)	6,983 (27.9)	842 (3.4)	10,517 (42.0)	778 (3.1)	1,344 (5.4)

주 : ()안의 수치는 구성비임.

자료 : 노동부 내부자료(2001).

<표 III-7> 자활사업 참여 현황(2001년 10월)

(단위 : 명, %)

	참여인원	구성비
취업알선	1,199	41.5
직업훈련	1,305	45.1
구직세일즈 공공근로	75	2.6
자활인턴	195	6.7
기타	118	4.1
전 체	2,892	100.0

자료 : 노동부 내부자료(2001).

IV. 자활사업 실태조사 결과

1. 조사방법 및 기간

노동부가 시행하고 있는 자활취업대상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001년 10월 말 현재 자활사업 참여자 2,892명과 취업 및 창업으로 인해 자활사업을 종료한 4,560명의 명단을 전국의 고용안정센터로부터 입수하였다. 이 가운데 참여자 548명, 종료자 554명을 무작위추출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각각 505명과 501명에 대한 설문지를 수거하여 92.2%, 90.4%의 수거율을 기록하였다. 설문방식은 방문면접과 전화면접을 병행하였으며, 2001년 11월 12일~11월 30일의 기간에 이루어졌다.

응답자는 지역별로 서울(18.1%), 부산(13.8%), 대구(3.1%), 인천(5.1%), 광주(12.1%), 대전(2.1%), 울산(0.6%), 경기(18.9%), 강원(3.9%), 충북(2.3%), 충남(1.3%), 전북(5.4%), 전남(2.2%), 경북(5.3%), 경남(3.9%), 제주(2.1%)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또한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 지역(54.7%), 중소도시지역(39.0%), 군단위지역(6.3%)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2. 자활취업대상자의 특성

가. 인구사회학적 특성

자활사업 참여자의 취업 및 고용안정성, 임금수준 등은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자활욕구, 가구별 특성, 지역실업률, 자활사업의 효과

성, 전달체계의 합리성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자활의 가능성을 규정하는 일차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자활사업 참여자 및 종료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보면 <표 IV-1>에 나타나듯이 취업으로 유도된 종료자 501명 가운데 여자의 비율은 58.1%로 현재 노동부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취업대상자(505명)의 53.9%보다 약간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연령별 분포를 보면 전자의 경우 20~30대의 비중이 69.9%를 차지한 반면 후자의 경우 66.5%의 비중을 보여 취업으로 유도된 종료자의 청장년층 비중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학력별 분포에 있어서는 두 집단 모두 고졸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 각각 60.8%, 60.5%의 비중을 보이고 있지만, 후자의 경우 전문대졸 이상의 비중이 19.2%를 기록하여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혼인 상태에 있어서는 두 집단간에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며, 미혼자의 비중이 각각 47.5%, 45.0%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취업으로 유도된 종료자 가운데 57.1%가 비세대주로 응답하여 현재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집단에 비해 비세대주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취업으로 유도된 자활사업 종료자 가운데 62.3%는 조사 시점에 서 취업상태에 있었지만, 나머지 37.7%는 취업하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 현재 취업을 유지하고 있는 집단의 경우 여자(61.2%), 30대(32.2%), 고졸(63.5%), 기혼(35.3%), 세대주(44.2%)의 비중이 비취업상태에 있는 집단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반면 후자의 경우 남자(47.1%), 20세 미만(9.0%), 초등졸 이하(12.7%), 미혼(50.8%), 비세대주(59.3%)의 비중이 전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취업으로 유도된 자활사업 종료자라 할지라도 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일자리의 안정성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남자, 20세 미만, 초등졸 이하의 저학력층, 미혼자, 비세대주의 경우 취업이 불안정한 상태에 있음을 보이고 있다.

<표 IV-1> 자활사업 참여자 및 종료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 %)

		참여자	종 료 자		
			전 체	현재 취업자	현재 비취업자
성별	남자	46.1	41.9	38.8	47.1
	여자	53.9	58.1	61.2	52.9
연령별	20세 미만	10.7	6.4	4.8	9.0
	20대	33.3	39.8	39.9	39.2
	30대	33.2	30.1	32.2	28.7
	40대	19.2	21.4	21.3	21.1
	50대 이상	3.6	1.6	1.2	2.1
학력별	초등졸 이하	6.5	8.8	6.4	12.7
	중졸	12.9	15.6	15.4	15.9
	고졸	60.8	60.5	63.5	55.6
	전문대졸 이상	19.2	15.2	14.8	15.9
	무응답	0.6	0.0	0.0	0.0
혼인상태	기혼	32.9	33.7	35.3	31.2
	미혼	45.0	47.5	45.5	50.8
	사별·이혼	21.8	18.4	19.2	16.9
	미혼모	0.4	0.4	0.0	1.1
세대주 여부	세대주	47.7	42.9	44.2	40.7
	비세대주	52.3	57.1	55.8	59.3

주 : 자활사업 참여자 = 505명, 현재 취업자 = 312명, 현재 비취업자 = 189명.

나. 가구특성

자활사업 참여자가 속해 있는 가구특성 또한 이들의 취업 및 고용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이다. <표 IV-2>에서 보듯이 취업으로 유도된 종료자의 대도시 거주비율(49.9%)은 자활사업 참여자의 대도시

<표 IV-2> 자활사업 참여자 및 종료자 가구 특성

(단위 : %)

		참여자	종 료 자		
			전체	현재 취업자	현재 비취업자
거주지역	대도시	59.4	49.9	49.0	51.3
	중소도시	35.8	42.1	44.2	38.6
	농어촌지역	4.8	8.0	6.7	10.1
주거형태	자가	13.7	18.6	16.3	22.2
	전세	28.1	26.3	27.9	23.8
	월세	28.1	26.7	28.8	23.3
	영구임대	21.8	20.8	19.2	23.3
	무료임대	8.0	6.6	7.0	5.8
	무응답	0.4	1.0	0.6	1.6
가구원수	1명	1.8	1.0	1.3	0.5
	2명	18.6	15.2	13.1	18.5
	3명	33.3	32.5	34.0	30.2
	4명	30.1	31.9	30.4	34.4
	5명	11.5	12.6	14.4	9.5
	6명 이상	4.6	6.8	6.7	6.8
	무응답	0.2	0.0	0.0	0.0
취업자수	없다	61.6	21.8	2.9	52.9
	1명	34.3	62.3	73.4	43.9
	2명	3.2	13.8	20.8	2.1
	3명 이상	0.2	2.2	2.9	1.1
	무응답	0.8	0.0	0.0	0.0
최연소 자녀 연령	없다	2.6	6.2	5.4	7.4
	1~7세 이하	25.2	23.6	25.0	21.1
	8~13세 이하	19.0	19.6	21.8	15.9
	14~19세 이하	23.6	19.0	14.8	25.9
	20세 이상	15.3	19.0	19.2	19.1
	무응답	14.5	12.6	13.8	10.6

주 : 자활사업 참여자 = 505명, 현재 취업자 = 312명, 현재 비취업자 = 189명.

<표 IV-3> 수급권가구 탈락 사유

(단위 : 가구수, %)

	가구수	구성비
취업으로 인한 소득증가	164	78.8
타가구원의 취업으로 인한 소득증가	13	6.3
재산가액의 증가	3	1.4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해	10	4.8
자발적으로 탈출	2	1.0
기 타	1	0.5
무응답	15	7.2
전 체	208	100.0

거주비율(59.4%)보다 낮지만, 주택소유비율(18.6%)은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원수의 규모에 있어서는 종료자와 참여자에게 있어서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3~4명으로 응답한 비율이 각각 63.4%, 64.4%를 기록하였다. 가구구성원의 취업 현황에 대해서는 종료자 가구의 78.3%가 1명 이상의 취업자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참여자 가구의 61.6%는 취업하고 있는 가족이 없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최연소 자녀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13세 이하(초등학교 이하)의 자녀에 대한 비중은 두 집단간에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지만, 14~19세 이하의 비중은 참여자 가구에서 높고, 20세 이상의 비중은 종료자 가구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녀들이 취학상태에 있을 경우 이들에 대한 탁아 및 교육 등으로 인해 취업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취업을 유지하고 있는 종료자 가구의 경우 중소도시 거주(44.2%), 전월세(56.7%), 1명 이상의 취업자수(97.1%), 13세 이하의 자녀(46.8%)의 비중이 비취업상태에 있는 종료자 가구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한편 자활사업이 종료된 취업대상자라 할지라도 자활사업 종료와 함께 본인이 소속된 가구가 수급권가구로부터 탈출한 경우와 가구는 여

전히 수급권가구로 남아 있는 경우로 나누어질 수 있다. 조사결과 501가구 중 41.5%(208가구)는 취업대상자의 자활사업 종료와 함께 가구 전체가 수급권을 상실한 반면, 57.7%(289가구)는 여전히 수급권을 유지하고 있었다. 자활가구가 수급권을 상실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취업대상자의 취업으로 인해 가구소득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표 IV-3>에서 보듯이 208개의 탈락가구 중 78.8%에 해당하는 164가구가 취업대상자의 근로소득 증가로 인해 수급권을 상실하였으며, 타가구원의 근로소득 증가(6.3%), 부양의무자 기준(4.8%)이 주된 탈락사유로 나타났다.

3. 자활사업 참여 이전의 경제활동

현재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취업대상자 505명 중 39.6%(200명)는 최근 2년 이내에 1개월 이상 소득을 목적으로 일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4.2%(21명)는 취업으로 인해 자활사업을 종료한 이후 다시 자활사업으로 유입되었다. 이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가구 특성을 보면 여자(66.7%), 20대(42.9%), 고졸(71.4%), 미혼(42.9%), 세대주(52.4%), 대도시 거주(57.1%), 전월세(52.4%), 가구원수 3명(42.9%)인 경우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특성이 일반적인 자활사업 참여자의 특성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다만 여자, 20대, 고졸자, 사별·이혼, 세대주의 비율이 일반참여자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료자 501명 중 62.3%(312명)는 자활사업 참여 이전 1년 동안 1개월 이상 소득을 목적으로 일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표 IV-4>에서 보듯이 이들은 주로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개인서비스업, 공공근로사업에 종사하였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조사시점에서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활대상자의 29.4%는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의 직종별 분포를 보면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공공근로를 포함한 단순노무종사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공공근로를 포함한 단순노무종사자의

비율은 자활사업 참여자, 종료자 중 취업자, 종료자 중 비취업자의 경우 각각 46.5%, 33.1%, 36.5%를 기록하였다(표 IV-5 참조).

<표 IV-4> 취업대상자의 이전 직장 산업분류

(단위 : 명, %)

	참여자		종료자(취업)		종료자(비취업)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농업, 수렵업 및 임업	0	0.0	1	0.8	3	3.6
제조업	40	20.3	31	25.4	19	22.9
건설업	7	3.6	7	5.7	11	13.3
도매 및 소매업	25	12.7	19	15.6	10	12.0
숙박 및 음식점업	25	12.7	13	10.7	12	14.5
운수업	5	2.5	4	3.3	1	1.2
통신업	2	1.0	1	0.8	0	0.0
금융 및 보험업	3	1.5	2	1.6	1	1.2
부동산 및 임대업	0	0.0	1	0.8	0	0.0
사업서비스업	5	2.5	3	2.6	2	2.4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3	1.5	0	0.0	0	0.0
교육서비스업	8	4.1	4	3.3	2	2.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1	0.5	2	1.6	2	2.4
오락/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	2	1.0	6	4.9	2	2.4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13	6.6	6	4.9	10	12.0
가사서비스업	0	0.0	3	2.6	0	0.0
공공근로	58	29.4	19	15.6	8	9.6
전 체	197	100.0	122	100.0	83	100.0

한편 이전 직장에서 자활취업대상자의 재직기간은 상당히 짧게 나타나고 있다. <표 IV-6>에서 보듯이 자활사업 참여자, 종료자 중 취업자 및 비취업자의 재직기간(6개월 이하)은 각각 67.6%, 51.6%, 69.8%이었으며, 1년 이상인 경우는 각각 13.5%, 25.1%, 17.3%에 불과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자활취업대상자의 고용이 상당히 불안정하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종료자 중 취업자의 경우 다른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용이 안정적이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는 역으로 과거의 직장이 안정적일수록 자활사업 종료 이후 취업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이전 직장의 규모, 고용형태, 임금수준을 보면 상당수의 자활취업대상자가 소규모 영세기업에서 비정규직의 신분으로 저임금을 받으며 고용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표 IV-7>에서 보듯이 5인 이하 규모의 업

<표 IV-5> 취업대상자의 이전 직장 직업분류

	참여자		종료자(취업)		(단위: 명, %)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종료자(비취업)	구성비
전문가	2	1.0	5	4.0	0	0.0
기술공 및 준전문가	14	7.0	7	5.6	6	7.1
사무종사자	28	14.0	29	23.4	14	16.5
서비스 종사자	30	15.0	19	15.3	11	12.9
판매종사자	17	8.5	11	8.9	8	9.4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근로자	0	0.0	1	0.8	3	3.5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7	3.5	8	6.5	7	8.2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9	4.5	3	2.4	5	5.9
단순노무 종사자	33	16.5	25	20.2	23	27.1
공공근로사업	60	30.0	16	12.9	8	9.4
전 체	200	100.0	124	100.0	85	100.0

<표 IV-6> 이전 직장의 재직기간

(단위 : 명, %)

	참여자		종료자(취업)		종료자(비취업)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3개월 이하	65	45.8	41	33.1	30	34.9
3~6개월	31	21.8	23	18.5	30	34.9
7~12개월	27	18.9	29	23.3	11	12.9
13~24개월	9	6.3	8	6.4	5	5.9
25개월 이상	10	7.2	23	18.7	10	11.4
전 체	142	100.0	124	100.0	86	100.0

<표 IV-7> 이전 직장의 규모

(단위 : 명, %)

	참여자		종료자(취업)		종료자(비취업)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5명 이하	68	48.6	50	40.3	45	52.9
6~10명	30	21.4	17	13.7	15	17.6
11~30명	18	12.9	29	23.4	15	17.6
31~100명	14	10.0	13	10.5	5	5.9
101~300명	5	3.6	12	9.7	3	3.5
300명 이상	5	3.6	3	2.4	2	2.4
전 체	140	100.0	124	100.0	85	100.0

체에 종사했던 자활사업 참여자, 종료자 중 취업자 및 비취업자의 비중은 각각 48.6%, 40.3%, 52.9%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표 IV-8>에서 보듯이 비상용직(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의 비중은 각각 66.9%, 60.9%, 51.2%를 기록하고 있다. <표 IV-9>에서 보듯이 50만원 이하의

<표 IV-8> 이전 직장에서의 고용형태

(단위 : 명, %)

	참여자		종료자(취업)		종료자(비취업)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상용직	41	28.9	40	32.5	39	45.3
임시직	52	36.6	43	34.9	19	22.1
일용직	17	12.0	17	13.8	14	16.3
시간제 근로	26	18.3	15	12.2	11	12.8
고용주/자영업자	6	4.2	8	6.5	3	3.5
전 체	142	100.0	123	100.0	86	100.0

<표 IV-9> 이전 직장에서의 월평균임금

(단위 : 명, %)

	참여자		종료자(취업)		종료자(비취업)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30만원 이하	21	14.9	10	8.1	11	12.9
30~50만원	26	18.4	42	34.1	17	20.0
51~70만원	54	38.3	36	29.3	29	34.1
71~100만원	33	23.5	25	20.3	23	27.1
100만원 이상	7	4.9	10	8.1	5	5.9
전 체	141	100.0	123	100.0	85	100.0

저임금을 받았던 자활취업대상자의 비중은 각각 33.3%, 42.2%, 32.9%를 나타낸 반면, 100만원 이상의 임금을 받았던 자활취업대상자의 비중은 각각 4.9%, 8.1%, 5.9%에 불과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할 때 일부 고학력의 청장년층을 제외하고 자활취업대상자의 상당부분은 소규모 영세업체에 단순노무직으로 근무하

면서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직면하였던 계층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이들에 대한 자활지원도 근로취약계층에 대한 노동시장정책과 연계하여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로는 직장의 휴·폐업, 명예 및 조기퇴직, 정리해고, 임시적 또는 계절적 일의 완료, 일거리 부족 또는 사업경영의 악화 등 경기적 요인에 의한 사유가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표 IV-10>에서 보듯이 이와 같은 요인에 의해 일자리를 그만둔 자활사업 참여자, 종료자 중 취업자 및 비취업자의 비중은 각각 31.7%, 43.5%, 32.6%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종료자 중 취업자의 경우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이는 역으로 경기회복에 의해 노동시장조건이 개선될 경우 상당수의 자활취업대상자가 취업으로 유도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표 IV-10>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

(단위 : 명,
%)

	참여자		종료자(취업)		종료자(비취업)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개인·가족적 이유	11	7.7	14	11.3	16	18.6
건강상의 이유	21	14.8	11	8.9	9	10.5
정년퇴직 및 연로	1	0.7	1	0.8	0	0.0
임금 및 근로시간 등의 불만족	16	11.3	16	12.9	7	8.1
열악한 작업환경	4	2.8	2	1.6	2	2.3
직장의 휴·폐업	21	14.8	16	12.9	5	5.8
명예 및 조기퇴직, 정리해고	5	3.5	3	2.4	4	4.7
임시적 또는 계절적 일의 완료	5	3.5	18	14.5	6	7.0
일거리 부족 또는 사업경영 악화	14	9.9	17	13.7	13	15.1
장래성이 없어서	18	12.7	12	9.7	12	14.0
육아 및 자녀교육 때문에	5	3.5	3	2.4	4	4.7
기타	21	14.8	11	8.9	8	9.2
전 체	142	100.0	124	100.0	86	100.0

것이다. 따라서 자활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들이 경기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유입되고 탈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즉 불황기에는 수급권자로 유입되어 생계보호를 받지만, 경기가 회복될 경우 자발적으로 취업하여 복지 의존으로부터 탈피하려는 유인체계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정착되어야 한다.

4. 자활사업 종료자의 취업상태

자활사업 종료 이후 취업을 한 취업대상자의 다수는 연고채용에 의존하여 일자리를 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1>에서 보듯이 종료자 중 취업자 및 비취업자의 연고채용 비율은 각각 45.5%, 50.9%로 나타났다으며, 공공직업안정기관을 통한 취업비율은 각각 20.5%, 15.8%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사실은 일정 정도 취업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취업알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표 IV-11> 구직경로

(단위 : 명, %)

	현재 취업자		현재 비취업자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자활사업	26	8.3	2	3.5
공공직업 안정기관	64	20.5	9	15.8
구인광고/인터넷	65	20.8	16	28.1
학교취업 상담실	1	0.3	1	1.0
민간직업 소개소	4	1.3	0	0.0
인력채용 박람회	2	0.6	0	0.0
연고채용	142	45.5	29	50.9
기타	8	2.6	0	0.0
전 체	312	100.0	57	100.0

<표 IV-12>에서 보듯이 취업으로 유도된 자활사업 종료자들은 주로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개인서비스업에 종사하였던 것으로 나타나, 자활사업 참여 이전의 업종과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이들의 직종별 분포를 보면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 자활사업 참여 이전의 직종과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다만 현재 취업중인 종료자 중 12.0%(37명)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로 취업하고 있으며, 공공근로사업의 참여비율이 낮다는 것이 이전과 구별되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표 IV-13 참조).

<표 IV-12> 직장의 산업분류

(단위 : 명, %)

	현재 취업자		현재 비취업자	
	인 원	구성비	인 원	구성비
농업/수렵업 및 임업	4	1.3	1	1.9
제조업	73	23.4	17	32.1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4	1.3	2	3.8
건설업	24	7.7	0	0.0
도매 및 소매업	37	11.9	8	15.1
숙박 및 음식점업	27	8.7	10	18.9
운수업	13	4.2	2	3.8
통신업	3	1.0	0	0.0
금융 및 보험업	13	4.2	0	0.0
부동산 및 임대업	1	0.3	0	0.0
사업서비스업	12	3.8	0	0.0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4	1.3	0	0.0
교육서비스업	20	6.4	5	9.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8	2.6	0	0.0
오락/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	8	2.6	0	0.0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36	11.5	7	13.2
가사서비스업	4	1.3	1	1.9
공공근로	10	3.2	0	0.0
전 체	312	100.0	53	100.0

<표 IV-13> 직장에서의 직업분류

(단위 : 명, %)

	현재 취업자		현재 비취업자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4	1.3	0	0.0
전문가	2	0.7	0	0.0
기술공 및 준전문가	37	12.0	3	5.4
사무종사자	71	23.1	12	21.4
서비스 종사자	42	13.6	10	17.9
판매종사자	32	10.4	5	8.9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근로자	1	0.3	1	1.8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25	8.1	5	8.9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14	4.6	4	7.1
단순노무 종사자	71	23.1	16	28.6
공공근로사업	9	2.9	0	0.0
전 체	308	100.0	56	100.0

현재 취업하고 있거나 취업을 경험한 자활취업대상자의 경우 전반적으로 소규모 영세기업에서 비정규직의 신분으로 저임금을 받으며 고용되고 있으며, 이전 직장에 비해 고용조건이 다소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4>에서 보듯이 5인 이하 규모의 업체에 종사한 종료자 중 취업자 및 비취업자의 비중은 각각 42.3%, 66.7%를 나타내어 이전 직장의 40.3%, 52.9%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또한 <표 IV-15>에서 보듯이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의 비중은 각각 47.2%, 59.7%를 기록하여 이전 직장에서의 60.9%, 51.2%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 한편 50만원 이하의 저임금을 받고 있는 종료자 중 취업자 및 비취업자의 비중은 각각 34.2%, 46.5%로 나타나 이전 직장에서의 42.2%, 32.9%와 대비를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할 때 현재 비취업상태에 있는 자활사업 종료자는 전반적으로 이전 직장에 비해 비정규직의 비중이 높고, 임금수준도 전반적으로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4> 직장규모

(단위 : 명, %)

	현재 취업자		현재 비취업자	
	인 원	구성비	인 원	구성비
5명 이하	132	42.3	38	66.7
6~10명	55	17.6	7	12.3
11~30명	62	19.9	8	14.0
31~100명	41	13.1	2	3.5
101~300명	13	4.2	2	3.5
300명 이상	9	2.9	0	0.0
전 체	312	100.0	57	100.0

<표 IV-15> 고용형태

(단위 : 명, %)

	현재 취업자		현재 비취업자	
	인 원	구성비	인 원	구성비
상용직	155	49.7	23	40.4
임시직	78	25.0	14	24.6
일용직	47	15.1	11	19.3
시간제근로	22	7.1	9	15.8
고용주/자영업자	10	3.2	0	0.0
전 체	312	100.0	57	100.0

<표 IV-16> 월평균임금

(단위 : 명, %)

	현재 취업자		현재 비취업자	
	인 원	구성비	인 원	구성비
30만원 이하	21	6.8	17	30.4
30~50만원	85	27.4	9	16.1
51~70만원	108	34.8	14	25.0
71~100만원	81	26.1	13	23.2
100만원 이상	16	5.2	3	5.4
전 체	310	100.0	56	100.0

한편 자활사업 종료자의 직장내 복리후생제도는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7>에서 보듯이 종료자 중 취업자의

경우 국민연금, 직장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가입비율은 각각 34.0%, 35.9%, 39.1%, 32.4%로 나타났으며, 비취업자의 경우 각각 26.3%, 22.8%, 24.6%, 24.6%로 나타났다. 또한 사내 근로복지에 있어서도 상당히 취약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8>에서 보

<표 IV-17> 사회보험 가입 여부

(단위 : %)

	현재 취업자(N=312)			현재 비취업자(N=57)		
	가입	미가입	불확실	가입	미가입	불확실
국민연금	34.0	54.5	11.5	26.3	68.4	5.3
직장의료보험	35.9	54.5	9.6	22.8	71.9	5.3
고용보험	39.1	50.0	10.9	24.6	70.2	5.3
산재보험	32.4	52.9	14.7	24.6	68.4	7.0

<표 IV-18> 근로복지

(단위 : %)

	현재 취업자(N=312)			현재 비취업자(N=57)		
	지급	미지급	불확실	지급	미지급	불확실
퇴직금	26.0	62.8	11.2	14.0	84.2	1.8
정기적인 상여금	22.4	69.6	8.0	12.3	86.0	1.8
부정기적인 상여금	17.0	73.4	9.6	14.0	86.0	0.0
유급휴가(연월차 및 휴가)	19.9	71.8	8.3	5.3	89.5	5.3
무급휴가(연월차 및 휴가)	14.7	74.0	11.2	5.3	91.2	3.5
유급병가	14.4	71.5	14.1	8.8	89.5	1.8
유급출산휴가	4.8	75.0	20.2	3.5	89.5	7.0
전세금/학자금 융자	2.9	76.6	20.5	3.5	94.7	1.8

듯이 전자의 경우 퇴직금, 정기적인 상여금, 부정기적인 상여금, 유급휴가, 무급휴가, 유급병가, 유급출산휴가, 전세금/학자금 융자 비율이 각각

26.0%, 22.4%, 17.0%, 19.9%, 14.7%, 14.4%, 4.8%, 2.9%에 불과하였고, 후자의 경우에는 전세금/학자금 용자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더 낮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할 때 자활사업 종료자는 소규모 영세기업에서 저임금을 받으며, 열악한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제도에 처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사실을 반영하여 현재의 직장이 자활사업에 참여할 당시 희망했던 직장보다 조건이 좋다고 응답한 경우는 현재 취업 상태에 있는 자활사업 종료자(312명) 중 23.1%(72명)에 불과하였고, 38.8%(121명)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직장이라고 응답하였다.

V. 자활사업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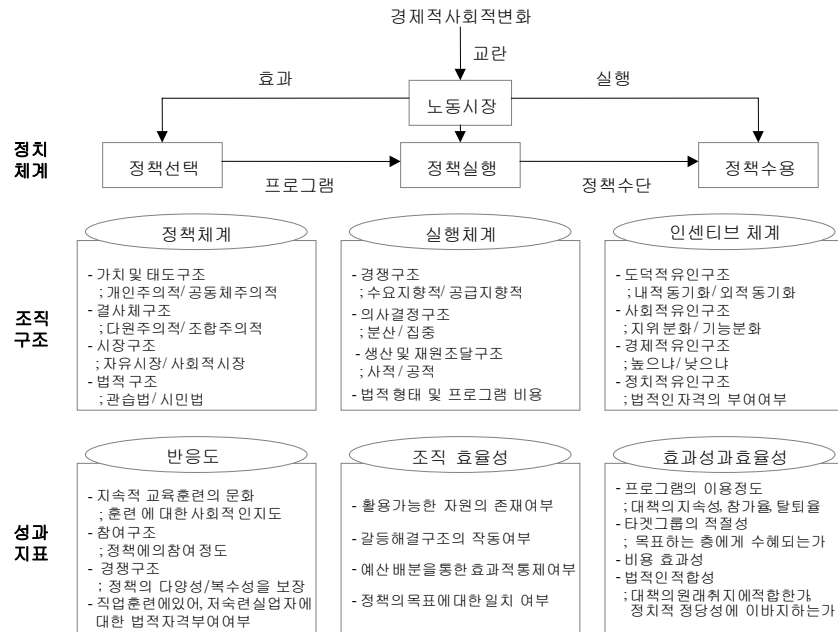
1. 평가의 기준

자활사업에 대한 평가는 크게 전달체계를 포함한 집행과정에 대한 평가(process evaluation)와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능력 향상에 대한 성과측정(performance measurement)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Schmid, 1996). 첫째, 집행과정에 대한 평가는 정책선택, 정책실행, 정책수용의 3 단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자활사업의 집행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자활사업과 성과지표 사이에 존재하는 체계적인 관계를 드러내고, 나아가 최적의 집행절차를 찾아내는 것이다. 또한 집행과정에 대한 평가는 특정한 정책수단이 체계적으로 선호되거나 배제되는 원인을 규명하고,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편차가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수단이어야 한다. 이와 같은 평가를 통해서 집행과정의 차이가 정책의 궁극적 목표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해야 한다. 둘째, 정책목표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의 개발은 집행과정의 평가에 선행되어야 하지만, 장기적으로 정책목표의 전환에 의해 수정될 수 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적어도 정책목표에 대한 성과지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가. 집행과정에 대한 평가기준

근로연계형 복지제도가 복지수혜자를 성공적으로 취업시키기 위해서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LMP: Active Labor Market Policy)을 중심으로 하는 효과적인 전달체계의 구축, 복지수혜자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지원정책, 근로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조세 및 급여체계의 구축,

[그림 V-1] 집행과정 평가체계도



자료 : Schmid(1996).

복지재원의 지역간 적정배분, 지역단위의 고용기회 창출 등이 대단히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¹⁴⁾ 우선, 전달체계의 문제는 복지 및 고용정책이 통합적으로 추진되는 지점과 복지수혜자를 대상으로 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집행지점에서 발생할 수 있다. 독립적으로 추진되

14) 전통적인 복지·고용정책의 대안으로 제시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LMP: Active Labor Market Policy)은 복지수혜자의 기능과 고용가능성을 증대시키고 일자리에 대한 접근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수단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OECD(1996a)에 따르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부적절한 전달체계, 수혜자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의 부재, 부적절한 자원조달 및 지역단위의 고용기회 부족 등으로 인해 본래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복지수혜자들의 노동 시장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조세 및 급여체계를 적절히 구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OECD, 1999).

어 온 복지정책과 고용정책을 통합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추진주체 간의 업무조정이 긴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Pindus, Koralek and Martinson, 2000). 특히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단위의 근로연계형 복지정책을 발전시켜 지역파트너십(local partnership)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대상이 복지수혜자로까지 확대됨에 따라 이들에게 적합한 훈련프로그램의 개발, 개인의 특성 및 가구여건을 고려한 각종 자활지원서비스의 제공, 복지급여로부터 이탈한 자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 등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취업으로 유도된 복지수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함으로써 근로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저임금으로 인한 낮은 가구소득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복지수혜자의 규모, 지역 실업률 및 저숙련 실업자의 규모, 지역사회에 편재되어 있는 사회자본(social capital)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활사업과 관련된 복지재원을 배분할 필요가 있다. 만약 복지재원의 배분이 지역사회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지 못할 경우 취업이 어려운 지역에 상대적으로 적은 복지재정이 배분되는 역선택(selection bias)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다섯째, 저기능, 저학력, 중고령층의 근로취약계층은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구하기가 힘든 상태에 있다. 따라서 이들 근로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사회적 일자리를 통해 정부가 일자리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 공공서비스의 생산이 사회적 일자리의 주요 대상일 수 있다.

나. 성과측정 지표

노동부가 시행하고 있는 자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취업대상자에게 효과적인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교육훈련을 확대함으로써 스스로의 자립·자활을 촉진시키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하고 있다(노동부, 2000). 따라서 노동부 시행 자활사업에 대한 성과는 일차적으로 취업대상자의 취업률을 통해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복지급여 수혜자로서의 자활취업대상자는 일반실업자에 비해 취업조건이 열악하고 취업

가능성이 낮은 근로취약계층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실업자의 취업률과 동일한 차원에서 비교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 다음으로 고용안정성은 취업대상자의 자립과 관련하여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취업상태가 단속적일 경우 소득이 불규칙하게 되고, 각종의 사회 안전망으로부터 소외될 가능성도 커지게 된다. 취업대상자의 고용안정성은 재직기간, 고용형태 및 업종 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한편 임금소득은 고용안정성과 함께 취업대상자의 자립도를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자활대상자의 고용이 안정적일지라도 임금소득이 가구별 최저생계비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이들의 실질적인 자립은 제약을 받게 된다.

미국의 경우 1996년 복지개혁 이후 TANF로부터 이탈한 가구의 경제적 상태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였다. 즉 이탈자들의 취업, 고용특성, 임금수준, 여타의 정부지원에 대한 의존도 등이 이탈가구의 경제적 자립과 관련하여 문제시되었다(Brauner and Loprest, 1999). 첫째, 이탈자의 취업 여부는 자립의 중요한 지표이자 이탈가구의 복지수준을 측정하는 결정요인이다. 취업률을 산정하는 방식은 두 가지이며, 조사시점에서의 취업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방식(point-in-time estimate)과 일정기간에 걸쳐 취업을 경험한 사실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durational estimate)이 있다. 또한 자발적으로 취업을 한 경우와 조건부과에 의해 강제적으로 취업을 한 경우에 따라 복지수급자의 취업률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발적 또는 강제적으로 취업한 경우를 모두 취업률 산정에 포함시킬 때, 조사시점과 지역의 편차를 반영하여 전자의 경우 복지급여 수급자로부터 이탈한 자의 50~80%가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후자의 경우 68~88%가 취업을 경험했거나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에 따르면 1997년에 TANF 수급자의 28%가 취업하였다. 이와 같은 취업률을 반영하여 1994년 3월 5백만 가구에 달하던 AFDC 수혜가구는 1998년 TANF 제도하에서 2.7백만 가구로 감소(43%의 감소율)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수혜가구의 감소가 복지프로그램 자체의 결과인지 또는 호경기의

반영인지는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OECD, 1999).

둘째, 복지급여 수혜자의 일자리에 대한 안정성에 대해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복지급여로부터 이탈한 수혜자를 추적조사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조사 당시 61~71%가 취업한 상태에 있었지만, 복지급여로부터 이탈한 이후 다시 급여체제로 재진입한 수는 3개월 후 메릴랜드주에서 19%, 15개월 후 위스콘신주에서 30%를 기록하였다 (GAO, 1999). 한편 12개 주의 복지급여 이탈자를 추적조사한 Brauner and Loprest(1999)에 따르면 조사 당시 51~75%만의 이탈자가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취업중인 이탈자의 평균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아 빈곤선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고, 다수의 이탈자가 복지체제로 환류할 가능성을 나타내었다.

셋째,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이탈자의 50% 이상이 주당 30시간 이상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7년 두 자녀 3인 가구의 최저생계비 \$12,931의 소득을 얻기 위해 이탈자는 시간당 \$7.39의 임금과 주당 35시간의 근로시간으로 50주를 일해야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탈자가 전일제근무를 하지 않는 사실을 고려할 때 상당수의 이탈가구가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소득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스콘신주의 경우 30~50%의 이탈가구만이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아동지원(Child Support)과 근로소득세 공제(EITC)를 고려할 경우 이들의 총소득은 다소 증가할 것이지만, 취업에 따른 택아와 교통비 등을 고려할 때 순소득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이탈가구의 소득을 복지수혜 당시의 소득과 비교할 때 가구원수가 증가할수록 이탈가구의 소득이 이전에 비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스콘신주에서 3명 이상의 자녀를 갖는 가구의 경우 38%의 이탈가구만이 복지급여보다 높은 현금소득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사실은 일반적으로 이탈자들이 저임금의 직종 및 업종에 종사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메릴랜드주와 위스콘신주의 경우 대부분의 이탈자들은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복지급여로부터 이탈한 자의 자립을 위해서는 사회안전망을 통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이탈자에 대한 지원의 범위는 자립의 중

요한 지표이다. 미국의 경우 TANF 수급자가 이탈할 경우에도 일정기간 여타의 정부지원을 통해 이탈가구를 보호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이탈가구에 대해 1년 동안 한시적으로 Medicaid를 지원하지만, 일부 주에서는 1년 이상 지원하기도 한다.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50% 이상의 이탈가구가 Medicaid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에 따르면 이탈 후 첫해에 66%(Iowa)부터 83%(Wisconsin)의 가구가 여전

<표 V-1> 소득보조프로그램

(단위 : %)

조사지역	Medicaid	Food Stamps	School Lunch	WIC	Housing Assistance	Child Support	Family/Friends
Iowa	66	64					65(부모) 31(친지)
Wisconsin(1)	83	49					
Wisconsin(2)	56	31					
Wisconsin(3)	71	49	47	38	25	27	30
Washington	64(아동) 44(어른)	45			19	35	
Texas	70	66		37	15	16	31
South Carolina	79	57	49	29	30	36	11
Indiana	53	38	46	25	9	13	
Tennessee							31
Michigan							54(가족) 19(친구)

주 : 1) 본 조사결과는 주정부의 공식통계가 아니라 이탈자에 대한 서베이조사이기 때문에 이탈가구에 대한 실제의 지원제도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음.

2) Wisconsin(1)은 1995년 7월부터 1997년 9월까지의 기간에 최소한 2개월 이상 복지급여로부터 이탈을 경험한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Wisconsin(2)는 이들 중 조사시점까지 계속해서 이탈상태에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되었다. Wisconsin(3)는 1998년 1~3월까지의 기간에 복지급여로부터 이탈한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되었음.

3) WIC = Women, Infants, and Children Program.

자료 : Brauner and Loprest(1999).

히 일시적으로 Medicaid의 보호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Food Stamps에 대해서는 이탈가구에 대한 지급기간의 제한규정이 없으며, 이탈가구의 38%(Indiana)에서 66%(Texas)가 Food Stamps의 혜택을 받고 있었다. 이 외에도 이탈가구는 수급기준에 해당할 경우 School Lunch, WIC, Housing Assistance, Child Support 등 여타의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탈가구의 상당수는 부모 또는 친지로부터 보호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Iowa의 경우 이탈가구의 65%가 부모에 의존하고, 31%가 친지로부터 정신적·재정적 및 탁아지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Cancian, Haveman, Meyer, and Wolfe(2000)는 Wisconsin주의 자료를 이용하여 1995년 후반에 이탈한 복지수혜자와 PRWORA가 발효된 이후 1997년 후반에 이탈한 복지수혜자의 취업가능성, 임금 및 소득수준, 근속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복지수혜자의 취업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프로빗분석을 수행한 결과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수가 적을수록, 자녀의 나이가 많을수록, 성인이 많을수록, 근로경험이 많을수록, 여성가장의 수가 적은 지역일수록, 복지급여의 수급기간이 짧을수록, 지역의 실업률이 낮을수록 이탈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동시장에서의 성공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이탈 첫째의 근속기간과 근로소득이 이용하여 프로빗분석이 이용하였다. 설명변수로는 앞에서 언급한 변수 이외에 복지급여 수급자가 이탈한 직후 3개월 이내에 취업하였는지의 여부와 취업한 업종 변수가 추가되었다. 분석결과 학력이 높고, 근로경험이 많고, 이탈직후 3개월 내에 취업할수록, 복지수급기간이 길수록 근속기간이 길었으며, 장애아가 있거나 실업률이 높은 지역일수록 근속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OLS 모형을 추정한 결과 학력이 높고, 근로경험이 많고, 이탈직후 3개월 이내에 취업하고, 여성가장의 수가 적은 지역에 거주하고, 실업률이 낮은 지역에 거주할수록 근로소득이 높았다. 또한 취업한 업종에 따라 근로소득이 편차를 보였다. 자녀가 많고,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근로소득이

높았는데 이는 가족에 대한 높은 책임감과 탁아비용을 반영하여 이탈자들이 보다 높은 임금의 일자리를 찾은 결과로 해석되었다. 또한 소득수준이 가구별 빈곤선 이상일 경우에 대해 프로빗분석을 한 결과 비슷한 결론이 도출되었다. 여기서 한 가지 시사점은 이탈가구의 빈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근로소득공제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2. 집행과정 및 전달체계

가. 자활인프라

조사시점에서 노동부 시행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조건부 수급자 및 종료자의 자활사업 참여실적을 보면 대체로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에 집중되어 있다. <표 V-2>에서 보듯이 자활사업 참여자의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비중은 각각 45.5%, 26.1%로 나타났으며, 종료자 중 취업자의 경우 각각 14.1%, 58.0%, 종료자 중 비취업자의 경우 각각 20.1%, 48.1%로 나타났다. 반면에 구직세일즈를 포함한 공공근로, 창업지원, 자활인턴의 참여비중은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직업적응훈련의 경우 2001년 7월에 도입되었기에 현재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수급자를 중심으로 종료자에 비해 참여비율(20.0%)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의 참여비율이 높은 이유는 기본적으로 노동부가 제공하는 자활사업이 자활대상자의 조속한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활사업은 그 본질에 있어서 근로연계형 복지제도의 성격을 갖지만, 시행방법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직업훈련을 강조하는 영국형과 취업알선을 강조하는 미국형이 혼합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조건부 수급자 중 비취업대상자에게는 공공근로와 같은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프랑스형의 근로연계형 복지제도의 성격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표 V-2> 참여 자활사업

(단위 : 명, %)

	참여자		종료자(취업)		종료자(비취업)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직업훈련	230	45.5	44	14.1	38	20.1
공공근로(구직세일즈)	24	4.8	49	15.7	25	13.2
취업알선	132	26.1	181	58.0	91	48.1
창업지원	8	1.6	1	0.3	0	0.0
자활인턴	10	2.0	12	3.8	11	5.8
직업적응 훈련	101	20.0	25	8.0	24	12.7
전체	505	100.0	312	100.0	189	100.0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노동부 자활사업 참여자 및 종료자는 대체로 취업대상자로 선정된 것에 만족하고, 사회복지사의 수급자 선정조사는 공정하고 정확하였다고 평가하였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수준이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참여자의 경우 기초생활보

<표 V-3>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자활사업에 대한 평가

(단위 :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편이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런편이다		매우 그렇다	
	참여자	종료자	참여자	종료자	참여자	종료자	참여자	종료자	참여자	종료자
A	2.2	2.8	13.3	23.2	50.9	51.7	31.5	21.4	2.2	1.0
B	2.4	3.2	17.4	24.6	27.7	28.7	48.3	41.5	4.2	2.0
C	2.2	3.4	13.7	19.6	34.1	32.3	44.6	41.7	5.5	3.0
D	10.7	15.4	51.5	54.7	28.7	24.0	8.9	5.6	0.2	0.4

주 : A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과거의 생활보호제도보다 개선되었다.

B : 취업대상자로 선정된 것에 만족한다.

C : 사회복지사의 수급자 선정조사는 공정하고 정확하였다.

D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수준은 충분한 편이다.

장제도가 과거의 생활보호제도보다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보다 높았으나, 종료자의 경우 개선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조건부 수급자 중 취업대상자들은 전반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수준에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며, 이는 곧 수급권자들이 자발적으로 자활사업을 이탈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취업대상자들은 대체로 자활사업에 만족하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만족도는 종료자보다 참여자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사실은 역으로 종료자들이 자활사업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제도로부터 이탈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표 V-4>에서 보듯이 자활사업 참여자의 경우 만족한다는 비율이 61.8%를 기록한 반면,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11.3%에 불과하였다. 종료자 중 취업자 및 비취업자의 만족비율은 각각 38.8%, 37.6%로 나타나 불만족비율 13.8%, 15.9%를 상회하였다.

<표 V-4> 자활사업 만족도

(단위 : 명, %)

	참 여 자		종료자(취업)		종료자(비취업)	
	인 원	구성비	인 원	구성비	인 원	구성비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5	1.0	4	1.3	2	1.1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52	10.3	39	12.5	28	14.8
보통이다.	136	26.9	148	47.4	88	46.6
대체로 만족한다.	262	51.9	111	35.6	65	34.4
매우 만족한다.	50	9.9	10	3.2	6	3.2
전 체	505	100.0	312	100.0	189	100.0

<표 V-5>에서 보듯이 자활사업에 부정적으로 응답한 사람들의 경우 생계급여의 부족, 적성과 능력에 맞지 않는 사업참여, 취업에 도움이 되지 못함, 강제적으로 배정 등의 이유로 자활사업에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5> 자활사업에 불만족하는 이유

(단위 : 명, %)

	참 여 자		종료자(취업)		종료자(비취업)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생계급여가 부족	9	15.8	12	27.9	4	13.3
적성과 능력에 맞지 않음	18	31.6	12	27.9	10	33.3
취업에 도움이 되지 못함	15	26.3	9	20.9	12	40.0
강제적으로 배정되어	6	10.5	6	14.0	4	13.3
불안정한 업체에 취업알선	1	1.8	1	2.3	0	0.0
시간이 맞지 않음	2	3.5	0	0.0	0	0.0
교육기간이 짧음	2	3.5	0	0.0	0	0.0
강사자질 부족	1	1.8	2	4.7	0	0.0
교육자재의 노후	1	1.8	1	2.3	0	0.0
교육시설 부족	1	1.8	0	0.0	0	0.0
창업자금 지원되지 않음	1	1.8	0	0.0	0	0.0
전 체	57	100.0	43	100.0	30	100.0

특히 현재 취업상태에 있는 자활사업 종료자(312명) 중 41.3%(129명)는 자활사업 참여경험이 현재의 직장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반면, 26.0%(81명)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거나 도움이 되지 않은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 <표 V-6>에서 보듯이 55.6%(45명)는 자활사업 참여기간중 취업기회를 많이 갖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28.4%(23명)는 본인의 적성 및 희망에 맞지 않는 자활프로그램이 제공되었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한편 자활업무의 수행에 있어서 참여자의 34.9%, 는 행정기관간 업무협조가 원활하다고 응답한 반면, 원활하지 못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6.5%에 불과하였다. 또한 자활사업 종료자의 경우 36.9%는 행정기관간 업무협조가 원활하다고 응답한 반면, 6.4%만이 원활하지 못하다고 응답

<표 V-6> 자활사업이 구직에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

(단위 : 명, %)

	인 원	구성비
기능이 증대되지 못해서	11	13.6
취업기회를 많이 갖지 못해서	45	55.6
상담원과 충분한 상담을 갖지 못해서	1	1.2
적성 및 희망에 맞지 않는 자활사업이 제공되어서	23	28.4
교육내용이 부실해서	1	1.2
전 체	81	100.0

하였다. 이와 같은 응답결과를 통해 볼 때 전반적으로 자활업무의 행정 기관간 협조는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부정적으로 응답한 이유로는 자활사업간 취약한 연계구조, 부실한 자활상담, 사후관리의 부재, 형식적인 자활훈련, 자활정보의 부실, 자활사업의 일방적 배정 등이 제시되었다.

<표 V-7> 행정기관간 업무협조

(단위 : 명, %)

	참 여 자		종 료 자	
	인 원	구성비	인 원	구성비
전혀 원활하지 않다.	6	1.2	7	1.4
원활하지 않은 편이다.	27	5.3	25	5.0
보통이다.	296	58.6	284	56.7
대체로 원활한 편이다.	170	33.7	176	35.1
매우 원활하다.	6	1.2	9	1.8
전 체	505	100.0	501	100.0

한편 자활사업 참여자 505명 중 39.9%(199명)는 본인이 희망하는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8>에서 나타

나듯이 참여자는 직업훈련(50.9%), 공공근로(3.6%), 취업알선(32.3%), 창업지원(5.7%), 자활인턴(2.0%), 직업적응훈련(5.5%)의 희망을 나타내었지만, 실제로 배정된 사업은 직업훈련(45.5%), 공공근로(4.8%), 취업알선(26.1%), 창업지원(1.6%), 자활인턴(2.0%), 직업적응훈련(20.0%)이었다. 한편 현재 참여하고 있는 자활사업 이후에 연결되기를 희망하는 자활사업은 직업훈련(21.0%), 공공근로(4.0%), 취업알선(48.1%), 창업지원(10.5%), 자활인턴(3.0%)으로 나타났으며, 13.5%(68명)는 더 이상 자활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8> 자활사업 참여 현황

(단위 : 명, %)

	희망 자활사업		참여 자활사업		연결희망 자활사업	
	인 원	구성비	인 원	구성비	인 원	구성비
직업훈련	257	50.9	230	45.5	106	21.0
공공근로(구직세일즈)	18	3.6	24	4.8	20	4.0
취업알선	163	32.3	132	26.1	243	48.1
창업지원	29	5.7	8	1.6	53	10.5
자활인턴	10	2.0	10	2.0	15	3.0
직업적응훈련	28	5.5	101	20.0	-	-
참여의사 없음	-	-	-	-	68	13.5
전 체	505	100.0	505	100.0	503	100.0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주된 이유로 <표 V-9>에 나타나듯이 응답자들은 생계급여로 생활이 곤란하여(27.7%), 자활사업이 취업에 도움이 되지 못하여(18.5%), 취업하기 위해(16.9%), 본인의 적성과 능력에 부적합한 자활사업(10.8%) 등을 제시하였다.

<표 V-9>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이유

(단위 : 명, %)

	인 원	구 성 비
생계급여로 생활이 곤란하여	18	27.7
자활사업이 적성과 능력에 부적합하여	7	10.8
자활사업이 취업에 도움이 되지 못하여	12	18.5
희망과 다른 자활사업이 배정되어서	4	6.2
취업 및 창업을 하기 위해서	11	16.9
군입대를 위해서	6	9.2
공부를 하기 위해서	4	6.2
건강이 좋지 않아서	1	1.5
기타	2	3.0
전 체	65	100.0

자활사업 참여자들은 실질적인 자활을 위해 적합한 자활프로그램의 제공과 본인의 능력향상이 중요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표 V-10>에서 보듯이 참여자 505명 중 40.8%(206명)는 적합한 자활프로그램의 제공, 35.6%(180명)는 본인의 능력향상을 주된 요구사항으로 제시하였다. 이외에도 자활의지력의 배양(13.3%), 자활지원서비스의 강화(6.7%) 등이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0> 자활을 위해 요구되는 사항

(단위 : 명, %)

	인 원	구 성 비
적합한 자활프로그램의 제공	206	40.8
자활의지력의 배양	67	13.3
자활지원서비스의 강화	34	6.7
본인의 능력(기능, 학력 등) 향상	180	35.6
창업자금의 지원	3	0.6
특별히 필요 없다	15	3.0
전 체	505	100.0

한편 자활지원서비스는 자활프로그램과 함께 참여자의 자활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조건이다. 예컨대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다고 할지라도 간병, 보육 및 탁아 등으로 인해 자활사업 참여가 제한받을 경우 이들의 자활은 실질적으로 어렵게 된다. 조사결과 자활에 필요한 지원서비스로 의료서비스, 보육시설, 방과후교실 등이 긴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1>에서 보듯이 자활에 필요한 지원서비스는 의료서비스(25.0%), 보육시설(13.5%), 방과후교실(14.1%), 재활시설(7.1%), 무료간병인(3.2%) 등으로 나타났다.

<표 V-11> 자활에 필요한 지원서비스

(단위 : 명, %)

	인 원	구 성 비
의료서비스	126	25.0
보육시설	68	13.5
방과후 교실	71	14.1
재활시설	36	7.1
무료 간병인	16	3.2
기타	46	9.0
없다	142	28.1
진 체	505	100.0

주 : 기타에는 교육프로그램 제공, 무료 학원수강, 청소년상담교실, 취업정보 제공 등이 포함.

현재 취업중인 312명 중 9.6%(30명)는 자활사업에 다시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들은 주로 현재 직장의 급여가 너무 낮기 때문에(40.0%), 자활사업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취득하고 싶어서(23.3%), 현재 직장의 근로조건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13.3%), 본인의 적성 또는 희망분야와는 전혀 다른 직장이기 때문에(10.0%) 등을 주된

이유로 제시하였다. 이 외에도 정부의 각종 지원이 종료되어 생활비 지출이 너무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응답도 있었다. 반면에 비취업중인 자 189명 중 36.0%(68명)는 자활사업에 다시 참여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니라고 응답한 64.0%(121명)는 자활사업 참여 이후 일자리로 연결(57.0%), 적정한 근로소득공제율의 적용(9.9%), 자활지원서비스의 강화(6.6%) 등이 이루어지면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응답하였다. 그러나 22.3%(27명)는 조건과 관계없이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이유로는 취업 및 진학 등의 준비(29.6%), 자활프로그램이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25.9%), 본인에게 적합한 자활프로그램이 배정될 가능성이 적기 때문(22.2%), 가사·보육·간병(7.4%), 자격증 취득(7.4%), 군입대(3.7%), 조건부 수급자로 분류된 것이 불만(3.7%) 등을 제시하였다.

한편 자활사업 참여자들은 취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확대, 다양한 자활프로그램의 개발 및 참여자 특성에 따른 프로그램의 제공, 생계급여 등 각종 급여의 확대, 취업정보의 확대를 개선되어야 할 주요 과제로 제시하였다. <표 V-12>에서 보듯이 자활사업 참여자의 경우 현행 자활사업의 개선과 관련하여 취업에 도움이 되는 직업훈련의 확대(36.2%)를 가장 필요로 하였고,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특성화 프로그램의 개발(21.4%), 생계급여 등 각종 급여의 확대(21.4%), 취업정보의 확대(11.5%)를 중요시하였다. 종료자는 생계급여 등 각종 급여의 확대를 개선되어야 할 우선과제로 응답하였다. 종료자 중 취업자는 취업정보의 확대(22.1%), 취업에 도움이 되는 직업훈련의 확대(21.2%),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특성화 프로그램의 제공(19.6%)의 순서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상대적으로 취업정보의 확대를 강조하였다. 종료자 중 비취업자의 경우 취업에 도움이 되는 직업훈련의 확대(26.5%),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특성화 프로그램의 제공(20.6%), 취업정보의 확대(14.3%)의 순서로 응답하여 상대적으로 취업에 도움이 되는 직업훈련의 확대를 강조하였다.

<표 V-12> 현행 자활사업의 개선사항

(단위 : 명, %)

	참여자		취업자		비취업자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취업에 도움이 되는 직업훈련의 확대	183	36.2	66	21.2	50	26.5
프로그램의 개발 및 특성화 프로그램 제공	108	21.4	61	19.6	39	20.6
생계급여 등 각종 급여의 확대	108	21.4	78	25.0	53	28.0
취업정보의 확대	58	11.5	69	22.1	27	14.3
수급자 선정 및 정부지원의 형평성 강화	12	2.4	14	4.5	4	2.1
자활지원서비스의 확대	5	1.0	9	2.9	3	1.6
자활사업 상담원의 확충 및 심층상담	4	0.8	6	1.9	5	2.6
창업지원의 확대	1	0.2	0	0.0	0	0.0
모르겠음	23	4.6	5	1.6	5	2.6
기타	0	0.0	2	0.6	2	1.0
무응답	3	0.6	2	0.6	1	0.5
전 체	505	100.0	312	100.0	189	100.0

나. 직업훈련

조사시점에서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자활사업 참여자는 505명 중 55.8%(282명)에 달하였으며, 종료자 중 취업자인 312명의 17.3%(54명), 비취업자인 189명의 18.0%(34명)가 직업훈련에 참여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이유에 대해 응답자의 대부분은 구직에 필요하고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또는 배우고 싶은 훈련과정이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V-13>에 나타나듯이 현재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259명의 78.4%, 종료자 중 취업자 54명의 79.6%, 종료자 중 비취업자 79.4%가 구직에 필요하고 도움이 될 것 같아서라고 응답하였다.

한편 <표 V-14>에 나타나듯이 현재 참여하고 있는 직업훈련에 대해 응답자 259명 중 74.9%(194명)는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업훈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종료자 중 취업자 및 비취업자의

<표 V-13>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이유

(단위 : 명, %)

	참 여 자		취 업 자		비취업자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다른 직업으로 바꾸고 싶어서	6	2.3	0	0.0	0	0.0
구직에 필요하고 도움이 될 것 같아서	203	78.4	43	79.6	27	79.4
지급되는 수당 또는 교통비 때문에	3	1.2	0	0.0	1	2.9
무료이기 때문에	3	1.2	1	1.9	1	2.9
배우고 싶은 훈련과정이어서	37	14.2	9	16.7	5	14.7
임의로 배정받았기 때문에	3	1.2	1	1.9	0	0.0
기 타	4	1.5	0	0.0	0	0.0
전 체	259	100.0	54	100.0	34	100.0

<표 V-14> 직업훈련의 만족도 평가

(단위 : 명, %)

	참 여 자		취 업 자		비취업자	
	인 원	구성비	인 원	구성비	인 원	구성비
전혀 만족하지 않다.	0	0.0	4	7.4	0	0.0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17	6.6	7	13.0	5	14.7
보통이다.	48	18.5	9	16.7	10	29.4
대체로 만족하는 편이다.	151	58.3	29	53.7	17	50.0
매우 만족한다.	43	16.6	5	9.3	2	5.9
전 체	259	100.0	54	100.0	34	100.0

직업훈련 만족 비율은 각각 63.0%, 55.9%로 나타났다. 직업훈련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참여자 17명 중 70.6%(12명)는 교육내용이 부실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제시하였으며, 종료자는 적합한 직업훈련프로그램의 부재, 창업과 취업에 도움이 되지 못함, 교육내용의 부실 등을 불만족의 주된 원인으로 제시하였다(표 V-15 참조).

자활직업훈련에 참여한 종료자 중 현재 취업상태에 있는 54명 중 53.7%(29명)는 훈련내용이 현재의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적은 것으로

응답한 반면, 유사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3.4%(18명)에 불과하였다. 또한 비취업상태에 있는 34명 중 20.6%(7명)는 훈련내용이 현재의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적은 것으로 응답한 반면, 23.5%(8명)는 대체로 유사하다고 응답하였다(표 V-16 참조). 이와 같은 설문결과를 통해서 볼 때 인력수요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취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하는 노력이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시급한 과제로 평가된다.

<표 V-15> 직업훈련에 불만족하는 이유

(단위 : 명, %)

	참 여 자		취 업 자		비취업자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적합한 훈련프로그램이 없어서	1	5.9	4	36.4	0	0.0
창업과 취업에 도움이 되지 못하여	3	17.6	3	27.3	3	60.0
교육내용이 부실하여	12	70.6	4	36.4	1	20.0
교육내용이 난해하여	0	0.0	0	0.0	1	20.0
시간이 맞지 않아서	1	5.9	0	0.0	0	0.0
전 체	17	100.0	11	100.0	5	100.0

<표 V-16> 현재의 직무와 직업훈련 교육내용 유사성 평가

(단위 : 명, %)

	취 업 자		비취업자	
	인 원	구성비	인 원	구성비
전혀 관련이 없다.	18	33.3	4	11.8
관련이 적은 편이다.	11	20.4	3	8.8
보통이다.	7	13.0	19	55.9
대체로 유사한 편이다.	13	24.1	8	23.5
매우 유사하다.	5	9.3	0	0.0
전 체	54	100.0	34	100.0

다. 취업알선

현재 비취업상태에 있는 자활종료자와 자활사업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보면 전자의 경우 설문에 응답한 189명 중 59.8%(113명), 후자의 경우 505명 중 50.7%(256명)가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나머지는 가사 및 육아문제, 기능의 부족, 질병, 일자리의 부족, 직업훈련 참여 등의 이유로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활사업 참여자의 경우 <표 V-17>에서 보듯이 현재 직업훈련을 받는 중이기 때문에(43.8%) 구직활동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종료자 중 비취업자의 경우 기술이 없어서(24.3%), 가사 및 육아에 지장을 받아서(18.6%),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어서(18.6%) 구직활동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7> 구직활동에 소극적인 이유

(단위 : 명, %)

	참 여 자		종료자(비취업)	
	인 원	구성비	인 원	구성비
나이가 많아서	5	2.0	2	2.9
일이 힘들어서	2	0.8	3	4.3
가사 및 육아에 지장을 받아서	25	10.0	13	18.6
기술이 없어서	32	12.9	17	24.3
건강이 좋지 않아서	21	8.4	9	12.9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어서	18	7.2	13	18.6
직업훈련을 받는 중	109	43.8	2	2.9
시험준비중	14	5.6	4	5.7
기타	23	9.3	7	10.0
전 체	249	100.0	70	100.0

주 : 기타에는 임대준비, 창업준비, 자활인턴 참여, 공공근로 참여, 취업후 생계비 중단 등의 이유가 포함됨.

이들의 구직경로를 보면 자활사업 참여자의 54.6%, 종료자 중 비취업상태에 있는 자의 21.8%가 공공직업안정기관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활사업으로부터 이탈한 자의 공공직업안정기관 이용률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기록되었다. 종료자 중 비취업상태에 있는 자는 주로 구인광고 및 인터넷(50.0%), 연고채용(24.5%)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종료자 중 비취업상태에 있는 자활취업대상자에게 구직정보를 지속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표 V-18> 구직경로

(단위 : 명, %)

	참 여 자		종 료 자 (비취업)	
	인 원	구성비	인 원	구성비
공공직업 안정기관	137	54.6	24	21.8
구인광고/인터넷	92	36.7	55	50.0
학교취업 상담실	0	0.0	1	0.9
민간직업 소개소	1	0.4	3	2.7
연고채용	21	8.4	27	24.5
전 체	251	100.0	110	100.0

구직에 대한 주된 장애요인으로서는 고연령, 학력 및 기능의 부족, 취업정보의 부족, 질병 또는 경증장애, 일자리의 부족 등이 제시되었다. 특히 자활사업 참여자와 종료자 중 비취업자의 경우 나이가 많거나 학력 및 기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51.2%, 50.4%에 달하여 이들이 노동시장에서 취업이 힘든 취약계층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이고 있다. 또한 <표 V-20>에서 보듯이 이들은 희망조건을 낮추어도 취업이 어렵거나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체계적인 직업훈련을 통해 시장에서 요구되는 기능을 갖추게 하거나 공공근로와 같은 사회적 일자리로 취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들은 대부분 상용직으로 고용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희망임금 및 유보임금은 주로 50~100만원 사이에 분포되어 있다. <표 V-21>에서 보듯이 자활사업 참여자 및 종료자 중 비취업자의 상용직 희

<표 V-19> 구직에 대한 장애요인

(단위 : 명, %)

	참 여 자		종 료 자(비취업)	
	인 원	구성비	인 원	구성비
취업정보의 부족	22	8.6	14	12.4
학력/기능의 부족	52	20.3	30	26.5
나이가 많아서	79	30.9	27	23.9
가사 및 육아에 지장을 받아서	20	7.8	5	4.4
질병 또는 경증장애가 있어서	13	5.1	13	11.5
일자리가 없거나 부족	31	12.1	7	6.2
제시된 일자리의 임금이 적어서	17	6.6	3	2.7
작업환경이 열악해서	0	0.0	5	4.4
근로시간이 너무 많아서	4	1.6	6	5.3
기타	18	7.0	3	2.7
전 체	256	100.0	113	100.0

주 : 기타에는 교통불편, 경력부족, 신용불량자, 군입대 등의 이유가 포함됨.

<표 V-20> 취업 가능성

(단위 : 명, %)

	참 여 자		종료자(비취업)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희망조건을 낮추어도 어려울 것임.	47	18.5	16	14.2
희망조건을 낮추어도 시간이 걸릴 것임.	113	44.5	50	44.2
희망조건을 낮추면 곧 취업될 것임.	43	16.9	21	18.6
시간이 걸리지만 희망조건대로 취업할 것임.	33	13.0	19	16.8
희망조건대로 곧 취업될 것임.	18	7.1	7	6.2
전 체	254	100.0	113	100.0

<표 V-21> 희망 고용형태

(단위 : 명, %)

	참 여 자		종료자(비취업)	
	인 원	구성비	인 원	구성비
상용직	211	82.4	100	88.5
임시직	8	3.1	4	3.5
일용직	3	1.2	4	3.5
시간제근로	19	7.4	4	3.5
고용주/자영업자	13	5.1	1	0.9
상관없음	2	0.8	0	0.0
전 체	256	100.0	113	100.0

<표 V-22> 희망임금 및 유보임금

(단위 : 명, %)

	참 여 자				종료자(비취업)			
	희망임금		유보임금		희망임금		유보임금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5만원 이하	9	3.5	24	9.4	5	4.4	11	9.7
51~70만원	53	20.7	114	44.5	19	16.8	43	38.0
71~100만원	136	53.1	90	35.2	65	57.6	48	42.5
101~120만원	23	9.0	10	3.9	9	8.0	7	6.2
121~150만원	24	9.4	14	5.5	11	9.8	1	0.9
151만원 이상	11	4.3	4	1.6	4	3.6	3	2.7
전 체	256	100.0	256	100.0	113	100.0	113	100.0

망비율은 각각 82.4%, 88.5%로 나타났다. 또한 <표 5-22>에서 보듯이 자활사업 참여자의 희망임금은 51~70만원(20.7%), 71~100만원(53.1%)의 분포를 보이고 있지만, 유보임금은 51~70만원(44.5%), 71~100만원(35.2%)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종료자 중 비취업자의 경우 희망임금은 51~70만원(16.8%), 71~100만원(57.6%)의 분포를 보이고 있지만, 유보임금은 51~70만원(38.0%), 71~100만원(42.5%)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라. 직업적응훈련프로그램

한편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505명 중 33.9%(171명)는 직업적응훈련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39.2%(67명)는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참여자의 29.3%(50명)는 직업적응훈련프로그램이 취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응답하였다. 한편 직업적응훈련프로그램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 20명은 교육내용의 부실(45.0%), 취업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음(35.0%), 적합한 프로그램의 부재(25.0%)를 이유로 제시하였다. 반면 자활사업 종료자 501명 중 12.4%(62명)는 직업적응훈련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3.9%(21명)는 직업적응훈련프로그램에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22.6%(14명)는 직업적응훈련프로그램이 취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응답하였다. 한편 직업적응훈련프로그램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 6명은 모두 직업적응훈련이 취업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V-23> 직업적응훈련 만족도

(단위 : 명, %)

	참여자		종료자(취업)		종료자(비취업)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4	2.3	0	0.0	0	0.0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16	9.4	1	3.1	5	16.7
보통이다.	68	39.8	20	62.5	15	50.0
대체로 만족한다.	58	33.9	11	34.4	8	26.7
매우 만족한다.	9	5.3	0	0.0	2	6.7
무응답	16	9.4	0	0.0	0	0.0
전 체	171	100.0	32	100.0	30	100.0

<표 V-24> 직업적응훈련의 취업도움 평가

(단위 : 명, %)

	참 여 자		종료자(취업)		종료자(비취업)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전혀 도움이 못 된다.	3	1.8	0	0.0	0	0.0
도움이 못 되는 편이다.	22	12.9	2	6.3	4	13.3
보통이다.	78	45.6	24	75.0	18	60.0
대체로 도움이 된다.	42	24.6	6	18.8	8	26.7
매우 도움이 된다.	8	4.7	0	0.0	0	0.0
무응답	18	10.5	0	0.0	0	0.0
전 체	171	100.0	32	100.0	30	100.0

<표 V-25> 직업적응훈련에 대한 불만족 이유

(단위 : 명, %)

	참 여 자		종료자(취업)		종료자(비취업)	
	인 원	구성비	인 원	구성비	인 원	구성비
적합한 프로그램이 없어서	4	20.0	0	0.0	0	0.0
취업에 도움이 되지 못하여	7	35.0	1	100.0	5	100.0
교육내용이 부실해서	9	45.0	0	0.0	0	0.0
전 체	20	100.0	1	100.0	5	100.0

3. 자활사업의 성과 측정

가. 취업률

취업으로 유도된 자활사업 종료자 501명 가운데 62.3%(312명)는 조사 시점에서 취업상태에 있었지만, 나머지 37.7%(189명)는 취업하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현재 취업상태에 있는 자활사업 종료자 312

명 중 16.0%(50명)는 자활사업 종료시 비취업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미취업상태에 있는 189명 가운데 자활사업 종료 이후 조사시점까지 취업을 한 적이 있는 경우는 30.2%(57명)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69.8%(132명)는 자활사업 종료사유가 취업으로 분류되었지만, 여전히 미취업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활사업 종료 당시 취업으로 분류된 501명 가운데 63.7%(319명)만이 실질적으로 취업을 통해 자활사업을 종료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V-26>에서 보듯이 자활사업 종료 이후 조사시점에서 취업하고 있지 않은 189명은 구직활동을 하고(52.9%), 아무 것도 안하고 있거나(20.6%), 간혹 막일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10.1%) 나타났다. 또한 현재 미취업상태에 있는 189명 중 2.1%(4명)만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58.4%), 다니던 직장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23.2%), 고용보험의 혜택이 종료되었다(10.3%), 다니던 직장에서 고용보험의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7.6%)고 응답하였다.

<표 V-26> 현재 비취업중인 자의 경제활동

(단위 : 명, %)

	인 원	구 성 비
구직활동	100	52.9
아무 것도 안하고 있음	39	20.6
간혹 막일 등을 하고 있음	19	10.1
직업훈련 참여	7	3.7
기타	24	12.7
전 체	189	100.0

한편 자활사업 참여자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로짓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모형에서 이용된 로지스틱(Logistic) 회귀분석의 반응변수는 자활사업 참여 이후 취업한 경우를 1

로 하였고, 설명변수로는 성, 연령, 학력, 세대주, 거주지, 참여 자활사업을 이용하였다. 각각의 설명변수는 더미변수의 형태를 취하며, 남자, 20대 청장년층,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층, 세대주, 대도시지역 거주자 등이 비교집단으로 이용되었다. 또한 자활사업 자체의 취업효과를 분리하기 위해 개별사업을 더미변수로 이용하였으며, 설명변수의 비교집단은 참여자의 취업률이 비교적 높은 취업알선사업이다. 분석모형은 회귀분석에 이용된 표본에 따라 모형1과 모형2로 구분된다. 모형1의 경우 자활종료자 501명을 취업자로, 조사시점에서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를 미취업자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사시점에서 미취업상태에 있었던 189명 가운데 132명은 자활사업 종료 이후 조사시점까지 취업을 한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기 때문에 모형2에서는 이들을 미취업자로 간주하였다.

분석결과 중고령층, 세대주, 대도시 거주자의 취업가능성이 20대 청년층, 비세대주, 중소도시 및 농촌 거주자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여자, 고졸 및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자활대상자가 각각 남자,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 소지자에 비해 취업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7>의 모형 1에서 나타나듯이 여자의 경우 남자에 비해 취업할 가능성이 높지만, 50대의 경우 20대 청년층에 비해 취업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령에 있어서의 30대, 50대) 학력(고졸)의 변수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한편 참여 자활사업이 고용가능성에 미치는 상대적 효과를 보았을 때, 취업알선사업에 비해 직업훈련, 창업지원, 직업적응훈련의 효과성이 낮게 나타난 반면, 구직세일즈 공공근로의 취업효과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활인턴의 경우는 취업알선사업에 비해 취업효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차이는 근소하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결과를 보이고 있지 않다. 모형2는 모형1과 유사한 분석결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자활인턴사업의 경우 취업알선사업에 비해 취업효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모형1과는 반대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차이는 분석에 이용된 표본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V-27> 취업여부에 대한 로지스틱(Logistic)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모 형 1	모 형 2
여자	0.21(0.15)	0.26(0.15) *
연령(30대)	-0.31(0.19) *	-0.23(0.19)
연령(40대)	-0.18(0.22)	-0.24(0.22)
연령(50대)	-1.49(0.49) ***	-1.82(0.59) ***
학력(중졸 이하)	0.27(0.19)	0.20(0.20)
학력(고졸)	0.38(0.23) *	0.24(0.23)
세대주	-0.11(0.17)	-0.01(0.17)
대도시 거주	-0.16(0.14)	-0.24(0.14) *
공공근로	0.49(0.27) *	0.30(0.24)
직업훈련	-1.80(0.17) ***	-1.73(0.18) ***
창업지원	-2.49(1.08) **	-1.93(1.08) *
자활인턴	0.02(0.40)	-0.81(0.38) **
직업적응훈련	-1.47(0.21) **	-1.57(0.23) ***
상수	0.89(0.24) ***	0.37(0.24)
-2log likelihood	1192.65	1153.42
Chi-square	197.80 ***	166.18 **
자유도	13	13

주 : 1) 반응변수는 자활사업 참여 후 취업한 경우를 1로 하고 나머지를 0으로 함.

2) ()안의 수치는 표준오차임.

3) ***, **, *는 각각 1%, 5%, 10%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나. 고용안정성

한편 자활사업 종료 이후 취업한 직장에서의 재직기간을 보면 종료자 중 취업자 및 비취업자의 재직기간(3개월 이하)은 각각 45.6%, 56.2%이며, 6개월 이하인 경우는 각각 71.9%, 86.0%에 달하였다(표 V-28 참조). 이와 같이 자활종료자의 재직기간이 짧은 것은 취업대상자의 취업시점이 비교적 최근이기 때문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활취업대상자의 고용이 상당히 불안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표 V-28> 종료자의 재직기간

(단위 : 명, %)

	취업자		비취업자	
	인 원	구 성 비	인 원	구 성 비
1개월	71	22.8	7	12.3
2개월	38	12.2	14	24.6
3개월	33	10.6	11	19.3
4개월	32	10.3	5	8.8
5개월	25	8.0	2	3.5
6개월	25	8.0	10	17.5
7개월	17	5.4	3	5.3
8개월	27	8.7	3	5.3
9개월	16	5.1	0	0.0
10개월	8	2.6	1	1.8
11개월	13	4.2	1	1.8
12개월	4	1.3	0	0.0
13개월	1	0.3	0	0.0
14개월	2	0.6	0	0.0
전 체	312	100.0	57	100.0

<표 V-29> 이직 횟수

(단위 : 명, %)

	취업자		비취업자	
	인 원	구 성 비	인 원	구 성 비
0회	201	64.4	32	56.2
1회	26	8.3	5	8.8
2회	25	8.0	6	10.5
3회	10	2.0	3	5.3
4회 이상	50	17.3	43	19.2
전 체	312	100.0	57	100.0

<표 V-29>에서 보듯이 자활사업 종료 이후 현재의 직장을 얻기까지 취업자의 35.6%, 비취업자의 43.8%가 1회 이상 직장을 옮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4회 이상 이직을 경험한 경우도 각각 17.3%, 19.2%로 나타났다. 특히 종료자 중 실업자의 재직기간은 취업자에 비해 짧고, 이직의 빈도도 높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적절한 사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재직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헤저드 모형(Hazard model)을 이용하여 분석을 시도하였지만, 성별에 따른 차이 이외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표 V-30>에서 보듯이 여자의 경우 남자에 비해 일자리에서의 재직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자활사업 참여기간중 직업훈련을 받은 자의 재직기간이 여타의 자활사업에 참여한 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직업훈련이 고용의 안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표 V-30> 헤저드 모형 추정 결과

독립변수	회귀계수	표준편차
여자	-0.61**	0.28
연령	0.01	0.02
학력(중졸 이하)	0.37	0.40
학력(고졸)	-0.32	0.38
세대주	-0.29	0.33
대도시 거주	0.07	0.27
직업훈련 참여	0.54	0.36
-2 Log Likelihood	599.36	
No. of Obs.	369	
Censored Obs. (%)	84.6	

- 주 : 1) 전체표본 369명 중 57명은 자활종료 이후 취업에서 실업으로 전환된 자임.
 2) 학력에 대한 비교집단은 전문대졸 이상 학력 소지자임.
 3) **는 5%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다. 가구소득

자활사업 종료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76.1만원으로 현재 참여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 50.1만원보다 51.9%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¹⁵⁾ 가구별 총소득의 구성을 보면 종료자의 근로소득은 월평균 43.5만원으로 참여자의 근로소득(6.0만원)을 크게 상회하고 있지만, 타가구원의 근로소득은 각각 18.5만원, 15.9만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또한 종료자 가구는 월평균 12.3만원의 정부지원급여(생계급여와 주거급여 포함)를 받고 있지만, 참여자 가구는 월평균 26.3만원의 정부지원급여를 받고 있었다.

<표 V-31> 가구유형별 월평균 소득, 생활비, 부채액

(단위 : %, 천원)

	참여자	종 료 자		
		전 체	현재 취업자	현재 비취업자
총 소 득	501	761	889	545
근로소득(본인)	60	435	619	127
근로소득(타가구원)	159	185	161	224
정부지원금	263	123	94	171
민간단체 지원금	1	0.6	0.7	0.5
가족·친지 보조	15	12	7.1	21
생활비	580	668	723	576
부채액(평균값)	27,420	20,830	20,660	21,160
부채액(중위수)	10,000	10,000	10,000	10,000

주 : 부채액 평균값과 중위수의 큰 차이는 일부 수급자의 부채액 규모가 크기 때문임.

15) 이와 같은 조사결과는 자활사업 종료 이후 근로소득의 변화와 관련하여 501명의 응답자 중 29.5%가 증가하였다고 응답한 반면, 9.6%만이 감소하였다고 응답한 결과에 의해서 확인되기도 한다.

<표 V-31>에서 보듯이 조사시점에서 취업대상자가 취업상태에 있는 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88.9만원)이 비취업상태에 있는 가구(54.5만원)에 비해 63.1%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자의 경우 가구별 총소득에서 취업대상자의 근로소득이 69.6%를 차지하고 있지만, 후자의 경우 타가구원의 근로소득(41.1%)과 정부지원급여(31.4%)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가구별 소득구성은 가구별 주요 생계수단에 반영되어 있다. <표 V-32>에서 나타나듯이 참여자 가구는 주로 정부지원금에 의존(61.2%)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반면, 취업대상자가 취업상태에 있는 종료자 가구의 경우 본인의 근로소득에 대한 의존도(89.7%)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종료자 가구 중 취업대상자가 비취업상태에 있는 경우 타가구원의 근로소득과 정부지원금에 대한 의존도(64.0%)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이들 가구에 대한 체계적인 자활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표 V-33>에서 보듯이 자활사업 종료와 함께 자활대상자 가구가 수급권 가구로부터 탈출한 경우 본인과 타가구원의 근로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94.2%로 높게 나타난 반면, 수급권 가구로 잔류하고 있는 경우 생계비의 22.5%를 정부지원금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32> 가구 유형별 주요 생계수단(1)

(단위 : %)

	참여자 가구	종료자 가구(취업)	종료자 가구(비취업)
본인의 근로소득	11.7	89.7	25.4
타가구원의 근로소득	21.8	6.1	34.4
정부지원금	61.2	3.2	29.6
가족·친지 보조금	2.0	0.0	1.6
과거의 저축	1.4	0.3	4.8
대출 또는 빚	1.6	0.0	2.1
기타	0.3	0.7	2.1

<표 V-33> 가구 유형별 주요 생계수단(2)

(단위 : %)

	수급권 가구		수급권 탈락가구	
	가구수	구성비	가구수	구성비
본인의 근로소득	167	57.8	160	76.9
타가구원의 근로소득	47	16.3	36	17.3
정부지원금	65	22.5	1	0.5
가족·친지 보조금	3	1.0	0	0.0
과거의 저축	5	1.7	5	2.4
대출 또는 빚	0	0.0	4	1.9
기타	2	0.6	2	1.0
전 체	289	100.0	208	100.0

한편 종료자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는 66.8만원으로 참여자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58.0만원)보다 15.2%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종료자 가구 중 취업대상자가 취업상태에 있는 경우 월평균 생활비는 72.3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가구별 총소득의 생활비 충족률은 종료자 가구의 경우 113.9%, 참여자 가구의 경우 86.4%를 기록하였으며, 종료자 가구 중 취업대상자가 취업상태에 있는 가구의 생활비 충족률은 122.9%를 나타내었다.

또한 참여자 가구의 월평균 부채액은 약 27백만원으로 종료자 가구의 부채액에 비해 많지만, 부채액 중위수는 이보다 적은 10백만원으로 나타났다.¹⁶⁾ 이와 같이 월평균 부채액과 부채액의 중위수가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일부 가구의 부채액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표 V-34>에서 가구유형별 부채증가의 원인을 보면 생활비의 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의료비, 주택자금 마련 등도 비교적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종료자 가구 중 취업대상자가 비취업상태에 있을 경우 의료

16) 설문에 응답한 501가구 중 57.1%에 해당하는 286가구에서 부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34> 가구유형별 부채증가의 원인

(단위 : %)

	참여자 가구 N=302	종료자 가구 (취업) N=52	종료자 가구 (비취업) N=37
교육비	3.0	5.8	5.4
의료비	10.9	11.5	16.2
생활비	35.8	38.5	45.9
주택자금 마련	12.6	17.3	5.4
영농자금	1.7	1.9	0.0
사업자금 마련	11.6	5.8	5.4
관혼상제	1.3	1.9	0.0
보증	4.6	3.8	5.4
부도	12.3	5.8	8.1
카드빚 상환	2.6	3.8	2.7
기타	3.6	3.9	5.5

비(16.2%)는 생활비 다음으로 부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활대상자가 취업상태에 있는 경우 가구규모별 총소득 및 근로소득의 최저생계비 충족률은 가구규모가 커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3인 이상 가구의 경우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35>에서 보듯이 3인, 4인, 5인 및 6인 이상 가구에 있어서 근로소득의 최저생계비 충족률은 각각 92.1%, 91.0%, 81.9%, 82.3%로 나타났다. 더욱이 자활대상자가 비취업상태에 있는 경우 이들 가구는 절대빈곤의 수준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총소득의 최저생계비를 충족률은 65% 정도에 불과하고, 근로소득의 최저생계비 충족률은 이보다 낮은 상태에 있다. 2인, 3인, 4인, 5인 및 6인 이상 가구에 있어서 근로소득의 최저생계비 충족률은 각각 41.4%, 37.5%, 39.6%, 48.3%, 46.0%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활사업에 근로소득 공제를 도입함으로써 취업대상자에게 근로유인을 제공하고, 동시에 일

<표 V-35> 가구규모별 소득의 최저생계비 충족률

(단위 : 천원, %)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이상
종료자 가구(A)						
총소득	533(159.6)	623(112.7)	828(108.9)	986(103.1)	986(90.7)	1,120(91.3)
근로소득	467(139.8)	561(101.4)	700(92.1)	870(91.0)	890(81.9)	1,010(82.3)
근로소득(1)	467(139.8)	531(96.0)	607(79.9)	675(70.6)	618(56.9)	619(50.4)
근로소득(2)	0	30	93	195	272	391
정부지원금	67	57	103	106	87	81
종료자 가구(B)						
총소득	500(149.7)	364(65.8)	479(63.0)	609(63.7)	705(64.9)	782(63.7)
근로소득	500(149.7)	229(41.4)	285(37.5)	379(39.6)	525(48.3)	564(46.0)
근로소득(1)	500(149.7)	178(32.2)	148(19.5)	91(9.5)	58(5.3)	149(12.1)
근로소득(2)	0	51	137	288	467	415
정부지원금	0	127	171	188	168	214

- 주 : 1) 총소득은 근로소득과 정부지원금(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이외에 민간단체 지원금 및 가족·친지보조금을 합한 금액임.
 2) 종료자 가구(A)는 자활취업대상자가 조사시점에서 취업을 하고 있는 가구이며, 종료자 가구(B)는 자활사업 종료시점에서는 취업을 했지만, 조사시점에서는 취업을 하고 있지 않은 가구임.
 3) 근로소득(1)은 자활취업대상자 본인의 근로소득이며, 근로소득(2)는 기타 가구원의 근로소득임.
 4) ()안의 수치는 2001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충족률임.

정 정도 소득을 보전해 주지 않을 경우 이들 가구는 빈곤선을 탈피하여 자립으로 유도되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¹⁷⁾

한편 취업된 자활종료자의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임금함수를 추정하였다. 임금함수는 $\ln W_a = \beta_1 X_1 + \dots + \beta_k X_k + \varepsilon$ 으로서 통상적인 Mincer형 임금함수를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성별, 취업경험, 고용된 기업의 규모, 근로시간, 재직기간 및 이전 직장에서의 임금은 자활종료자의 임금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17) 근로소득공제는 자활대상자에 대한 근로유인효과뿐만 아니라 소득보전효과를 동시에 갖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36>에서 보듯이 여자의 임금은 남자에 비해 낮지만, 자활사업 참여 이전에 취업을 경험한 자의 임금은 취업경험이 없는 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의 규모가 크고,

<표 V-36> 임금함수 추정 결과

독립변수	회귀계수	표준편차
여자	-0.35***	0.08
연령(30대)	0.05	0.09
연령(40대)	0.07	0.10
연령(50대)	-0.08	0.28
학력(중졸 이하)	0.06	0.11
학력(고졸)	0.15	0.09
세대주	-0.02	0.08
대도시 거주	0.06	0.07
취업경험	0.24***	0.07
규모 1(6~30인)	0.13	0.08
규모 2(31~100인)	0.29***	0.09
규모 3(100인 이상)	0.25*	0.14
주당 근로시간	0.01***	0.002
재직기간	0.02*	0.01
이전 직장 임금	7.14E-04*	0.00
상수	3.40***	0.18
표본수	123	
R ²	0.45	
조정된 R ²	0.37	

주 : 1) 연령, 학력, 규모에 대한 비교집단은 각각 20대, 전문대졸 이상 학력 소지자, 5인 이하의 기업임.

2) ***, **, *는 각각 1%, 5%, 10%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근로시간 및 재직기간이 길며, 이전 직장에서의 임금수준이 많을수록 취업으로 유도된 자활종료자의 임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령 및 학력의 차이는 임금수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및 40대의 임금수준은 20대 청년층에 비해 높고, 50대 중고령층의 임금수준은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추정계수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또한 중졸 이하 및 고졸 학력자의 임금수준은 전문대졸 이상 학력자의 임금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세대주는 비세대주에 비해 임금이 낮고, 대도시 거주자의 임금은 중소도시 및 농촌 거주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통해서 볼 때 특히 여자와 노동시장에 신규로 진입한 자의 임금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되며, 취업경험의 유무가 기능 및 숙련의 정도를 일부 반영할 경우,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은 자활사업의 성공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4. 소 결

이상의 내용을 종합할 때, 현행 노동부 자활사업의 집행과정 및 전달 체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첫째,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자활사업 참여자 및 종료자는 대체로 취업대상자로 선정된 것에 만족하고, 사회복지사의 수급자 선정조사는 공정하고 정확하였다고 평가하였지만, 급여수준에는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는 곧 취업대상자들이 불충분한 자활급여로 인해 자발적으로 자활사업을 이탈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취업대상자들은 대체로 자활사업에 만족하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만족도는 종료자보다 참여자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자활사업에 부정적으로 응답한 자들은 생계급여의 부족, 적성과 능력에 맞지 않는 사업참여, 취업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프로그램 등을 주된 이유로 제시하였다. 특히 현재 취업상태에 있는 자활사업 종료자의 26.0%는 자활사

업 참여경험이 현재의 직장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으며, 자활사업 참여기간중 취업기회의 부족, 본인의 적성 및 희망에 맞지 않는 자활프로그램의 제공 등을 그 이유로 제시하였다.

셋째, 전반적으로 자활업무의 행정기관간 협조는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자활사업간 취약한 연계구조, 부실한 자활상담, 사후관리의 부재, 형식적인 자활훈련, 자활정보의 부실, 자활사업의 일방적 배정 등이 여전히 문제점으로 남아 있다. 특히 자활사업 참여자 505명 중 39.9%는 본인이 희망하는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취업대상자의 희망과 특성을 고려하여 자활사업을 배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자활지원서비스는 자활프로그램과 함께 참여자의 자활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조건이다. 예컨대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다고 할지라도 간병, 보육 및 탁아 등으로 인해 자활사업 참여가 제한받을 경우 이들의 자활은 실질적으로 어렵게 된다. [그림 III-4]에서 보았듯이 2001년 10월말 현재 근로능력자 33만명 중 4.8만명은 미취학자녀의 양육, 치매 노인 간병 등으로 인해 조건부과로부터 제외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가구여건으로 인해 이들의 취업이 제약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자활에 필요한 지원서비스로 의료서비스, 보육시설, 방과후교실 등이 긴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자활사업 참여자들은 취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직업훈련프로그램의 확대, 다양한 자활프로그램의 개발 및 참여자 특성에 따른 프로그램의 제공, 생계급여 등 각종 급여의 확대, 취업정보의 확대를 개선되어야 할 주요 과제로 제시하였다. 특히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이유에 대해 응답자의 대부분은 구직에 필요하고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또는 배우고 싶은 훈련과정이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현재 참여하고 있는 직업훈련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직업훈련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자는 교육내용의 부실, 적합한 직업훈련프로그램의 부재, 창업과 취업에 도움이 되지 못함 등을 불만족의 주된 원인으로 제시하였다. 자활직업훈련에 참여한 종료자 중 현재

취업상태에 있는 54명 중 53.7%, 비취업상태에 있는 34명 중 20.6%(7명)는 훈련내용이 현재의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적은 것으로 응답하였다. 이와 같은 설문결과를 통해서 볼 때 지역단위의 인력수요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취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하는 노력이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시급한 과제로 판단된다.

여섯째, 현재 비취업상태에 있는 자활종료자의 구직경로를 보면 자활사업 종료자의 공공직업안정기관 이용률이 현저하게 낮은 반면, 구인광고 및 인터넷, 연고채용에 의존하는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비취업상태에 있는 자활사업 종료자에게 구직정보를 지속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구직에 대한 장애요인으로서는 고연령, 저학력, 기능부족, 취업정보의 부족, 질병 또는 경증장애, 일자리 부족 등이 제시되었다. 특히 자활사업 참여자와 종료자 중 비취업자의 경우 나이가 많거나 학력 및 기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51.2%, 50.4%에 달하여 이들이 노동시장에서 취업이 힘든 취약계층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이들은 희망조건을 낮추어도 취업이 어렵거나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공공근로와 같은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직업적응훈련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233명 중 37.8%는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응답하였지만, 11.2%는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후자의 경우 교육내용의 부실, 취업에 도움이 되지 못함, 적합한 프로그램의 부재 등을 부정적인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자활욕구가 큰 경우 자활사업 참여 이후 취업할 확률이 크기 때문에 체계적인 직업적응훈련을 통해 취업대상자의 자활욕구를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

한편 자활사업의 성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첫째, 취업으로 분류된 자활종료자 501명의 조사시점에서의 취업률(point-in-time estimate)은 62.3%를 기록하였고, 조사시점까지 취업을

경험했거나 취업하고 있는 자(durational estimate)는 73.7%에 달하였다. 그러나 자활사업 종료시 취업으로 분류되었지만, 실질적으로 미취업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응답한 경우를 고려하면, 후자의 경우 실제 취업률은 63.7%로 낮아진다. 이러한 자활종료자의 취업률은 미국 TANF 체제 하에서 복지급여로부터 이탈한 수급자의 취업률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지만, 구조조정과 경기침체에 있었던 우리의 상황을 고려할 때 노동부 자활대상자의 취업률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와 같이 다소 높은 취업률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내재하는 문제점이 작용한 결과이기도 하다. 즉 자활사업 시행 초기 조건부 수급자들이 체계적으로 선별되지 못한 상태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수준에 만족하지 않는 많은 수의 취업대상자가 자발적으로 자활사업으로부터 이탈한 결과이기도 하다.

둘째, 자활사업 종료 이후 취업한 직장에서의 재직기간을 보면 종료자 중 취업자 및 비취업자의 재직기간(3개월 이하)은 각각 45.6%, 56.2%이었으며, 6개월 이하인 경우는 각각 71.9%, 86.0%에 달하였다. 이와 같이 자활종료자의 재직기간이 짧은 것은 취업대상자의 취업시점이 비교적 최근이기 때문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활취업대상자의 고용이 상당히 불안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자활사업 종료 이후 현재의 직장을 얻기까지 취업자의 35.6%, 비취업자의 43.8%가 1회 이상 직장을 옮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4회 이상 이직을 경험한 경우도 각각 17.3%, 19.2%로 나타났다. 또한 취업으로 유도된 자활종료자들은 주로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개인서비스업에 종사하였고,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이들은 전반적으로 소규모 영세기업에서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 등 비정규직의 신분으로 고용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자활취업대상자의 고용이 상당히 불안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자활종료자 중 실업자의 재직기간은 취업자에 비해 짧고, 이직의 빈도도 높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적절한 사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자활종료자의 가구규모별 총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충족시키는 비율은 가구규모가 커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종료자 가구 중 취업대상자가 취업상태에 있는 경우보다 뚜렷이 나타나며, 특히 3인 이상 가구의 경우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종료자 가구 중 취업대상자가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 이들 가구는 절대빈곤의 수준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총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충족시키는 비율은 65% 정도에 불과하고,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충족시키는 비율은 이보다 낮은 상태에 머물고 있다. 더욱이 자활종료자의 직장내 4대보험 가입률은 낮은 수준이고, 복리후생제도 또한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활사업에 근로소득공제를 도입함으로써 자활취업대상자에 대한 근로유인을 제공하고, 동시에 일정 정도 소득을 보전해 주지 않을 경우 이들 가구는 빈곤선을 탈피하여 자립으로 유도되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자활대상자들의 취업 및 재직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을 종합할 때, 이들에게 적합한 직업훈련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표 V-27>의 로짓분석 결과에서 보듯이 직업훈련의 고용효과는 취업알선사업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표 V-30>의 헤저드모형 분석결과에서 보듯이 직업훈련에 참여한 자활종료자의 재직기간은 다른 자활사업에 참여한 자활종료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통해서 볼 때 자활대상자에게 적합한 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한 후, 적정한 일자리로 유도하는 것이 취업 및 고용안정성의 측면에서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VI. 정책과제

노동부가 시행하고 있는 자활사업은 기본적으로 자활대상자의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이 주요 수단이어야 하며, 궁극적인 평가지표는 자립가능한 근로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정적 일자리의 취업률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자활사업에 대한 개선방안도 이와 같은 목표를 보다 효율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제도개선에 맞추어져야 한다.

첫째, 자활사업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행의 근로유인체계를 보완해야 한다. 자활대상자에 대한 근로유인체계는 크게 조건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와 근로소득공제의 도입 및 확대로 분류할 수 있으며, 두 측면에서의 제도개선이 동시에 요구된다. 조건불이행에 대한 제재는 기본적으로 자활대상자들의 실질적인 자활사업 참여를 극대화시키는 수단이어야 하며, 이들의 개인적 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조건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가 미약할 경우 자활대상자는 본인의 생계비지급을 포기하고 음성소득을 위해 근로하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제재조치의 시행 이전에 자활대상자 및 가구에 대한 심층상담을 통해 불이행 사유를 파악하여 적합한 자활프로그램으로 유도하거나, 조건면제의 가능성을 판단해야 한다.¹⁸⁾

한편 근로소득공제가 부재한 상태에서 최저생계비와 근로소득의 차

18) 미국의 경우 TANF 수급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때 복지급여의 감축 및 중단 등 다양한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조건불이행자 본인에 대한 보조금 중단(Adult-Only Sanction), 조건불이행가구 전체에 대한 보조금 중단(Full-Family Sanction), 조건불이행 기간에 연동(Pay-for-Performance)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Holcomb, Pavetti, Ratcliffe and Riedinger, 1998).

액을 지급하는 현재의 보충급여방식은 자활대상자의 근로욕구를 오히려 저하시키고, 근로소득의 축소신고를 유도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는 자활사업으로부터 이탈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취업대상자들은 불충분한 자활급여로 인해 자활사업을 이탈하고, 이들 중 상당 부분은 불안정고용 또는 실업상태에 방치되어 있다. 또한 자활종료자의 근로소득은 가구별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족률은 가구규모가 클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근로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자활대상자에게 근로유인을 제공함으로써 노동시장에서의 취업을 활성화시키고 복지 의존(welfare dependency)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부수적으로는 저임금으로 인한 가구소득의 부족을 보충하는 역할도 한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에 따르면, 2002년부터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 대해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10%의 근로소득공제율은 자활대상자를 취업으로 유도한다는 취지에 비추어 매우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며, 소득규모 및 가구원수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공제율을 적용할 경우 가구단위의 최저생계보장이라는 원칙에 비추어 형평성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적정수준의 근로소득공제율을 적용하여 자활대상자의 근로인센티브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쳐야 한다.¹⁹⁾ 그러나 근로소득공제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소득

19) 황덕순(2000)의 경우 근로소득 5만원까지는 소득액이 바로 추가급여로 되며, 이후 추가소득에 대해서 근로소득공제액을 포함한 총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에 이를 때까지 30%의 근로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강병구(2000)는 기본적으로 10만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액이 바로 추가급여가 되며, 소득이 증가할수록 공제율을 낮추고 가구원수가 증가할수록 공제율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미국의 경우 AFDC하에서 수급자의 근로유인을 높이기 위해 취업한 수급자에게 90달러의 근로비용을 기초공제하고, 취업 후 12개월까지 30달러의 근로소득공제(Earned Income Disregards)를 허용하되 취업 후 초기 4개월까지는 $[(\text{근로소득}-120\text{달러}) \times 1/3]$ 의 근로소득을 공제한 후 수급권자의 자격을 심사하였다. 또한 1996년 복지개혁 이후 전반적으로 근로소득공제의 기간연동제가 폐지되면서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근로소득공제가 집중적으로 적용되었다. 예를 들어 위스콘신주의 경우 근로소

을 파악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기존의 공공근로사업 형태로 운용하던 탁아, 육아, 간병 등의 사업을 전국단위의 사업으로 확대하여 가구여건곤란자에 대한 자활지원서비스를 강화하거나, 사유별로 가구단위의 특별수당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행 자활사업의 급여체계를 보면,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이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수급권자로 선정될 경우 패키지화된 지원을 일괄적으로 받게 되지만 탈락자에 대해서는 모든 급여가 중지되는 방식(all-or-nothing)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일괄지급방식은 자활대상자의 취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급여체계를 개별화시켜야 한다.

셋째, 일종의 입문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직업적응훈련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자활대상자에 대한 상담기능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자활사업의 효과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적성과 능력에 맞지 않는 자활사업에 자활대상자를 배정함으로써 조건불이행률을 높이고 자활욕구를 저하시킬 수 있다. 특히 입문과정에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 의해 수집된 정보 이외에 취업대상자에 대한 직업적성검사 및 심리검사를 바탕으로 이들의 특성을 프로파일링할 수 있는 ‘자활가능조사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자활대상자에 대한 상담 및 판정이 일정한 기준에 근거하지 않을 경우 자활지원계획 수립시 상담자의 자의적 판단에 크게 의존할 수 있으며, 동일한 특성을 가진 자활대상자에 대해 상담원에 따라 상이한 자활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다.

넷째, 자활대상자들의 취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직업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훈련의 내용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공공직업안정기관의 취업알선 기능을 강화하여 자활대상자에게 구인정보를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자활종료자 중 실직상태에 있는 자에게도 구인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사후관리

특공제기간의 제한을 폐지하는 대신 근로소득공제액을 한 달에 $[(\text{근로소득} \times 1/6) + 30\text{달러}]$ 로 하향 조정하였다(Holcomb, Pavetti, Ratcliffe and Riedinger, 1998).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자활대상자를 직업훈련 참여 이후 안정적인 일자리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역단위의 파트너십(local partnership)을 구축하여 직업훈련기관, 공공직업안정기관, 지역경제단체 및 기업, 민간단체들 사이에 구인·구직에 대한 정보가 원활히 유통되어야 한다.

다섯째, 자활대상자 중 상대적으로 근로능력이 낮거나 가구여건이 열악한 근로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공공근로 형태의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표 V-27>의 분석결과에서 보았듯이 50대, 세대주, 대도시 거주자의 경우 청년층, 비세대주, 중소도시 및 농촌 거주자에 비해 취업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요가 부족한 불경기에는 근로소득공제보다 공공근로의 근로유인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여섯째, 자활대상자에 대한 D/B 구축을 통해 이들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취업 이후에는 고용보험 D/B를 통해 관리함으로써 복지와 고용정책을 통합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단 자활대상자의 상당수가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 고용되어 있기 때문에 자활대상자에 대한 통합적 관리를 위해서는 영세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제고되어야 한다. <표 IV-17>에서 보았듯이 조사시점에서 취업상태에 있는 자활종료자의 39.1%, 비취업상태에 있는 자활종료자의 24.6%만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자활대상자에 대해서는 추적조사를 통해 자활사업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켜야 한다.

참고문헌

- 강병구(2000), 『공공근로사업의 제도화 방안 연구: 자활사업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 _____(2001),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공공근로사업: 평가 및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공공경제』, 제6권 제1호.
- 국민기초생활보장자활지원단(2001), 『자활사업 추진현황 통계자료』.
- 김기원(2000), 「Welfare to Work정책과 생산적 복지에 관한 고찰」, 『사회복지정책』 제10집.
- 김수현(2001), 「기초생활보장의 쟁점과 과제」, 『자활정책 연구회 발표원고 모음집』.
- 김승오(2001), 「자활지원사업을 통해 바라본 민·관협력의 평가와 전망」, 『도시와 빈곤』 50.
- 김종일(2000), 「미국의 노동중심적 복지개혁에서의 ‘노동시장연결’ 모델과 ‘인간자본개발’ 모델 비교」, 『한국사회복지학』, 통권 제41호.
- 김홍일(2001), 「자활사업 프로그램의 내실화방안」, 『복지동향』 32.
- 노대명(2001), 「자활사업에 대한 평가와 정책제안」, 『보건복지포럼』 제60호.
- _____(2001), 「한국자활사업의 당면문제와 해결방안」, 『사회복지』 제150호.
- _____(2001), 「사회적 연대와 자활사업」, 『복지동향』 32.
- 노동부(2000), 『노동부 자활지원사업』.
- 삶의질향상기획단(2000), 『공동체와 함께 하는 자활지원』.
- 서용석(2000), 「미국의 공공부조 프로그램의 개혁: 1996년 PRWORA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제7집 제2호.

- 양철호 · 이수배 · 이경미 · 이형하 · 조준(2000), 「생산적 복지의 개념에 관한 일 고찰」, 『사회복지정책』 제10집.
- 유길상 외(1998), 『실업자 사회안전망의 국제비교』, 한국노동연구원.
- 이상록(2001), 「자활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 자활사업의 제도적 특성과 문제점, 개선방안의 모색」, 『복지동향』 32.
- 이인재(2000), 「근로능력자에 대한 자활지원방안」, 『복지동향』 18.
- 이장원(2001), 『근로취약계층의 노동연계복지 발전방안』, 한국노동연구원.
- 조재희(2001), 「민주주의 발전과정에서 한국의 사회복지정책」, 사회정책 포럼 발표 자료집.
- 한국노동연구원 (1998), 『고실업시대의 실업대책』.
- 황덕순 (200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정비 방안」, 황덕순 편, 『생산적 복지를 위한 노동정책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Brauner, S. and P. Loprest(1999), *Where are They Now? What States' Studies of People Who Left Welfare Tell Us*. Urban Institute New Federalism Policy Brief A-32. Washington, DC.
- Cancian, M. Haveman, R., Meyer, D. R. and B. Wolf (2000), *Before and After TANF: The Economic Well-Being of Women Leaving Welfare*, Institute for Research on poverty, Special Report, No. 77.
- Cancian, M., Haveman, R., Kaplan, T. and Barbara Wolfe(1999), *Post-Exit Earnings and Benefit Receipt among Those Who Left AFDC in Wisconsin*, Institute for Research on Poverty, Special Report No. 75.
- Cancian, M., Haveman, R., Kaplan, T., Meyer, D. R., and Barbara Wolfe(1999), "Work, Earnings, and Well-being after Welfare: What do we know?", *Focus* Vol. 20, No. 2.

- Cancian, M., Kaplan, T. and D. R. Meyer(1999), *Outcomes for Low-Income Families under the Wisconsin AFDC Program: Understanding the Baseline So That We can Estimate the Effects of Welfare Reform*, Institute for Research on Poverty, Special Report No. 76.
- GAO(1999), *Welfare Reform: States' Implementation Progress and Information on Former Recipients*, United States General Accounting Office Testimony before the Subcommittee on Human Resources, Committee on Ways and Means, House of Representatives, GAO/T-HEHS-99-116, United States General Accounting Office, Washington.
- Greenberg, D., Meyer, R., Michalopoulos, C. and M. Wiseman (2001), *Explaining Variation in the Effects for Welfare-to-Work Programs*, Institute for Research on Poverty, Discussion Paper No. 1225-01.
- Holcomb, P. A., L. Pavetti, C. Ratcliffe, and S. Riedinger(1998), *Building an Employment Focused Welfare System: Work First and Other Work-Oriented Strategies in Five States*, The Urban Institute, Washington, D.C.
- Ke-young Chu and Sanjeev Gupta (1998), *Social Safety Nets*, IMF.
- Lerman, Robert I., Pamela Loprest, and Caroline Ratcliffe(1999), *How Well can Urban Labor Markets Absorb Welfare Recipients*, Urban Institute New Federalism Policy Brief A-33. Washington, DC.
- OECD(1996a), *The OECD Jobs Strategy: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Active Labor Market Policies*, OECD Publication, Paris.
- _____(1996b), "Social Expenditure Statistics of OECD Member Countries", *Labor Market and Social Policy Occasional*

Papers No. 17.

- _____(1999), *The Local Dimension of Welfare-to-Work: An International Survey*, Paris: OECD Publications Service.
- Parrott, S.(1998), *Welfare Recipients Who Find Jobs: What Do We Know About Their Employment and Earnings?*, Center on Budget and Policy Priorities.
- Pindus, N., Robin Koralek, and Karin Martinson(2000), *Coordination and Integration of Welfare and Workforce Development Systems*,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Washington, DC.
- Rein, M. and L. Rainwater(1987), "From Welfare state to Welfare society", Rein, M. and L. Rainwater(eds.), *Stagnation Renewal in Social Policy: The Rise and Fall of Policy Regime*. Armonk N.Y.: M.E. Sharpe.
- Rose, N. E.(1995), *Workfare or Fair Work: Women, Welfare and Government Work Programs*, Rutgers Univ. Press, New Brunswick, New Jersey.
- Schmid, G.(1996), "Process Evaluation: Policy Formation and Implementation", in Gunther Schmid (eds.), *International Handbook of Labor Market Policy and Evaluation*, Cheltenham and Brookfield: Edward Elgar.
- Stoesz, David and David Saunders(1999), "Welfare Capitalism: A New Approach to Poverty Policy?", *Social Service Review*.
- Walker, R., Wiseman, M. and Institute for Research on Poverty (2001), *Britain's New Deal and the Next Round of U.S. Welfare Reform*, Institute for Research on Poverty, Discussion paper No. 1223-01.
- Workfare Watch Project(1997), *From the Steering Committee: Workfare and the Non-for-Profit Sector*, Community Social

Planning Council of Toronto.

www.newdeal.gov.uk

www.welfaretowork.org

www.welfarewatch.toronto.on.ca

자활사업 참여자 설문조사

1. 한국노동연구원은 근로자의 복지향상과 합리적인 노동정책의 수립을 위해 설립된 정부출연 정책연구기관으로 노동시장, 노사관계 등 노동관련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2. 2000년 10월 1일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 조건부 수급자 중 취업대상자의 생활실태 및 자활사업의 참여실태를 조사하여 자활사업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3. 조사결과는 순수하게 연구목적을 위해서 활용되며, 통계법에 의해 그 비밀이 완전히 보장됩니다.
4. 바쁘신 중이라도 자활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해당사항에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1년 11월

☐ 조사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시장평가센터

☐ 실사기관 : (주)코리아데이터네트워크

담당 연구원 : 류금숙 (02-548-5141)

주 소	① 대도시(특별·광역시)			
	② 도농복합도시(중소도시)			
	_____시·도 _____구·시·군 ③ 농어촌지역(군단위 지역)			
대 상 자		면접원	전화번호	
성 명		성 명		

1.문 귀하의 가족은 현재 생계를 주로 어떻게 유지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 응답)

- ① 본인의 경제활동을 통한 수입으로
- ② 타가구원의 경제활동(직업활동)을 통한 수입으로
- ③ 생계급여 등 정부보조금으로
- ④ 친지 또는 주변의 도움으로
- ⑤ 과거에 저축한 돈으로
- ⑥ 대출 또는 빚을 얻어서
- ⑦ 기 타()

① 생계비 지원 ② 주거비 지원
③ 자녀교육비 지원 ④ 의료비 지원
⑤ 기타 (구체적으로 :)

비 목	소 득
월평균 총소득	(월 만원)
근로소득	본인 (월_____만원), 기타 가구원 (월_____만원)
정부의 현금급여(생계 및 주거급여)	(월 만원)
종교기관, 시민단체 등의 민간단체 지원	(월 만원)
가족·친지보조	(월 만원)

4. 문 읍·면·동사무소에서 귀하의 재산이나 소득상태를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① 매우 잘 알고 있다. | ② 비교적 잘 알고 있는 편이다. |
| ③ 그저 그런 편이다. | ④ 잘 모르는 것 같다. |
| ⑤ 전혀 모르는 것 같다. | |

5. 문 읍·면·동사무소 담당자가 책정한 근로소득 및 재산소득이 귀택의 실제소득과 비교하여 어떻습니까?

- | | |
|------------|-----------|
| ① 지나치게 많음. | ② 약간 많음. |
| ③ 비슷함. | ④ 약간 적음. |
| ⑤ 지나치게 적음. | ⑥ 잘 모르겠음. |

6. 문 현재 귀하의 가구에 부채가 있습니까?

- | | |
|------------------|----------------|
| ① 있다. (→ 문 6-1로) | ② 없다. (→ 문 7로) |
|------------------|----------------|

문6-1. 부채액은 얼마나 됩니까? (만원)

문6-2. 부채의 주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만 고르세요)

- | | | |
|-----------------|---------|-------|
| ① 교육비(학자금 마련) | ② 의료비 | ③ 생활비 |
| ④ 주택자금 마련 | ⑤ 자동차구입 | |
| ⑥ 자동차 이외 내구재 구입 | ⑦ 영농자금 | |
| ⑧ 사업자금 마련 | ⑨ 관혼상제 | |
| ⑩ 세금채납 | ⑪ 기타 | |

B. 귀하의 과거 경제활동 및 구직활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7.문 최근 2년 이내에 1개월 이상 소득을 목적으로 일한 적이 있습니까? (공공근로 포함)

- ① 예 → 문8번 문항으로
② 아니요 → 문9번 문항으로

8.문 실직하시기 바로 전에 다니시던 사업장의 종류는 무엇이었습니까?
(면접원이 산업, 직업 분류표를 보고 직접 작성) (※ 이직희망자의 경우는 현재 직장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의 업종	산업분류 (중분류)		하시던 일의 종류	직업분류 (소분류)		
첨부 #1, 11쪽 참조			첨부 #2, 12쪽 참조			

※ 자활사업 참여 이전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셨던 분은 문9번으로 가십시오.

문8-1. 실직하시기 바로 전에 다니시던 일자리(직장)의 재직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년 ()월 ~ ()년 ()월 ;
총 ()년 ()개월

문8-2. 다니시던 일자리(직장)의 종업원수는? (※ 이직희망자의 경우는 현재직장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5명 이하 ② 6~10명 이하 ③ 11~30명 이하
④ 31~100명 이하 ⑤ 101~300명 미만 ⑥ 300명 이상

- 상용직 : 본인이 원할 경우 계속 일하는 것이 가능한 일반적인 정규직 근로자
- 임시직 :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일하는 계약직, 축박, 아르바이트, 파견 근로 등이거나 특정한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고용되어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 매일매일의 필요에 의하거나 1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해 고용되어 근로하는 자
- 기타 일자리 : 집에서 일거리를 받아다가 도급형식으로 일하는 경우
- 무급가족종사자 : 일정한 보수 없이 자기 가족의 일원이 경영하는 사업체나 농장을 돕는 사람으로 1주일에 18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

- 문8-4. 월평균 근로일수는? 월평균 근로일수 ()일

문8-6. 귀하께서 일자리(직장)를 그만두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이직희망자의 경우는 현재직장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개인·가족적 이유 ② 건강상의 이유
③ 정년퇴직 및 연로 ④ 임금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불만족
⑤ 열악한 작업환경 ⑥ 직장의 휴·폐업
⑦ 명예 및 조기퇴직, 정리해고
⑧ 임시적 또는 계절적 일의 완료

- ① 노동부(고용안정센터, 인력은행) ② 지자체(취업정보센터)

③ 구인광고 또는 인터넷 ④ 학교취업 상담실

⑤ 민간직업소개소 ⑥ 인력채용박람회

⑦ 연고채용 ⑧ 기타()

문11-6. 희망하는 임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새로운 일자리(직장)에서 제시하는 월평균 임금[기본급+제수당+상여금]÷12이 최소한 얼마 이상이어야 취업하시겠습니까?

월평균 ()만원

문11-7. 귀하가 희망하는 직장의 업종과 직종은 무엇입니까?(면접원이 첨부된 산업, 직업분류표를 보고 직접 작성)

산업분류(중분류)		직업분류(소분류)		
첨부 #1, 11쪽 참조		첨부 #2, 12쪽 참조		

※ 문11-7번 문항을 응답한 분은 문13번으로 이동하십시오

12.문 현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시는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나이가 많아서 ② 일이 힘들어서
 ③ 가사 및 육아에 지장을 받아서 ④ 기술이 없어서
 ⑤ 건강이 좋지 않아서 ⑥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어서
 ⑦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C.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자활사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13.문 다음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에 V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새로운 제도인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과거의 생활보호제도보다 개선되었다.	☐	☐	☐	☐	☐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수준은 충분한 편이다.	☐	☐	☐	☐	☐
3) 나는 조건부 수급자 중 취업대상자로 선정된 것에 만족한다.	☐	☐	☐	☐	☐
4) 사회복지사의 수급자선정조사는 공정하고 정확하였다.	☐	☐	☐	☐	☐
5) 나는 자활사업 참여기간 동안 반드시 취업할 것이다.	☐	☐	☐	☐	☐
6) 고용안정센터 상담원과의 상담내용에 만족한다.	☐	☐	☐	☐	☐
7) 나는 고용안정센터 직원에게서 자활사업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었다.	☐	☐	☐	☐	☐
8) 나는 조건부과 없이 생계급여를 받고 싶다.	☐	☐	☐	☐	☐
9) 나는 자활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겠다.	☐	☐	☐	☐	☐

14.문 귀하는 언제부터 자활사업에 참여하셨습니까?

()년 ()월 ~ 현재까지

15.문 귀하는 자활사업 참여중 취업을 해서 자활사업을 종료하신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6. 문 귀하는 자활사업 중 어떠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까? (여러 사업에 참여하셨을 경우, 모두 적어 주십시오)

사 업	참 여 기 간		
1) 직업적응 훈련	20()년 ()월~20()년 ()월	총()개월	
2) 취업알선	20()년 ()월~20()년 ()월	총()개월	
3) 직업훈련	20()년 ()월~20()년 ()월	총()개월	
4) 공공근로사업	20()년 ()월~20()년 ()월	총()개월	
5) 자활인턴	20()년 ()월~20()년 ()월	총()개월	
6) 창업지원	20()년 ()월~20()년 ()월	총()개월	
7) 기타()	20()년 ()월~20()년 ()월	총()개월	

직업적응훈련 : 총 4~7주간의 프로그램으로서, 근로의욕증진프로그램(성취프로그램) 등이 1~2주간 시행되고, 정보화기초프로그램이 2~4주, 그리고 직업지도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진다. 다른 프로그램으로 가기 전 단계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복합적 과정의 프로그램이다.

취업알선 : 고용안정센터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구직활동을 지원하여 수급자의 취업을 촉진하는 것이다. 청소년, 신규졸업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지도와 직장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는 일일 취업센터를 통해 건설일용직 및 파트타임 자활대상자에 대한 자활사업 시행방안을 마련한다.

직업훈련 : 정보통신이나 기술제조업 등, 훈련을 실시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계층의 자립을 지원한다. 직업훈련시설이나 장애인 직업재활실시기관 등에서 실시한다. 예로는 1인 2자격 갖기 사업이 있고, 수강장려금, 근로학자금 대부를 통해 참여자의 자기계발 욕구를 촉진한다.

창업지원 : 조건부 수급자 중에 창업을 희망하는 자로서 창업능력과 성공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창업자금을 융자해 주는 것이다. 가구당 5,000만원 한도의 전세점포를 지원하고 대상자는 전세금에 대한 연 7.5%의 이자를 납부하도록 한다.

자활인턴사업 : 근로능력 및 경력이 취약한 자활대상자에게 현장연수기회를 제공하여 취업능력을 배양케 하는 것이다. 이는 정규채용에 인센티브를 주어 조기취업을 촉진시키기도 한다. 고용보험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자활대상자를 인턴으로 채용하는 기업에 1인당 월 50만원씩 3개월간 지원한다.

17.문 현재 참여하고 계신 자활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 ① 직업훈련 ② 공공근로(구직세일즈 포함) ③ 취업알선
④ 창업지원 ⑤ 자활인턴 ⑥ 직업적응 훈련

18.문 현재 참여하고 있는 자활사업에 만족하십니까?

- | | | | | |
|--------------|--------------|------|--------------|-----------|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은편이다 | 보통이다 | 대체로
그런편이다 | 매우
그렇다 |
| ① | ② | ③ | ④ | ⑤ |

※ ①, ②를 답하셨을 경우 → 문18-1번 문항으로

③, ④, ⑤를 답하셨을 경우 → 문 19번 문항으로

문18-1. 위에서 ①, ②로 답한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지급되는 생계비(급여)로는 생활이 곤란하여서
② 부과된 자활프로그램 내용이 적성과 능력에 맞지 않아서
③ 부과된 자활프로그램이 취업 혹은 창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④ 나의 의사와 관계 없이 강제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이 불만스러
워서
⑤기타 (_____)

19.문 본인이 참여를 희망했던 자활사업은 무엇이었습니까?

- ① 직업훈련 ② 공공근로 ③ 취업알선 ④ 창업지원
⑤ 자활인턴 ⑥ 직업적응훈련

20.문 귀하가 자활을 하는 데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
하나만 골라 주십시오)

- ① 자신에게 적합한 자활프로그램의 제공(취업알선, 직업훈련, 공공
근로, 창업지원 등)
② 자신의 자활하려는 정신력, 의지력(자신감) 배양

- ③ 자활지원서비스(의료, 보육시설, 간병인 등) 강화
- ④ 자신(본인)의 능력(기능, 학력 등) 향상
- ⑤ 특별히 필요 없다.
- ⑥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21.문 귀하의 자활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서비스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만 골라 주십시오)

- ① 의료서비스 ② 보육시설 ③ 방과후 교실
- ④ 재활시설 ⑤ 무료간병인
- ⑥ 기 타(구체적으로 _____)

22.문 현재 참여중인 사업의 종료 이후 어떤 자활사업으로 연결되기를 희망하십니까?

- ① 직업훈련 ② 공공근로 ③ 취업알선
- ④ 창업지원 ⑤ 자활인턴
- ⑥ 더 이상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문22-1번 문항으로)

문22-1. 자활사업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지급되는 생계비(급여)로는 생활이 곤란하여서
- ② 부과된 자활프로그램 내용이 적성과 능력에 맞지 않아서
- ③ 부과된 자활프로그램이 취업 혹은 창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 ④ 나의 의사와 관계 없이 강제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이 불만스러워서
- ⑤ 기타 (_____)

문26-1. 불만족스러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자신에게 적합한 훈련프로그램이 없어서
- ② 취업과 창업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
- ③ 교육내용이 부실해서
- ④ 기타(구체적으로)

27.문 현재 받고 있는 자활직업훈련의 훈련기간은 몇 개월 프로그램입니까? (_____개월)

28.문 직업훈련이 취업에 도움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
| 전혀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은편이다 | 보통이다 | 대체로
그런편이다 | 매우
그렇다 |
| [1] | [2] | [3] | [4] | [5] |

※ 문28번 문항을 응답한 분은 문30번으로 이동하십시오

29.문 향후 직업훈련프로그램에 참여해 볼 의사가 있으십니까?

- ① 예 → 문29-1번 문항으로
- ② 아니오 → 문29-3번 문항으로

문29-1. 직업훈련을 받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다른 직업으로 바꾸고 싶어서
- ② 구직에 필요하고 도움이 될 것 같아서
- ③ 지급되는 수당 혹은 교통비 때문에
- ④ 무료이기 때문에 부담이 적어서
- ⑤ 원래 배우고 싶은 훈련과정이어서
- ⑥ 기타(_____)

문29-2. 어떤 분야의 직업훈련을 희망합니까?

순위	희망하는 직업훈련 분야	직업훈련 코드 분류(중분류)		
1위				

※ 문30번으로 이동하십시오.

문29-3. 훈련을 받지 않으려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훈련이 불필요해서
- ② 자격요건 및 신청절차가 까다로워서
- ③ 자신에게 적합한 훈련프로그램이 없어서
- ④ 취업과 창업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 ⑤ 훈련기관이 멀어서
- ⑥ 육아 또는 가사부담 때문에
- ⑦ 훈련기간중 생계곤란 때문에
- ⑧ 훈련시간이 맞지 않아서
- ⑨ 교육내용이 부실해서
- ⑩ 기타(_____)

30.문 자활사업참여 중 직업안정기관(노동사무소, 고용안정센터, 지자체의 취업알선센터, 인력은행)의 취업알선서비스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31.문 자활업무 수행에 있어 행정기관간 업무협조가 원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보통이다 | 대체로
그런편이다 | 매우
그렇다 |
| ① | ② | ③ | ④ | ⑤ |

- ① 취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직업훈련프로그램의 확대
- ② 다양한 자활프로그램의 개발 및 참여자 특성에 따른 프로그램 제공
- ③ 생계급여 등 각종 급여의 확대
- ④ 구직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보다 많은 취업정보의 소개
- ⑤ 수급자 선정 및 정부지원의 형평성 강화
- ⑥ 자활지원서비스의 확대
- ⑦ 자활사업 상담원의 확충 및 심층 상담
- ⑧ 모르겠음.
- ⑨ 기타()

문34. 현재 직업적응훈련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참여중인 경우 포함)

- ① 예 ② 아니오 → 인구통계질문으로 가시오

직업적응훈련 : 총 4~7주간의 프로그램으로서, 근로의욕증진프로그램(성취프로그램) 등이 1~2주간 시행되고, 정보화기초프로그램이 2~4주, 그리고 직업지도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진다. 다른 프로그램으로 가기 전 단계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복합적 과정의 프로그램이다.

문35. 귀하께서 참여하셨던(혹은 참여하고 있는) 직업적응훈련에 만족하십니까?

- | | | | | |
|--------|--------|------|--------|-----|
| 전혀 그렇지 | 그렇지 | 보통이다 | 대체로 | 매우 |
| 않다 | 않은 편이다 | | 그런 편이다 | 그렇다 |
| ① | ② | ③ | ④ | ⑤ |

※ ①, ②를 답하셨을 경우 → 문35-1번 문항으로

③, ④, ⑤를 답하셨을 경우 → 문36번 문항으로

문35-1. 위에서 ①, ②로 답한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자신에게 적합한 훈련프로그램이 없어서
- ② 훈련이수 후 취업과 창업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 ③ 교육내 용이 부실해서
- ④ 기타(_____)

문36. 직업적응훈련이 취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은편이다 | 보통이다 | 대체로
그런편이다 | 매우
그렇다 |
| [1] | [2] | [3] | [4] | [5] |

E. 귀하의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성 별	① 남 ② 여
2. 연 령	(만 세)
3. 학 력	① 무학 ② 초등학교 ③ 중졸 ④ 고졸 ⑤ 전문대졸 ⑥ 대(재)졸 ⑦ 대학원(재)졸
4. 귀하의 주거형태는 어떤 것입니까?	① 자가 ② 전세 ③ 월세(삭월세) ④ 영구임대 ⑤ 무료임대 ⑥ 기타
5. 혼인상태	① 기혼 ② 미혼 ③ 사별·이혼 ④ 기타()
6. 본인이 세대주입니까?	① 예 ② 아니오
7. 본인을 포함하여 귀하의 가족은 전부 몇 명입니까?	()명
8. 가구 내에서 직업(취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본인 포함)?	()명
9. 가구 내에서 어린 자녀가 있을 경우, 가장 어린 자녀의 연령은?	()세
10. 귀하 가구에서 학교 (고등학교 이하)에 다니는 자녀의 수는 몇 명입니까?	()명
11. 귀하가 소속되어 있는 고용안정센터는 어디입니까?	() 고용안정센터
12. 현재 귀하 가구의 한 달 생활비는 얼마입니까?	월 () 만원

자활사업 종료자 설문조사

1. 한국노동연구원은 근로자의 복지향상과 합리적인 노동정책의 수립을 위해 설립된 정부출연 정책연구기관으로 노동시장, 노사관계 등 노동관련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2. 2000년 10월 1일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 자활사업을 이미 종료하신 분들의 생활실태 및 자활사업에 대한 견해를 조사하여 자활사업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3. 조사결과는 순수하게 연구목적을 위해서 활용되며, 통계법에 의해 그 비밀이 완전히 보장됩니다.
4. 바쁘신 중이라도 자활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해당사항에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1년 11월

☐ 조사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시장평가센터

☐ 실사기관 : (주)코리아데이타네트워크

담당 연구원 : 류금숙 (02-548-5141)

주 소	① 대도시(특별·광역시) ② 도농복합도시(중소도시) ③ 농어촌지역(군단위 지역)		
	_____시·도 _____구·시·군		
대상자 성 명		면접원 성 명	전화 번호

문1. 귀하의 가족은 현재 생계를 주로 어떻게 유지하고 있습니까?(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 응답)

- ① 본인의 경제활동을 통한 수입으로
- ② 타가구원의 경제활동(직업활동)을 통한 수입으로
- ③ 생계급여 등 정부보조금으로
- ④ 친지 또는 주변의 도움으로
- ⑤ 과거에 저축한 돈으로
- ⑥ 대출 또는 빚을 얻어서
- ⑦ 기타()

비	목	소	득	
월평균 총소득		(월	만원)	
근로소득		본 인 (월	만원), 기타 가구원 (월	만원)
정부의 현금급여(생계 및 주거급여)		(월	만원)	
종교기관, 시민단체 등의 민간단체 지원		(월	만원)	
가족·친지보조		(월	만원)	

문3. 현재 귀하 가구의 월평균 소비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약(월 만원)

문3-1. 현재 귀하가구의 소비지출에 있어 가장 많이 차지하는 항목은? (한 가지만 고르세요)

- | | |
|---------------|------------------|
| ① 교육비(학자금 마련) | ② 의료비 |
| ③ 생활비 | ④ 주택자금 마련 |
| ⑤ 자동차구입 | ⑥ 자동차 이외 내구재 구입 |
| ⑦ 영농자금 | ⑧사업자금 마련 |
| ⑨ 관혼상제 | ⑩ 세금체납 ⑪ 기타 |

문4. 자활사업의 종료 이후 귀하의 근로소득은 어떻게 변화하였습니까?

- | | | | | |
|-------------|--------------|-----------------|------------|-------------|
| 많이
증가하였다 | 약간
증가하였다. | 별로 변화
하지 않았다 | 약간
감소했다 | 많이
감소하였다 |
| ① | ② | ③ | ④ | ⑤ |

문5. 현재 부채가 있습니까?

- ① 있다. (☞ 문5-1로) ② 없다. (☞ 문6로)

문5-1. 부채액은 얼마나 됩니까? (만원)

문5-2. 자활사업 참여 당시와 비교했을 때, 부채의 규모는 어떻게 변화하였습니까?

- | | | | | |
|--------------|----------|-------|----------|---------------|
| 지나치게
많아졌다 | 약간 많아졌다. | 비슷하다. | 약간 적어졌다. | 아주 많이
적어졌다 |
| ① | ② | ③ | ④ | ⑤ |

문5-3. 위 문항에서 ① 혹은 ②로 응답하셨을 경우, 부채증가의 주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만 고르세요)

- | | | |
|---------------|----------|-------|
| ① 교육비(학자금 마련) | ② 의료비 | ③ 생활비 |
| ④ 주택자금 마련 | ⑤ 자동차 구입 | |

- ⑥ 자동차 이외 내구재 구입 ⑦ 영농자금
- ⑧ 사업자금 마련 ⑨ 관혼상제
- ⑩ 세금채납 ⑪ 기타

문6. 귀하께서는 (운전면허를 제외한) 기술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계십니까?

- ① 없다. ② 자활사업 참여 이전에 취득하였다.
- ③ 자활사업 참여 당시 취득하였다.
- ④ 자활사업 종료 이후 취득하였다.

문7. 귀하의 가구는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이십니까?

- ① 내가 자활사업을 종료하면서, 동시에 더 이상 수급권가구가 아니게 되었다.(☞문7-1로)
- ② 나는 자활사업을 종료했지만, 여전히 우리가구는 기초법상의 수급권가구이다.(☞문8로)

문7-1. 귀하 가구가 더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가구가 아니게 된(즉, 정부 지원이 중단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소득평가액 기준, 즉 나의 취업으로 인해 소득이 증가하여
- ② 소득평가액 기준, 하지만 나 이외의 다른 가구원의 취업으로 인해 소득이 증가하여
- ③ 재산가액 기준(즉, 재산이 증가하여)
- ④ 부양의무자 기준
- ⑤ 기타(_____)

B. 귀하의 자활사업 참여 이전의 경제상황 및 직장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8. 자활사업 참여 이전 귀하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어떠하였습니까?
(해당사항에 대해, 모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 목	소 득
월평균 총소득	(월 만원)
귀하 혹은 기타 가구원의 근로소득	본인 (월 만원), 기타 가구원 (월 만원)
생활보호급여 등을 포함한 정부의 지원	(월 만원)
종교기관, 시민단체 등의 민간단체 지원	(월 만원)
가족·친지보조	(월 만원)
기타 (내용:)	(월 만원)

문9. 자활사업 참여 이전 1년 동안 1개월 이상 소득을 목적으로 일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문10번 문항으로
② 아니오 ➡ C(문11번 문항, 5쪽)으로

문10 실직하시기 바로 전에 다니시던 사업장의 종류는 무엇이였습니까? (면접원이 산업, 직업 분류표를 보고 직접 작성)

사업장의 업종	산업분류 (중분류)	하시던 일의 종류	직업분류 (소분류)
첨부 #1, 19쪽 참조		첨부 #2, 20쪽 참조	

문10-6. 귀하께서 일자리(직장)를 그만두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개인·가족적 이유 ② 질병 또는 경증장애가 있어서
③ 정년퇴직 및 연로 ④ 임금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불만족
⑤ 열악한 작업환경 ⑥ 직장의 휴·폐업
⑦ 명예 및 조기퇴직, 정리해고
⑧ 임시적 또는 계절적 일의 완료
⑨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경영 악화 ⑩ 장래성이 없어서
⑪ 육아 및 자녀교육 때문에
⑫ 기타 ()

C. 귀하의 자활사업 참여내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11. 귀하는 자활사업 중 어떠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까? (여러 사업에 참여하셨을 경우, 모두 적어 주십시오.)

사 업	참 여 기 간		
1) 직업적응훈련	20()년 ()월~20()년 ()월	총()개월	
2) 취업알선	20()년 ()월~20()년 ()월	총()개월	
3) 직업훈련	20()년 ()월~20()년 ()월	총()개월	
4) 공공근로사업	20()년 ()월~20()년 ()월	총()개월	
5) 자활인턴	20()년 ()월~20()년 ()월	총()개월	
6) 창업지원	20()년 ()월~20()년 ()월	총()개월	
7) 기타()	20()년 ()월~20()년 ()월	총()개월	

직업적응훈련 : 총 4~7주간의 프로그램으로서, 근로의욕증진프로그램(성취프로그램) 등이 1~2주간 시행되고, 정보화기초프로그램이 2~4주, 그리고 직업지도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진다. 다른 프로그램으로 가기 전 단계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복합적 과정의 프로그램이다.

취업알선 : 고용안정센터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구직활동을 지원하여 수급자의 취업을 촉진하는 것이다. 청소년, 신규졸업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지도와 직장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는 일일 취업센터를 통해 건설일용직 및 파트타임 자활대상자에 대한 자활사업 시행방안을 마련한다.

직업훈련 : 정보통신이나 기술제조업 등, 훈련을 실시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 계층의 자립을 지원한다. 직업훈련시설이나 장애인 직업재활실시기관 등에서 실시한다. 예로는 1인 2자격 갖기 사업이 있고, 수강장려금, 근로학자금 대부분을 통해 참여자의 자기계발 욕구를 촉진한다.

창업지원 : 조건부 수급자 중에 창업을 희망하는 자로서 창업능력과 성공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창업자금을 융자해 주는 것이다. 가구당 5,000만원 한도의 전세점포를 지원하고 대상자는 전세금에 대한 연 7.5%의 이자를 납부하도록 한다.

자활인턴사업 : 근로능력 및 경력이 취약한 자활대상자에게 현장연수기회를 제공하여 취업능력을 배양케 하는 것이다. 이는 정규채용에 인센티브를 주어 조기 취업을 촉진시키기도 한다. 고용보험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자활대상자를 인턴으로 채용하는 기업에 1인당 월 50만원씩 3개월간 지원한다.

문12. 귀하께서 마지막으로 참여하신 자활사업프로그램은 무엇이며, 그 시점은 언제입니까?

마지막 참여사업명	① 직업훈련	② 공공근로(구직세일즈 포함)	③ 취업알선
	④ 창업지원	⑤ 자활인턴	⑥ 직업적응훈련
종료시점	200()년 ()월까지		

문13. 귀하는 이전에 참여하셨던 자활사업에 만족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문13-1. 위에서 ①, ②로 답한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지급되는 생계비(급여)로는 생활이 곤란하여서
- ② 부과된 자활프로그램 내용이 적성과 능력에 맞지 않아서
- ③ 부과된 자활프로그램이 취업 혹은 창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 ④ 나의 의사와 관계 없이 강제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이 불만스러워서
- ⑤ 기타(_____)

문14. 다음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에 V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새로운 제도인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과거의 생활보호제도보다 개선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수준은 충분한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조건부 수급자 중 취업대상자로 선정된 것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사회복지사의 수급자 선정조사는 공정하고 정확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5) 자활사업 참여 당시, 반드시 취업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①	②	③	④	⑤
6) 고용안정센터 상담원과의 상담내용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고용안정센터 직원에게서 자활사업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었다.	①	②	③	④	⑤
8) 이전에 참여하였던 자활사업은 기능습득에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9) 자활사업의 참여로 보다 많은 근로의욕을 갖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10) 이전에 참여하였던 자활사업은 생계유지에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문15.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동안 귀하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어느 정도
였습니까?

비 목	소 득
월평균 총소득	(월 만원)
근로소득	본인 (월 만원), 기타 가구원 (월 만원)
정부의 현금급여(생계 및 주거급여)	(월 만원)
종교기관, 시민단체 등의 민간단체 지원	(월 만원)
가족·친지보조	(월 만원)

문16.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동안 귀하 가구의 월평균 소비규모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약 (월 만원)

문16-1. 자활사업 참여 당시 귀하 가구의 소비지출에 있어 가장 많이
차지했던 항목은?

- | | |
|---------------|------------------------------|
| ① 교육비(학자금 마련) | ② 의료비 |
| ③ 생활비 | ④ 주택자금 마련 |
| ⑤ 자동차 구입 | ⑥ 자동차 이외 내구재 구입 |
| ⑦ 영농자금 | ⑧ 사업자금 마련 |
| ⑨ 관혼상제 | ⑩ 세금체납 ⑪ 기타 |

문17. 귀하께서 자활사업 종료 이후, 사회복지사 등의 상담원과 상담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전화통화 포함)

- ① 예(약_____회) ② 아니오

문18. 자활사업 참여 이후 일자리(직장)를 구하기 위해 몇 군데나 알아보았습니까? (입사원서를 제출, 방문구직활동, 면접 등을 본 횟수를 답하여 주십시오)

구직횟수 _____회 (없다면 '0'회)

문19. 현재 취업이 된 상태입니까?

- ① 예 ☞ D(문20번 문항)로
- ② 아니오 ☞ E(문36번 문항, 11쪽)로

D. (현재 취업이 된 경우) 귀하의 현재 경제활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20. 자활사업 종료시 귀하께서는 취업된 상황이었습니까?

- ① 예 ☞ 문21번 문항으로
- ② 아니오 ☞ 문20-1번 문항으로

문20-1. 자활사업 종료 당시 취업중이 아니셨다면, 종료 이후 얼마 만에 첫 직장을 잡으셨습니까?

()개월 혹은 ()일

문21. 자활사업 종료 이후부터 현재의 직장을 얻기까지 몇 군데의 직장을 다니셨습니까? (현재 직장 포함)

()개소

1) 국민연금	① 가입되어 있다. ② 가입되어 있지 않다. ③ 잘 모르겠다.
2) 특수직역연금 (공무원, 군인, 교원)	① 가입되어 있다. ② 가입되어 있지 않다. ③ 잘 모르겠다.
3) 직장의료보험 (국민건강보험)	① 가입되어 있다. ② 가입되어 있지 않다. ③ 잘 모르겠다.
4) 고용보험	① 가입되어 있다. ② 가입되어 있지 않다. ③ 잘 모르겠다.
5) 산재보험	① 가입되어 있다. ② 가입되어 있지 않다. ③ 잘 모르겠다.

문27. 현재 다니시는 일자리(직장)에서 아래의 항목들 중 귀하께서 혜택을 받는 것이 있습니까?

1) 퇴직금	① 혜택을 받는다. ② 혜택을 받지 않는다. ③ 잘 모르겠다.
2) 정기적인 보너스, 상여금	① 혜택을 받는다. ② 혜택을 받지 않는다. ③ 잘 모르겠다.
3) 부정기적인 보너스, 상여금	① 혜택을 받는다. ② 혜택을 받지 않는다. ③ 잘 모르겠다.
4) 유급휴가(연월차 및 휴가)	① 혜택을 받는다. ② 혜택을 받지 않는다. ③ 잘 모르겠다.
5) 무급휴가(연월차 및 휴가)	① 혜택을 받는다. ② 혜택을 받지 않는다. ③ 잘 모르겠다.
6) 유급병가	① 혜택을 받는다. ② 혜택을 받지 않는다. ③ 잘 모르겠다.
7) 유급 출산 휴가	① 혜택을 받는다. ② 혜택을 받지 않는다. ③ 잘 모르겠다.
8) 전세금이나 학자금 융자	① 혜택을 받는다. ② 혜택을 받지 않는다. ③ 잘 모르겠다.

문28. 현재 다니시는 직장에서의 월평균 근로일수는?

월평균 근로일수 ()일

문29. 귀하께서는 지난 한 주 동안 현재 직장에서 실제로 일한 주당 근로시간은?

실제 주당 근로시간 ()시간

문30. 현재 일자리(직장)의 월평균 임금은? [월평균 임금은 (기본급+제수당+상여금)÷12입니다]

월평균 ()만원

문31. 귀하께서 현재의 일자리(직장)를 구하신 경로는 어떻습니까?

- ① 자활사업내 취업알선(혹은 창업지원)프로그램을 통해
- ② 자활사업과 관계없지만, 지자체(취업정보센터) 혹은 노동부(고용안정센터, 인력은행)를 통해
- ③ 구인광고 또는 인터넷
- ④ 학교취업 상담실
- ⑤ 민간직업소개소
- ⑥ 인력채용박람회

⑦ 연고채용

⑧ 기타()

문32. 보수나 근로조건을 고려할 때, 현재의 직장이 자활사업에 참여하
셨을 때 희망하셨던 직장보다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 ① 희망했던 조건보다 좋은 직장이다.
- ② 예상했던 수준의 직장이다.
- ③ 희망했던 조건보다 못한 직장이다.

문33. 귀하의 자활사업 참여 경험이 현재의 직장을 찾는 데 얼마나 도
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도움이 되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대체로 도움이 된 편이다	큰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 ①, ②를 답하셨을 경우 → 문33-1번 문항으로

③, ④, ⑤를 답하셨을 경우 → 문34번 문항으로

문33-1. 자활사업의 참여 경험이 귀하의 구직에 도움이 되지 않았
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 ①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동안 나의 기능은 전혀 증대되지 않았다.
- ② 취업의 기회를 많이 갖지 못했다.
- ③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동안 상담원과 많은 상담을 갖지 못했다.
- ④ 나의 적성 및 희망에 맞지 않는 자활프로그램이 제공되었다.
- ⑤ 기타()

34.문 자활사업내 직업훈련에 참여하신 적이 있습니까?

① 예 ☞ 문34-1번 문항으로

② 아니오 ☞ 문35번 문항으로

문34-1. 귀하께서 받으셨던 훈련직종은 무엇입니까? (면접원이 첨부된 직업훈련 코드표를 보고 기입; 중분류) (첨부 #3, 23쪽 참조)

직업훈련 코드: □□□, 예시직종()

문34-2. 귀하께서 자활사업내 직업훈련을 받으셨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다른 직업으로 바꾸고 싶어서
- ② 구직에 필요하고 도움이 될 것 같아서
- ③ 지급되는 수당 혹은 교통비 때문에
- ④ 무료이기 때문에 부담이 적어서
- ⑤ 원래 배우고 싶은 훈련과정이어서
- ⑥ 임의로 배정되었기 때문에
- ⑦ 기타()

문34-3. 현재의 직장에서의 직무와 직업훈련의 교육내용은 얼마나 유사합니까?

- | | | | | |
|---------------|---------------|------|----------------|-------------|
| 전혀 관련이
없다. | 관련이
적은 편이다 | 보통이다 | 대체로 유사한
편이다 | 매우
유사하다. |
| [1] | [2] | [3] | [4] | [5] |

문34-4. 귀하께서 참여하셨던 직업훈련과정에 만족하십니까?

- | | | | | |
|--------------|---------------|------|---------------|-----------|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보통이다 | 대체로
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 |
| [1] | [2] | [3] | [4] | [5] |

※ ①, ② → 문34-5번 문항으로

③, ④, ⑤ → 문35번 문항으로

문34-5. 불만족스러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자신에게 적합한 훈련프로그램이 없어서
- ② 취업과 창업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
- ③ 교육내용이 부실해서
- ④ 기타(구체적으로 _____)

35.문 자활사업에 다시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예 ☞ 문 35-1번 문항으로
- ② 아니오 ☞ F(문43번 문항)로

문35-1. 귀하께서 직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자활사업에 참여하
시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 응답)

1순위 : () 2순위 : ()

- ① 현재 직장의 급여가 너무 낮기 때문에
- ② 현재 직장의 근로조건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 ③ 나의 적성 혹은 희망분야와는 전혀 다른 직장이기 때문에
- ④ 자활사업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취득하고 싶어서
- ⑤ 정부의 각종 지원(교육 및 의료 등)이 종료되어 생활비 지출이 너
무 늘었기 때문에
- ⑥ 기타(_____)

※ F(문43번 문항)로 이동하십시오.

문38-1. 만약 자활사업 종료 당시 취업중이 아니셨다면, 종료 이후 얼마 만에 첫 직장을 잡으셨습니까? (※ 자활사업 종료시, 취업중이셨던 분은 문38-2번 문항으로 가십시오.)

()개월

문38-2. 자활사업 종료 이후부터 가장 최근의 직장을 얻기까지 몇 군데의 직장을 다니셨습니까?

()

문38-3. 자활사업 종료 이후 현재까지 귀하의 총근로일수와 월평균 근로일수는 어떻습니까?

☞ “자활사업 종료 이후 ()개월 동안 일했으며, 한 달 평균 ()일 정도 일했다.”

※ 아래 문38-4번부터 문38-13번까지는 자활사업 종료 당시 혹은 그 직후 첫 직장을 기준으로 답해 주십시오.

문38-4. 귀하께서 다니시던 사업장의 종류는 무엇이었습니까? (면접원이 산업, 직업분류표를 보고 직접 작성)

사업장의 업종	산업분류 (중분류)		하시던 일의 종류	직업분류 (소분류)		
첨부 #1, 참조			첨부 #2 참조			

문38-5. 자활사업 종료직후 귀하께서 다니시던 일자리(직장)의 재직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년 ()월 ~ ()년 ()월

총 ()년 ()개월

문38-6. 자활사업 종료직후 귀하께서 다니시던 일자리(직장)의 종업원수는?

- ① 5명 이하 ② 6~10명 이하 ③ 11~30명 이하
④ 31~100명 이하 ⑤ 101~300명 미만 ⑥ 300명 이상

문38-7. 고용형태는 무엇이었습니까?

- ① 상용직 근로자 ② 임시직 근로자
③ 일용직 근로자 ④ 시간제 근로자
⑤ 무급가족종사자 ⑥ 고용주나 자영업자
⑦ 기타 일자리()

문38-8. 귀하께서 다니시던 일자리(직장)가 다음의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까?

1) 국민연금	① 가입되어 있다. ② 가입되어 있지 않다. ③ 잘 모르겠다.
2) 특수직역연금(공무원, 군인, 교원)	① 가입되어 있다. ② 가입되어 있지 않다. ③ 잘 모르겠다.
3) 직장의료보험 (국민건강보험)	① 가입되어 있다. ② 가입되어 있지 않다. ③ 잘 모르겠다.
4) 고용보험	① 가입되어 있다. ② 가입되어 있지 않다. ③ 잘 모르겠다.
5) 산재보험	① 가입되어 있다. ② 가입되어 있지 않다. ③ 잘 모르겠다.

문38-9. 귀하께서 다니시던 일자리(직장)에서 아래의 항목들 중 귀하께서 혜택을 받는 것이 있습니까?

1) 퇴직금	① 혜택을 받는다. ② 혜택을 받지 않는다. ③ 잘 모르겠다.
2) 정기적인 보너스, 상여금	① 혜택을 받는다. ② 혜택을 받지 않는다. ③ 잘 모르겠다.
3) 부정기적인 보너스, 상여금	① 혜택을 받는다. ② 혜택을 받지 않는다. ③ 잘 모르겠다.
4) 유급휴가(연월차 및 휴가)	① 혜택을 받는다. ② 혜택을 받지 않는다. ③ 잘 모르겠다.
5) 무급휴가(연월차 및 휴가)	① 혜택을 받는다. ② 혜택을 받지 않는다. ③ 잘 모르겠다.
6) 유급병가	① 혜택을 받는다. ② 혜택을 받지 않는다. ③ 잘 모르겠다.
7) 유급 출산휴가	① 혜택을 받는다. ② 혜택을 받지 않는다. ③ 잘 모르겠다.
8) 전세금이나 학자금 융자	① 혜택을 받는다. ② 혜택을 받지 않는다. ③ 잘 모르겠다.

문38-10. 귀하께서는 직장에 다니실 때 직장에서의 주당 근로시간은?
주당 근로시간 ()시간

문38-11. 귀하께서 취업을 하고 계셨을 당시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얼마입니까?
월평균 ()원

문38-12. 귀하께서 일자리(직장)를 구하신 경로는 어떻습니까?

- ① 자활사업내 취업알선(혹은 창업지원)프로그램을 통해
- ② 자활사업과 관계없지만, 지자체(취업정보센터) 혹은 노동부(고용안정센터, 인력은행)를 통해
- ③ 구인광고 또는 인터넷 ④ 학교취업 상담실
- ⑤ 민간직업소개소 ⑥ 인력채용박람회
- ⑦ 연고채용 ⑧ 기타 : _____

문38-13. 귀하께서 위의 일자리(직장)를 그만두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3개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 ① 개인·가족적 이유 ② 질병 또는 경증장애가 있어서
- ③ 정년퇴직 및 연로 ④ 임금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불만족
- ⑤ 열악한 작업환경 ⑥ 직장의 휴·폐업
- ⑦ 명예 및 조기퇴직, 정리해고
- ⑧ 임시적 또는 계절적 일의 완료
- ⑨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경영 악화
- ⑩ 장래성이 없어서
- ⑪ 육아 및 자녀교육 때문에
- ⑫ 기타 ()

39.문 자활사업내 직업훈련에 참여하신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문39-1번 문항으로
② 아니오 ☞ 문40번 문항으로

문39-1. 귀하께서 받으셨던 훈련직종은 무엇입니까? (면접원이 첨부된
직업훈련 코드표를 보고 기입; 중분류) (첨부 #3, 23쪽 참조)
직업훈련 코드: □□□□, 예시직종()

문39-2. 귀하께서 자활사업내 직업훈련을 받으셨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다른 직업으로 바꾸고 싶어서
② 구직에 필요하고 도움이 될 것 같아서
③ 지급되는 수당 혹은 교통비 때문에
④ 무료이기 때문에 부담이 적어서
⑤ 원래 배우고 싶은 훈련과정이었어서
⑥ 임의로 배정되었기 때문에
⑦ 기타()

문39-3. 귀하께서 자활사업 종료직후 다니시던 직장에서의 직무와 직
업훈련의 교육내용은 얼마나 유사합니까?

전혀 관련이 없다.	관련이 적은 편이다	보통이다	대체로 유사한 편이다	매우 유사하다.
①	②	③	④	⑤

문 39-4. 귀하께서 참여하셨던 직업훈련과정에 만족하십니까?

전혀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편이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런편이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 ①, ② → 문39-5번 문항으로
③, ④, ⑤ → 문40번 문항으로

문39-5. 불만족스러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자신에게 적합한 훈련프로그램이 없어서
- ② 훈련이수 후 취업과 창업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 ③ 교육내용이 부실해서
- ④ 기타(구체적으로 _____)

40.문 자활사업에 다시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현재 자활사업에 참여중이신 분은 문41번 문항으로 가십시오.)

- ① 예 ☐ 문41번 문항으로
- ② 아니오 ☐ 문40-1번 문항으로

문40-1. 다음 중 어떠한 조건이 충족되면 자활사업에 다시 참여하시겠습니까?

- ① 자활사업 참여 이후 일자리로 연결
- ② 적절한 근로소득공제율의 적용
- ③ 자활지원서비스(보육, 간병, 의료 등) 강화
- ④ 조건과 상관없이 참여하지 않겠다. (☐ 문39-2번 문항으로)
- ⑤ 기타 (구체적으로 : _____)

문40-2. 위에서 ④에 답하셨을 경우, 자활사업에 계속 참여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자활프로그램이 취업 및 창업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
- ② 본인에게 적합한 자활프로그램이 배정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 ③ 취업, 창업, 진학 등을 준비중이어서
- ④ 가사, 보육, 간병 등으로 인해
- ⑤ 근로능력이 낮기 때문에
- ⑥ 질병 또는 경증장애가 있어서
- ⑦ (이전에) 조건부 수급자 혹은 취업대상자로 분류된 것이 불만이어
서

41.⑧ 기타(_____)

문 귀하는 현재 적극적으로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고 계십니까?

- ① 예 → 문41-1로 가십시오.
- ② 아니오 → 문41-4로 가십시오.

문41-1. 귀하는 현재 새로운 일자리(직장)를 주로 어떻게 알아보고 계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개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 ① 노동부(고용안정센터, 인력은행) ② 지자체(취업정보센터)
- ③ 구인광고 또는 인터넷 ④ 학교취업 상담실
- ⑤ 민간직업소개소 ⑥ 인력채용박람회
- ⑦ 연고채용 ⑧ 기타()

문41-2.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데 가장 큰 장애는 무엇입니까? (중요 순서대로 2가지 응답)

1순위 : () 2순위 : ()

- ① 취업정보가 부족하거나 잘 모른다.
- ② 학력 또는 기능이 부족하다.
- ③ 나이가 너무 많다.
- ④ 가사나 육아문제 때문에 취업이 어렵다.
- ⑤ 적당한 일자리가 없거나 부족하다.
- ⑥ 제시된 일자리의 보수(임금)가 적다.
- ⑦ 제시된 일자리의 작업환경이 열악하다.
- ⑧ 제시된 일자리의 근로시간이 너무 길다.
- ⑨ 기타 ()

문41-3. 귀하의 취업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희망하는 조건을 낮추더라도 취업이 어려울 것이다.
- ② 희망하는 조건을 낮추더라도 취업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다.
- ③ 희망하는 조건을 낮추면 곧 취업될 것이다.

※ 문41-7번 문항을 답하신 분은 문42번 문항으로 가십시오

문41-8.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계실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나이가 많아서 ② 일이 힘들어서
- ③ 가사활동 및 육아에 지장을 받아서
- ④ 기술이 없어서 ⑤ 건강이 좋지 않아서
- ⑥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어서
- ⑦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42.문 소위 3D 업종에 취업알선이 있으면 취업을 하시겠습니까?

- ① 예 ➡ F(문43번 문항, 17쪽)으로
② 아니오 ➡ 문42-1번 문항으로

문42-1. 어떤 조건이면 3D 업종에 참여하시겠습니까?

- ① 임금수준이 높아지면 ② 근로환경이 개선되면
③ 직장내의 복리후생제도가 강화되면
④ 잔업을 포함한 근로시간이 적다면
⑤ 3D업종에서는 일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⑧ 기타()

F. 노동부 자활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43.문 자활업무 수행에 있어 행정기관간 업무협조가 원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혀 그렇지 그렇지 않은 보통이다 대체로 매우
않다 편이다 그런편이다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문46. 귀하께서 참여하셨던(혹은 참여하고 있는) 직업적응훈련에 만족하십니까?

전혀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편이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런편이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 ①, ②를 답하셨을 경우 → 문46-1번 문항으로

③, ④, ⑤를 답하셨을 경우 → 문47번 문항으로

문46-1. 위에서 ①, ②로 답한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자신에게 적합한 훈련프로그램이 없어서
- ② 훈련이수후 취업과 창업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 ③ 교육내용이 부실해서
- ④ 기타(_____)

문47. 직업적응훈련이 취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편이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런편이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G. 귀하의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성 별	① 남 ② 여
2. 연 령	(만 세)
3. 학 령	① 무학 ② 초등학교 ③ 중졸 ④ 고졸 ⑤ 전문대졸 ⑥ 대(재)졸 ⑦ 대학원(재)졸
4. 귀하의 주거형태는 어떤 것입니까?	① 자가 ② 전세 ③ 월세(삭월세) ④ 영구임대 ⑤ 무료임대 ⑥ 기타
5. 혼인상태	① 기혼 ② 미혼 ③ 사별·이혼 ④ 기타()
6. 본인이 세대주입니까?	① 예 ② 아니오
7. 본인을 포함하여 귀하의 가족은 전부 몇 명입니까?	()명
8. 가구 내에서 직업(취직)을 갖고 있 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본인 포 함)?	()명
9. 가구 내에서 어린 자녀가 있을 경 우, 가장 어린 자녀의 연령은?	()세
10. 귀하 가구에서 학교(고등학교 이 하)에 다니는 자녀의 수는 몇 명입 니까?	()명
11. 귀하가 소속되어 있는 고용안정센 터는 어디입니까?	() 고용안정센터
12. 현재 귀하 가구의 한 달 생활비는 얼마입니까?	월 () 만원

- 종합취업지원계획 수립
- 사업별 자활사업 시행계획 조정, 확정
- 근로능력판별 및